민 방 위

2003年度

民 防 衛 計 劃

忠 淸 南 道

장서
등록번호
14355
등록일 년 월 일
충청북도청 자료실

ד"ש

民防衛計劃

2003

忠淸南道

목 차

Ⅰ. 2003 민방위계획 개요 1

Ⅱ. 2003 민방위 여건과 추진방향 2

Ⅲ. 2003 계획의 주요 개선사항 4

Ⅳ. 분야별 추진계획 7

1. 민방위운영계획 9
2. 재난관리대책 73
3. 소방안전대책 101
4. 화생방방호대책 113
5. 방사능안전대책 127
6. 시설물안전대책 173
7. 교통안전대책 179
8. 산업재해대책 211
9. 수질(식수)오염대책 227
10. 해양오염방지대책 243
11. 수난구호대책 251
12. 전염병과리대책 259
13. 산림재해대책 271

Ⅴ. 행정사항 283

Ⅰ. 2003 민방위계획 개요

□ 개 요

○ 성격 : 민방위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작성·시행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2조 제1항(시·도계획)

○ 분야 : 민방위운영 등 13개 분야(2개기관 5개국·본부 소관)

분 야 별	소관 기관	분 야 별	소관 기관
민방위운영계획	소방안전본부	산업재해대책	경제통상국
재난관리대책	소방안전본부	수질(식수)오염대책	복지환경국/건설교통국
소방안전대책	소방안전본부	해양오염 방지대책	해양경찰서
화생방방호대책	소방안전본부	수난구호대책	해양경찰서
방사능안전대책	소방안전본부	전염병관리대책	복지환경국
시설물안전대책	건설교통국/소방안전본부	산림재해대책	농림수산국
교통안전대책	건설교통국/철도사무소	-	-

※ 자연재해대책은 「2003년 방재계획」으로 별도 수립시행(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 제6차 5개년('02~'06) 민방위기본계획 수립

⇒ 2002민방위계획은 제6차 기본계획 시행의 제2차년도

□ 중 점

○ 국가안보 태세의 확립

○ 재해·재난 발생시 현장 대처능력의 제고

- 긴급대응체계 및 대응능력 보완
- 민방위교육·훈련의 실용성 강화
- 민방위 편의시책 확대

○ 생활안전 관리능력 배양

- 안전점검·안전대책 강화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기반 강화

Ⅱ. 2003 민방위 여건과 추진방향

여건과 전망

◇ 국가 안보적 측면

○ 남북경협 확대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화해협력 지속 증진에 따른 국가안보해이 현상 노정

○ 종교·민족간 갈등을 둘러싼 국지적 분쟁과 테러의 확산 등 국제긴장 국면 지속

◇ 재해·재난 관리측면

○ 기상이변, 생활시설의 대형화·고층화 등과 함께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복합적 요인으로 대형 재해·재난 발생가능성 상존

○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관심 부족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상존

◇ 생활안전 관리 측면

○ 각종 신기술의 발달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발전 미흡으로 인한 사고위험의 증대 및 고도화

- 대형공사장 타워크레인 도괴, 신물질·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누출사고로 인한 오염 등

○ 사회구조·생활양태의 다변화 및 신종업종 발생 등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 발생

- 복합영화관, 산후조리원, 찜질방 등

○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증대(주5일근무) 및 고령화의 급진전 등 선진국형 생활안전수요 증대

추 진 방 향

◇ 국가안보 태세의 확립

○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굳건한 안보의식 함양

○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

◇ 재해·재난 발생시 현장대처능력의 제고

○ 집중호우와 15호 태풍 '루사' 대처사례에서 도출된 현장 긴급대응체계 및 대응능력상의 미흡사항을 집중 보완

- 민방위(재해)경보 → 긴급대피 → 응급구호·복구의 제반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강방안 강구

○ 민방위체제의 방재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교육·훈련의 실용성 강화

- 취약지역 중심으로 테러 등 재난대비 민방위교육·훈련 집중 실시
- 개인 및 마을단위로 응급처치·대피 등 재해·재난대비요령에 대한 체험식 교육·훈련 중점 보강

○ 민방위대원 편의시책 확대로 사기진작 및 적극적 참여 유도

◇ 생활안전 관리능력 배양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특별안전대책 강화

○ '민·관협동 안전관리체제'의 강화

- 취약시설 등 현장 근접관리자 대처요령 및 책임강화
-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적극 전개 등

○ 민방위대원 및 국민들이 안전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 선진국형 안전수요에 대응한 응급처치·인명구조요령 등 국민계도·홍보 강화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 기반강화

- 지역안전지수 및 재난위험지도(GIS) 개발·활용
- 해외 재해·재난대응체계 등 각국 정보 및 안전관리기술 입수·전파

Ⅲ. 2003 계획의 주요 개선사항

분 야	항 목	주 요 개 선 사 항	
		2002	2003
민방위 운영 계획	○ 방재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편성·운영 개선	○ 국지적 민방위사태의 신속대응을 위한 동원권 이양 추진 (장관→도, 시·군)	○ 지역별 재난·재해 육성을 고려하여 소·수방, 화생방 등 분대별 기능 중점 보강 ○ 재난·재해 예방·복구 활동 강화를 위한 인근지역 상호 응원 체제 정비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용교육·훈련 중점 실시	○ 테러대비 및 전국단위 시범훈련 확대 실시 등 재난·재해 대비훈련 강화 ○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국민안전의식 및 소양교육 강화	○ 시·군간 연합방재훈련 대폭 강화 (3회→5회) 및 지역·마을단위훈련 내실 운영 ○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대 역할 및 국민생활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체험식교육 중점 실시
	○ 신속한 민방위경보 체계 확립	○ 경보현대화5개년사업 마무리(위성망 활용, 새로운 전달요강 시달 등)	○ 민방공(화생방)·재해 경보 등 경보유형별 전달체계 정립 - 사이렌을 통한 대피 유도방송 등 경보망 강화 ○ 경보시설 지속확충 - 신도시·도시확산지역 등 사이렌 신설

분 야	항 목	주 요 개 선 사 항	
		2002	2003
재난관리대책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민·관협동안전관리체제' 구축	○ 월드컵·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대비 - 『안전관리특별기동팀』가동 -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 '실명제' - 기동순회반운영 등 특별안전대책 추진	○ 현장근접관리자 등 재난취약시설·지역 해당 관리자에 대한 교육·책임 강화 ○ 찜질방 등 신종업종에 대한 시설별 기준 마련, 소관부처별·업종별 안전관리규정 제정 본격 추진 ○ 생활주변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 안전 문화운동 전개
	○ 체계적·과학적인 재난관리기반 구축	–	○ 전기·가스·교통 등 부문별 지역안전지수 및 재난위험지도 개발·활용 지속 추진
방사능안전대책	○ 방사능 재난대비 현장대응력 강화	○ 방사능 방재체제 보강 ○ 방사능측정망 확충	○ 기존 방사능방재체계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 추가보강 ○ '연합훈련'추가 실시(5개년마다)로 현장 대응력 강화 ○ 지방측정소 및 무인감시 포스트 확충
소방안전대책	○ 현장 소방대응력 보강	–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 장비 지속 확충
	○ '국가화재안전기준' 제정	○ 기획단구성 및 전문위원 검토	○ '03상반기 공포 : 선진 외국수준의 합리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 화생방재난 대비 대응력 강화	–	○ 119구조대원의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실시(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화학전문구조대 설치 추진(1개대) ○ 생화학관련분야 전공자 특채방안 강구

분 야	항 목	주 요 개 선 사 항	
		2002	2003
화생방 방호 대책	○화생방테러 등 안전 대책강화	○국제행사 개최도시 등 취약지역 화생방 특별기동대 설치·운영	○일반민방위대원에 대한 '화생방과목' 지정·교육 강화 ○화생방 대응조직 보강추진 - 화생방 행정조직·인력 확충 - 화생방 기동대 장비 보강 등
시설물 안전 대책	○국가 주요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보강	○통합관리시스템개발	○시설물 연계정보 D/B 구축
교통 안전 대책	○항공 교통안전·보안 대책 강화	-	○보안검색요원 증원
전염병 관리 대책	○수해지역 전염병 관리대책 강화	-	○기동방역강화 - 방역기동반 : 6명 (수해지역 상주) - 인근지역·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군방역지원단, 비수해지역 자율방역단 등)
	○생물테러 대비체계 보강	○국립보건원 등 분석장비 확충	○생물테러대비 실험·진단실 보강(도 보건환경연구원)
산림 재해 대책	○산불진화 장비보강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
	○수해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확충	○사방댐 9개소	○사방댐 추가확충

Ⅳ. 분야별 추진계획

1. 민방위운영계획

[소방안전본부 소관]

Ⅰ. 민방위대 편성·운영의 효율성 제고
Ⅱ. 민방위교육의 실용성 확보
Ⅲ.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강화
Ⅳ.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강화
Ⅴ. 민방위경보망의 체계적 관리·운영
Ⅵ. 주민자율신고체제 확립

추 진 방 향

○ 민방위대 편성운영의 효율화로 재해·재난 등 유사시 대응력 제고

○ 「생활민방위」 교육 강화 및 실효성 있는 훈련 실시

○ 민방위 시설·장비의 지속 확충 및 재정비 추진

○ 민방위경보 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

○ 주민신고의식 고취 및 주민신고망 개편 보강

추 진 계 획

Ⅰ. 민방위대 편성·운영의 효율성 제고

1. 민방위대의 역할과 현황

가. 민방위의 정의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

나. 민방위대의 임무

○ 평 시 : 재해·재난의 예방·수습 및 복구 주민대피유도·구호 등

○ 전 시 : 인명구조,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

다. 민방위대 편성현황

대 별	대 수	대 원 수		
		계	의 무 자	지 원 자
계	4,344대	224,292명	218,496명	5,796명
통 · 리 대	3,757	185,262	182,161	3,101
기술지원대	16	1,001	979	22
직 장 대	571	38,029	35,356	2,673

2. 민방위대 편성

가. 편성원칙

- ○ 지역민방위대는 거주지 통·리단위, 기술지원대는 시·군 단위,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단위로 편성
- ○ 통·리대원과 기술지원대원 및 직장대원은 상호 중복편성 불가
- ○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 및 공항·공단 등 권역별 연합민방위대 구성
- ○ 지역별 재난·재해의 효율적인 수습에 적합한 조직으로 편제 운영
- ○ 지역민방위대의 능동적인 사태수습을 위한 대장지휘능력 보강
- ○ 일선 민방위대와 지역 방재조직과의 통합적인 사태수습체계 운영

나. 편성대상자원 확정

1) 신규대상자 편입

가) 대 상

- ○ 2003년도에 20세(1983년생)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
- ○ 2002.12.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5세(1958년생) 까지의 남자
- ○ 허약자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탈락자
- ○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 ○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 기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민방위대편성에서 누락된 자

나) 절 차

○ 읍·면·동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주민등록 및 기타서류(인사기록카드 등)에 의거 직권으로 민방위대 편성

○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2002. 12. 31까지 편입 조치를 완료하고, 2003. 1. 10까지 통·리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은 새로 편입된 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송부

○ 통·리장은 신규편성대상자명부에 의거 대상자를 개별 방문하여 편성사실 확인

< 편성제외대상자 >

○ 당연제외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교육위원

·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공무원, 등대원

· 군인 · 군무원 · 향토예비군 · 현역병 입영대상자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 청원 경찰 · 의용소방대원 및 주한외국군부대 근무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에 6월이상 승선하는 선원

· 도서·벽지학교 근무 교원

· 고등학교, 대학교 및 주간 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원생

· 전상 ·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시 6급판정자, 등록장애인

○ 심사제외자

· 의사의 진단에 인해 전상 · 공상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되는 만성허약자

※ 의무 해제자 및 편성 제외자 처리

- ○ 2003. 1. 1에 만46세가 되는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원 연명부에서 읍·면·동장, 직장의 장이 직권으로 제외 조치하고, 읍·면·동장 및 직장의 장은 격려서한문과 함께 본인에게 통보
- ○ 민방위대 제외대상자는 지역대는 본인, 직장대는 직장민방위대장으로부터 편성제외신고를 받아 제외조치
  단, 심사제외자는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읍·면·동장이 제외 결정하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은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제외조치

다. 민방위대 편성

1) 통·리 민방위대

- ○ 읍·면·동장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당연제외자(직권+본인신고) 및 심사제외자 등을 제외하고, 지원자를 추가하여 편성하고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

2) 직장민방위대

- ○ 직장민방위대장은 인사기록카드 등에 의하여 신고제외자 및 직권제외자 등을 제외하고 지원자를 추가하여 편성, 본인에게 통보

3) 기술지원대

-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추천한 대원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편성

라. 민방위대 기본편제

1) 제대편성

- ○ 민방위대원수에 따라 대장 아래에 1~2인의 부대장을 두고 하부제대를 설치
- ○ 산하제대는 대장 및 제대장의 지휘통솔이 용이한 규모로 편성

【 편제기준 】

규 모 별	분 대 급	소 대 급	중 대 급	대 대 급	연 대 급
대 원 수	29인이하	30~80인	81~300인	301~1000인	1001인이상
산 하 제 대	반	분 대	소 대	중 대	대 대
제 대 별 인 원	7~8인	10~15인	30~50인	100~200인	300~500인

2) 제대장 등 지정

○ 부대장 및 산하 제대장은 소속 대원중에서 젊고 경험이 있는 유능한 대원을 지정 선발

마. 민방위대별 편성요령

1) 통·리민방위대

○ 조직단위 : 행정구역상의 통·리(2003. 1. 1 기준)

○ 편성대상

- 1958. 1. 1~1983. 12. 31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로
  ·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이 아닌 자
  · 직장대·기술지원대 대원이 아닌 자
- 2003. 1. 1 현재 17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녀중 민방위대 지원자

○ 기준편제

- 지역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부락 단위별로 구분 편성
- 분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시는 본부, 기동반, 소·수방, 방호·복구, 의료·구호, 화생방 등

○ 제대의 명칭과 임무

- 소속된 자연부락의 이름이나 소규모지역을 나타내는 말을 제대명칭으로 쓰고 제대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예상 재난·재해 수습에 적합한 임무 부여
- 적절한 지역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방위대가 수행할 기능을 위주로 한 명칭 사용

2) 민방위 기술지원대

○ 조직단위 : 시·군

○ 편성규모 : 50~100명선

○ 편성대상

-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수영, 보트운전, 화생방 분야 등 기술전문분야

○ 기준편제

- 본부, 인명구조, 의료·구호, 전기통신, 토목·건축, 수송·급식, 화생방, 기동반 등

○ 대원 선정기준

-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건축, 토목, 화생방분야 등의 전문기술 소지자
- 인명 구조 유경험 대원(보트운전, 수영숙달 등)
- 의용 소방대원과 해병전우회원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중 자원참여자

3) 직장민방위대

○ 조직단위 : 직장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단위

○ 편성대상 : 직장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자

○ 설치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 중앙관서와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 영조물
  - · 도, 시·군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 영조물
- 공공기관 및 업체
  - ·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 ·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 ·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 · 의무자 및 지원자가 15인 이상인 공공조합

-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사기업체
  · 민방위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 의무자 및 지원자가 20인 이상인 염제조업체, 건빵·라면 제조업체, 석유정제·수출입·판매 업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제조업체, 사립공공도서관
  · 금융기관 본·지점, 상설극장, 방송국 및 송신소, 대규모 점포
  · 지적측량대행법인, 지정문화재 보유(또는 보호구역내) 사찰
  ·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효율적인 업체
  · 하나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 활동상 효율적인 동일구내 또는 건물내의 2개이상의 업체
  · 기타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편성기준
- 평소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대원은 같은 제대에 편성
- 공장건물, 작업장, 사무실 등 근무지 단위로 제대 편성

○ 제대의 명칭과 임무
- 구성원이 소속한 근무부서의 조직명칭이나 기능을 사용한 제대명칭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임무 부여
- 조직명칭 등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제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명칭으로 사용
- 외국인이 직장의 장인 경우 차상급의 한국인을 대장으로 임명

○ 기준편제
- 본부, 의료·구호, 소·수방, 방호·복구, 화생방 등

○ 참모부서 설치 운용
- 설치대상 : 중대급(81인이상)이상 규모 직장민방위대
- 필요부서 : 지역여건과 직장기능에 따라 필요한 부서 설치
  <예시> 기획부, 연락부, 복구부, 의료·구호지원부, 화생방부 등

- 참모부요원의 선정

· 관련 부서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대원

· 부서별로 1~2명으로 구성하되, 다음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규 모 별	인 원 수
· 연 대 규 모	20인 정도
· 대 대 규 모	15인 정도
· 중 대 규 모	6~10인 정도

- 기 능

· 민방위대 운영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하여 대장 보좌

·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대원 교육 및 훈련실시

· 중요사항은 각급 제대장과 참모부요원의 연석회의에서 심의결정

바. 민방위대장 지휘력 보강

1) 대장중심의 자율운영체제 확립

가) 지역대장에 대한 지휘력 제고 교육실시

○ 대 상 : 신규 위촉된 통·리대장, 여성대장, 대장이 결원 중인 지역대의 부대장

○ 방 법 : 종합 방재훈련 우선 참관조치 시·도 단위에서 분기별로 파악, 일괄 집합교육 및 우선 참관조치

○ 교육내용 : 통·리대장의 임무와 역할, 사태유형별 실기 실습 훈련 및 대원 지휘통솔방법

나) 마을단위 민방위계획 수립 및 자율적 운영권 부여

○ 자체민방위(방재)계획에 의한 대원교육 및 훈련실시

○ 민방위사태 예찰, 수습, 복구활동 등 자율적 운영

다) 통솔이 용이하도록 제대편성 운영

○ 통·리대의 규모에 따라 적정규모의 기능별 제대편성

○ 산하제대는 각 단위제대장의 지휘통솔이 용이하도록 편성

○ 부대장 등 간부 임명시 군 하사관 출신자 등 임명

라) 통·리대장과 대원 및 제대장 등에 대한 임무통지

○ 시 기 : 신규편성 완료직후 (2003. 1월중)

○ 대 상 : 통·리 민방위대장, 신규편성대원, 전입대원, 제대장 등 소속·임무가 변경된 대원

○ 주 관 : 읍·면·동장

2) 통·리장이 아닌 자의 민방위대장 임명

가) 대 상 : 통·리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허약 등의 사유로 민방위 사태 발생시 현장지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선정기준

○ 지역내 유지로서 덕망 있고 주민의 신임을 받는 자

○ 지휘통솔력이 있는 군장교 또는 하사관 출신자

○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중인 각급 지도자

○ 기타 지역대를 능률적으로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자

다) 임명방법 : 읍·면·동장이 해당지역 민방위대장과 협의하여 적임자를 지정

라) 통·리장이 아닌 민방위대장의 임무

○ 평 시 : 민방위대 운영 및 대원 교육 지원

○ 민방위 사태 발생시 : 지역민방위대 직접지휘 (사전 예찰, 방재활동, 응급복구 등)

사. 소규모민방위대 통합

1) 대 상

○ 민방위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민방위대 및 직장민방위대

○ 통·리대는 인근의 통·리대와 통합 편성

○ 직장대는 동일 시·군내에 있는 상위직장 또는 유사한 직종의 직장민방위대와 통합편성. 다만, 통합편성할 대상 직장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 직장민방위대와 통합편성 (4km이상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등)

<예 시>

· 보건소·농촌지도소 등 ⇒ 시·군 직장민방위대

· 보건지소·농촌지도소 등 ⇒ 읍·면·동 직장민방위대

· 학교 ⇒ 시·군 교육청 직장민방위대

○ 통합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음 요령으로 흡수 편성하되, 소규모대의 대장은 통합한 민방위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 대원 10명 미만은 통합대의 분대에 흡수 편성
- 대원 10~20명 미만인 직장민방위대는 별도 분대 편성

○ 통·리간이나 직장 상호간 통합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대와 직장대는 통합편성 불가

○ 오지·낙도 등의 소규모 민방위대로서 통합 편성할 대상 민방위대가 없을 때는 독립대로 편성 운영

2) 절 차

○ 시장·군수는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편성요령을 읍·면·동장과 해당 직장민방위대장에 통보

○ 소규모 직장민방위대장은 대원명부를 통합될 직장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 통합편성 요구

○ 통합직장민방위대장은 통합편성결과를 시장·군수와 소규모 직장민방위대장에게 통보

아. 연합민방위대의 구성

1) 지역연합민방위대

가) 구성대상

○ 도시지역

- 하천 등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재난재해 발생시 공동대처가 필요한 지역
- 도시의 블록, 가로망 등을 단위로 주택, 상가 등이 밀집 되어 하나의 단지로 형성된 지역

- 아파트단지, 대규모상가, 집단촌 등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집단으로 재난대처가 필요한 지역
- 공단, 위락단지, 위험물인접지역 등 대형재난재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과 업체를 중심으로 사태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지역,
- 동일공업단지, 구내 또는 건물내 2이상의 직장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

○ 농·어촌지역

- 하천, 저수지, 해안, 산골짜기 등 지형적으로 재난재해 발생시 동일 영향권안에 있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접 마을

나) 구성 요령

○ 읍·면·동장은 관내의 주택배치상황, 도로망, 하천수계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조사

○ 읍·면·동장은 대상지역의 민방위대장과 협의하여 연합 민방위대 구성

다) 운 영

○ 연합민방위대장은 해당지역의 통 · 리민방위대장 중에서 호선을 거쳐 읍·면·동장이 임명

○ 읍·면·동장은 연합 민방위대장을 지휘하고 연합민방위대장은 소속 통·리 민방위대장을 지휘

○ 연합민방위대 단위로 자체민방위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소집훈련 등 교육·훈련 실시

2) 직장연합민방위대

가) 구성대상

○ 동일 구역내 2개이상의 직장민방위대

○ 동일 건물내 2개이상의 직장민방위대

○ 동일공업단지내의 인접한 직장민방위대

나) 구성 요령

○ 동일건물, 동일구내에 있는 모든 직장민방위대를 포함하여 연합 민방위대 구성

○ 구내시설 또는 건물관리 직장의 민방위대장을 연합민방위대장으로 지정

○ 연합민방위대장은 단위직장민방위대장을 겸임하거나 부대장을 임명하여 대장임무 수행 조치

다) 구성절차

○ 시설관리 직장민방위대장은 연합민방위대 구성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조직요건을 검토,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정여부 결정

○ 지정할 경우 연합민방위대조직승인대장에 명기하고 연합민방위대 지정서에 의거 통보

자. 민방위 자원관리

1) 효율적인 자원관리

○ 민방위자원관련 공부의 전산관리로 효율적인 자원관리

○ 편성대상자 명부(직권말소자 포함)를 지역·직장대별로 구분 작성하고 편성제외사유 등을 기록 관리

○ 연명부를 비치하고 교육훈련, 전·출입상황 등을 관리

○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민방위란 기록 관리 철저

○ 자원관리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직장대원의 자원변동상황 관리철저

2) 민방위자원 일제정비기간 운영

○ 2002. 12. 1~12. 31까지 신규편성자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중 다음 사항을 처리·정리

- 다음년도 신규편성대상자 편입조치
- 편성제외자 및 제외사유, 말소자 일제신고 처리
- 민방위의무 해제자 정리

○ 2003. 3. 1~3. 31까지 한달 동안 학생신분변동에 따른 민방위자원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민방위대 편입 또는 제외조치

차. 민방위대 동원 운영

1)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민방위대 동원권자는 다음 사항 등을 유의하여 민방위대 동원을 차질없이 집행

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지휘보고

○ 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 행정자치부장관

나) 각급 동원권자는 민방위사태 발생보고를 받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원 요청이 있을 때는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여부를 결정하고, 긴급시는 동원권자가 판단 결정하여 동원령을 하달

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광역화 또는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 수습이 어려울 경우 동원되지 않은 인근 민방위대원에게 참여 권장

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주민대피, 시설이전 등 응급조치명령 하달

마) 동원권자는 동원지역, 대상, 사유 및 동원시의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 동원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발하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이를 공고

- 단,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를 생략

바) 동원명령을 받은 민방위대장은 상황에 적합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소속대원을 소정시간내에 동원

〈동원령 전파방법〉

· 지휘용사이렌, 타종, 경적 및 신호기에 의한 전파
·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선 또는 구두전달
· 확성기에 의한 방송 및 광고
· 필요시 서면에 의한 개별통지

2) 관내 전지역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시 효율적인 동원 및 재난재해 예방·복구 활동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구

○ 대원간의 주·야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예찰 등 사전예방조치 강화
○ 정전 및 교통 두절시 동원령 전달대책 강구
  - 읍·면·동과 마을간 무선통신망 구축
○ 재난재해지역내 동원령의 효율적 집행
  - 피해가 적은 지역부터 우선 동원
○ 인근 지역대와의 상호응원체제 확립
  - 인근 시·군 또는 읍·면·동 상호 응원협조체제 유지
  - 응원요청시 신속한 조치 강구
○ 야간수해대비 수방장비 확보
  - 조명탄, 구명의 등 수해상습지역 우선 확보
○ 수방 및 인명구조대 육성 보강
  - 수해위험 및 상습지역 확대 구성
  - 수방·인명구조장비 확보 및 실제훈련 반복실시
  - 장비활용에 대한 개인별 임무 부여
  - 대원 비상연락체계 정비
○ 생화학테러 등의 사태대비 인력·장비 완비
  - 방독면, 보호의, 제독 기구 등
  - 화생방 기동분대 보강 : 1개 분대 12명
○ 동원대원(자발적 참여 대원 포함) 사기진작방안 강구
  - 시·군 예산 범위안에서 중식, 음료수 등 제공
  - 자연재해대비 방재 활동비 각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조치
  - 유공대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격려

3) 동원권자가 민방위대를 동원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였거나,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제시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동원을 해제

4) 동원된 대원 또는 민방위사태의 수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원에 대하여 실비지급

5) 동원민방위대의 행동요령

가) 임무

○ 경보전파 및 대피유도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 응급복구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부여는 민방위사태 수습현장에서 구두(필요시 서면)로 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 서식)

나) 중요시설물의 응급 복구

○ 용어의 정의

- 중요시설물 : 공공시설물로서 주민전체의 편익과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

< 예 시 >

· 공공기관의 건물
· 도로 · 철도 및 교량
· 저수지, 하천 제방 및 사방시설
· 상 · 하수도 시설
· 발전시설 및 통신시설
· 방파제 및 선착장
· 기타 민방위를 위한 시설 등

○ 응급복구 : 파손된 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로 시설 본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회복

○ 민방위대의 응급복구대상 기준과 범위

- 중장비가 동원된 작업을 지원하거나 단순노무의 제공만으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
-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시설로서 응급복구를 위하여 기술지원대의 기술장비와 통·리 민방위대의 단순노동력의 제공만으로 응급복구가 가능한 경우

○ 응급복구지역내 동원민방위대원 운용 세부 요령

- 상당한 피해를 입은 대원에 대해 동원유예 조치
- 동지역 민방위대로 수습이 어려울 경우 인근 민방위대에 상호응원 요청에 의하여,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에 의하여 복구
- 다소 복구가 지연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임무 수행
  · 사전에 치밀한 응급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원을 정확히 판단
  · 민방위대별, 소·분대별 및 개인별 윤번제 실시
  · 응급복구대상이 방대하여 민방위대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비군 등의 지원을 받아 응급복구 목표 조기 달성
  · 복구장비가 부족한 경우 지방관서나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
  · 개인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친 대원 참여 유도

다) 인명 및 재산보호

○ 경보전파 및 대피유도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경보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고 공습시에는 주민을 가까운 대피소에 대피토록 유도하고 기타 재난시에는 위험지역외로 대피토록 조치

○ 주민통제 및 소산

- 민방위사태의 예방 및 수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임의활동을 통제
- 민방위사태 발생지역이나 위험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피난 조치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민방위사태 발생지역에서 주민통행이나 차량운행 통제
- 공습시에는 도심권의 밀집된 차량을 외곽지로 소산시키고 외곽지 차량의 도심권 진입을 억제. 특히 유조차나 위험물 적재차량은 외곽지로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시설물·건물 및 일반차량과 격리
- 옥내·외의 모든 전등 및 차량이나 선박의 조명장치에 대한 차광 또는 소등 지도

○ 소화활동

- 화재발생상황을 지역주민 및 소방관서에 신속히 전파하고 진화작업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부상자후송, 응급처치 및 매몰자 구조
- 폭풍·폭우·폭설 등으로 인해 고립된 지역의 주민과 표류 및 조난된 선박 등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구조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불발탄 등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접근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라) 주민계도

○ 적의 침공 또는 침공이 예상될 경우 주민 안정을 위한계도 활동실시

○ 민방위대장과 분대장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주민들이 집밖에 나오지 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정부의 지도에 따르도록 조치

마) 군사작전 노력지원

○ 군사작전을 위한 노력지원 요청으로 동원된 민방위대는 다음과 같은 임무 수행

- 군수물자 운반·하역지원
- 부상자의 후송지원
- 개인호 구축, 철조망 가설 등 전술공사에 따른 노력지원
- 보급로의 응급보수작업 지원 등

바) 재해경보별 대비

○ 경계경보 발령시

【 행정관서 】

-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체제 유지
- 강우(설)량, 풍속 및 풍향 등 확인 및 전파
-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의 관내 상황유지 철저 및 근무자 이탈방지
- 산하기관 상황실 유지관리 점검
- 통신선 점검 및 보수
- 재해대책요원 대기

【 민방위대 】

- 민방위대장 출타억제(관내 행선지 예고)
- 복구자재·장비 점검
- 경보망 및 경보시설·장비 점검
- 위험지역 점검(인근거주대원)
- 경보전파 및 신고(신고망 활용)
- 상습위험지역 주민 대피
- 등산객 조난방지

○ 위험 경보발령시

【 행정관서 】

-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체제 유지
- 강우(설)량, 풍속 및 풍향 등 확인 전파
- 민방위재난상황실 비상근무대기
-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 관내상황 파악 대기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장비·자재 확보 및 점검
- 비상생필품 준비(천막, 취사도구, 의류, 침구, 식량 등)

【 민방위대 】

- 민방위대장 정위치 근무
- 대원 및 유관기관 연락체제 점검
- 대원 및 주민 비상대기(비상연락망 활용)
- 대원 소집 임무부여 : 개인별·대별
- 경계조 배치 및 위험개소 순찰점검
- 경보전파 및 신고(신고망 활용)
- 상습위험지역 주민대피
- 등산객 조난방지

II. 민방위교육의 실용성 확보

1. 민방위교육 운영방향

가. 민방위교육 개요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후 1~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8시간(상·하반기 각 4시간)

○ 교육내용 : 소양(통일 · 안보)교육, 재해 · 재난대비 실기교육

<민방위교육의 변천>

○ 교육대상

· '75~'82 : 20~50세 · '83~'88 : 20~45세

· '89~'93 : 20~40세 · '94이후 : 편입후 5년까지

※ '99년이후 : 편입후 4년까지

○ 교육시간(연간)

· '75창설당시 : 4시간 · '76 : 29시간

· '77년(최고) : 30시간 · '78 : 20시간

· '82~'87 : 10시간 ※ '88년이후 : 8시간

나. 중앙단위교육

1) 민방위핵심요원 전문교육 중점실시

○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 민방위담당공무원 : 행정 및 실기분야 전문과정(8개 과정)
- 지역·직장 민방위요원 및 민간인 : 지휘·통솔, 안보, 일상 재난 대비분야 전문과정(7개 과정)
- 주부, 청소년 등 생활민방위교육 과정 (3개 과정)

○ 교육기간 : 과정별 교육목표 및 대상을 고려 설정(1~5일)

○ 교과목편성

- 통일 · 안보교육과 직무전문교육 병행 실시
- 교육대상별 임무 및 역할에 적합한 전문교과목 편성

2) 실제활용 가능한 실용성 있는 재난대비교육 실시

○ 실기·실습위주의 참여식·체험식 교육 중점실시

○ 지역·직장민방위대장의 실기전문과정 운영 및 전문교재 개발·활용

3) 민방위요원 교육(지휘자과정·수방기동대 등 과정) 이수자 사후관리 강화

○ 실기강사로 위촉 또는 대원교육요원으로 활용

○ 지역재난대비 핵심요원으로 활용

4) 교육주관 :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과

다. 지방단위교육

1) 교육시기 : 2~6월(상반기), 8~12월(하반기)

○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 및 성어기를 피하고, 각종 선거일정과 교육대상인원 등을 감안, 지역별로 자체교육일정 수립

2) 교육시간운영 : 연간 8시간

○ 신규편성대원, 일반대원 : 상·하반기 각 4시간

○ 전문요원(기술지원대 등) : 1일 8시간 또는 상·하반기 각 4시간

3) 교과목 및 교육방법 : 소양교육 및 실기·실습교육 병행

○ 소양교육 : 강의 및 VTR 활용(상반기 2시간)

- 통일을 대비한 건전한 국가안보관 확립 및 일반소양 등 생활안전의식 정착

○ 실기교육 : 현장 실기·실습 및 VTR 방영(상·하반기 각 2시간)

- 국민생활과 밀접한「생활민방위」교육 중점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재해·재난대비교육 실시
- 지역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민방위 교육시 실제훈련을 병행 또는 대체하여 재해·재난 발생시 효율적 대처능력 제고

  <예시> 화생방 대피훈련, 방재훈련 등
- 교육시 VTR시연에 의한 대원별 실기·실습 및 전문요원 시범실습 등 운영

○ 체험교육(2시간)

- 사례발표 : 민방위대원, 일반시민 등의 체험사례
- 현장체험 : 재난·재해발생현장 및 취약현장, 안전체험
- 시청각 교육 : 재난·재해관련 VTR 등 상영

4) 교육주관 : 교육대상 및 성격에 따라 도, 시·군, 읍·면·동 분담 실시

○ 통·리대원(대장), 수방기동대원, 기술지원대 : 시·군 또는 읍·면·동

○ 직장대원 : 시·군

○ 직장대장 : 도

○ 화생방분대 : 도

2. 민방위교육의 실용성 강화

가. 화해 · 협력시대의 통일관 · 안보관 확립

1) 통일·안보교육의 내실 운영

○ 교육내용 : 통일안보 전문가·귀순자 강의 및 VTR 방영

- 통일환경의 변화와 대북정책(통일환경의 변화, 대북포용정책 추진)
- 남북한 화해협력시대 민방위의 역할
- 최근 북한의 변화 동향
- 북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과 이해 제고

2) 『중앙 통일·안보 교육단』 구성, 순회교육 실시

○ 강사구성 : 100명 정도(귀순자 30, 통일·안보전문가 70)

○ 운영방향

- 귀순자 강연은 희망 시·군·구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강사지원
- 통일·안보전문가는 강사명단을 시·군에 통보하여 중요 민방위교육시 초빙활용

나. 「생활민방위」 위주 교육으로 재난 대처능력 배양

1) 재난중심 교과목 편성으로 실제사태 수습능력 향상

○ 일상생활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과목중점 운영

- 응급처치법, 전기·가스 사용요령, 화재예방 및 진화
- 풍수해 대처요령, 교통안전, 인명구조요령, 산불예방 등

○ 대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과목을 지속 발굴

○ 일반대원에 대한 화생방과목 신규설치·운영 추진

2) 시청각교재 제작·활용으로 교육효과 제고

○ 대원의 이해증진과 실습효과 제고를 위하여 실기교과목에 대한 VTR 교재 제작

○ VTR교재를 복제하여 시·군에 보급, 대원교육자료로 활용

○ 공공기관 민원실, 직장 및 다중집합장소 등에 VTR교재를 제공하여 대 국민 교육·홍보

3) 민방위교육장 확보 및 실기교육여건 확충

○ 강의와 실습이 병행가능한 전용교육장 확보(자체사업)

- 확보기준 : 시·군별 교육대상인원 2만명당 1개소
- 수용인원 : 1회 300명정도
- 시　　설 : 강의실, 실기실습장, 기본시설 및 편의시설

○ 기 확보된 전용교육장은 실기교육여건 확보

- 실기실습장 확보, 민방위장비 및 실습기자재 전시 등

○ 전용교육장 미확보 지역은 공공대피시설,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

- 기존시설, 옥외 및 지상공간을 실기실습에 적합토록 개·보수
- 공공청사·회관 등 신축시 민방위교육장 확보와 연계 추진

4) 실기·실습 기자재 확보 및 관리 철저

o 실기교과목에 따라 소요되는 기자재는 시·군에서 확보

- 붕대, 삼각건, 구명환, 소화기, 방독면 등을 시·군 교육장 단위로 확보

o 기 확보한 기자재 평시 관리와 사용 전·후 점검정비 철저

5) 실기교육의 내실운영

o 전대원이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화재예방과 진화, 전기·가스안전 대처요령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실기교육을 내실있게 운영

o 기존교육장의 실습여건과 교육대상인원 등을 감안, 교과목별로 효과적인 교육운영방법 연구 개발

o 교육개시전 위촉강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내용, 교육운영방법, 실습기자재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다. 교육장 과밀현상 해소로 교육분위기 쇄신

1) 300명 이상 과밀반 우선 해소, 200명 내외의 적정반 편성 운영

o 교육대상이 많은 대도시 지역은 일요·야간교실 적극 운영

o 교육자원 과소지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통합운영

2) 보충교육시 교육반 편성 운영

o 시지역은 동 단위로 편성 또는 수 개동을 통합 편성운영하되, 대상인원이 과다한 때에는 보충교육기간을 연장하여 과대 교육반 해소

o 군 지역은 대상인원에 따라 읍·면단위로 편성 운영

라. 민방위강사의 정예화 및 사기앙양 강구

1)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강사 지속 발굴 활용

o 장기위촉자, 부적격자 교체 및 분야별로 다양하게 위촉

o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근 권역의 강사 및 저명 인사를 초빙

o 민방위교육관 지휘자과정을 이수한 통·리대장중 자질 능력이 탁월한 자를 실기강사로 적극 활용

2) 위촉강사의 자질향상

○ 중앙단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관련분야 세미나, 토론회 등에 적극 참관 유도 및 지원

3) 위촉강사 사기앙양 등 관리철저

○ 간담회개최, 지역단위 각종행사 참여 조치 등 사기진작 강구

○ 중앙부처 발간 각종 교육자료, 국정 및 지방행정 현안 과제와 주요시책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수집하여 제공

○ 선진지 견학 및 우수강사 해외시찰 실시 등

마. 직장단위 자율교육운영체제 확립

1) 자율적인 교육운영 여건을 갖춘 직장민방위대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대장에게 대원교육 위임

2) 위임시기 : 상반기 교육개시전(1월중)

3) 위임범위 : 기본교육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전반

4) 위임대상 직장대의 기준

○ 교육대상 30명이상인 직장대

○ 전년도 검열성적이 70점이상인 직장대

○ 민방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담요원이 확보된 직장대

5) 교육운영 지도·감독

○ 시장·군수가 교육운영 전반 지도·감독

○ 교육운영 부실 직장대는 1차 경고, 2차 위임해제

○ 직장대에 대하여 자체특성에 맞는 교과목과 교육운영기법 등을 개발 활용토록 지도하고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바. 민방위요원 교육강화로 전문요원 양성

1) 교육주관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 교육대상 및 교육중점

○ 통·리대장 및 직장대장 : 지휘통솔능력의 배양과 각종 재난대처요령 등 실기교육

○ 기술지원대원 및 화생방분대원 : 실제사태 대응능력 제고,
의료·구호, 토목·건축, 전기·통신 및 화생방방호 등 실기교육

○ 수방기동대원 : 수해예방, 수방장비 사용법, 인명구조요령 등 실기교육

3) 교육시간 : 연간 8시간(1일 8시간 또는 상·하반기 각 4시간)
단, 통·리대장 및 직장대장은 4시간 (상반기중 실시)

4) 교육강사 : 해당분야 전문가, 실기교육강사 활용

사. 민방위대원 교육편의시책 운영

1) 순회교육 실시

○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서·낙도·산간·오지 등)의 대원을 위하여 시·군에서 순회교육 실시

○ 교육대상인원이 과소한 경우 인근 수개 마을 및 도서 등의 지역대 및 직장대를 통합하여 교육실시

2) 야간교실 및 일요교실 운영

○ 지역별로 운영일자를 선정하고 사전홍보

○ 주간 및 평일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하여 교육실시

3) 생활권단위 교육 실시

○ 주소지 교육장보다 인근교육장이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경우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인근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4) 현지교육제도 운영

○ 장기출타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5) 민방위 취업은행 운영

○ 대상지역 : 인구 20만이상 시지역 및 국가·지방공단이 있는 지역

○ 취업창구설치 : 민방위교육장, 시·군 민방위담당과, 읍·면·동사무소

○ 취업정보 수집제공

- 구인정보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관내기업체 등에서 수집
- 구직신청 접수 및 취업알선은 취업창구에서 전담

6) 도서·낙도, 산간·오지대원 통신교육 운영(교육대상 20인 이하 지역)

○ 대원의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장 교육 대신에 통신교재를 숙지한 후 내용을 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중 선택하여 작성 제출하면 교육이수로 인정

7) 생활민원 접수처리

○ 민방위교육장에 교육기간중 민원창구 설치

○ 각종 증명서발급 등 대원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당일 교육 종료시까지 발급

8) 교육면제 및 유예사유 소멸자의 교육시간 단축

○ 대 상

- 교육면제자 : 형 집행중인자, 3월이상 외국에 여행·체류중인 자 등
- 교육유예자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 주 관 : 시장·군수

○ 운 영 : 기본교육과 동일하게 4시간만 이수

9) 민방위시범훈련 참여대원 등 민방위교육이수 인정

○ 대 상 : 민방위의 날 등 각종 시범훈련 참여대원

○ 주 관 : 시장·군수

○ 운 영

- 민방위훈련 등 각종 시범훈련에 참여 또는 동원된 경우 참가시간 교육이수 인정
- 시범훈련 실시현장에서 참석확인서 발부 교육이수 인정

아. 민방위교육운영의 효율성 제고

1) 민방위 교육운영상황 평가

ㅇ 개 요

- 대상지역 : 도 및 시·군
- 시 기 : 5월, 11월(2회)
- 점검방법
  - 각종 교육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현지확인 병행
  - 도 에서 계획 수립 점검

ㅇ 평가항목

- 민방위강사 관리 운영 및 교육장 환경
- 교육기강 확립 등 교육의 진지성 및 실효성
- 교육 및 편의증진시책 추진상황 확인 등

ㅇ 평가결과

- 우수사례는 시·군에 파급 확산, 훈련의 질적향상 도모

2) 교육기강 확립

ㅇ 출석관리의 엄정

- 교육참석표, 연명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개인별 출석점검
- 대리참석, 지참 및 중도퇴장사례 등 예방철저

ㅇ 질서있는 교육분위기 조성

- 음주소란 등 교육자세 불량자 퇴장조치
- 민방위복장, 모자 및 완장착용 권장
- 금품징수(성금 등 각종모금), 상품선전 판매행위 등 금지
- 교육시 핸드폰 및 호출기 등 사용금지
- 교육장 주변의 잡상인 근절

ㅇ 무단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부과대상 : '2003년 민방위업무 추진지침' 참조
- 부과주관 : 시장·군수
- 대리참석자 적발시 교육대상자의 과태료 중과

  ※ 과태료 부과후에는 과태료 수납부에 의거 관리

ㅇ 용역업체의 영업사례 확인시 고발 등 의법 처리

3)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시 민방위교육 실시

ㅇ 교육제외대상(41세 이상)에 대한 예외적용 중지

ㅇ 주민등록 재등록시점부터 교육연차 적용(단 45세까지)

ㅇ 주민등록말소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기록관리 철저

4)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개발 추진

ㅇ 주　　관 : 도지사, 시장·군수

ㅇ 시책분야 : 교육운영전반에 관하여 대원의 관심과 호응을 유발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책

ㅇ 시책추진 : 시범운영방법으로 추진하고 효과 분석 측정

ㅇ 평가활용 : 우수시책은 파급 확산하고 2003년 역점시책평가에 반영

5) 민방위의식 정착을 위한 국민교육 및 홍보실시

ㅇ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실시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 주　　관 : 도, 시·군
- 교육회수 : 학교실정에 따라 실시

ㅇ 청소년 민방위학교 운영

- 1일 민방위학교 운영 : 중·고생 1,200명(전 시·도)
- 교육내용 : 화재, 풍수해, 교통사고 등 생활민방위교육

ㅇ 민방위교재를 활용한 국민교육 실시

- 주　　관 : 도, 시·군
- 활용교재 : 민방위대원 교육용 VTR교재(행정자치부, 도 제작분)
- 실시방법
  · VTR 교재를 민방위대원 교육후 공공기관, 민원실, 학교, 직장 각종 사회단체,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제공(대여)
- 소속직장, 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교육·홍보실시 권장

3.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 훈련시기 : 연 1회(2~3월중)

○ 주　　관 : 시장·군수

○ 대　　상 : 전 민방위대원(교육대상자 제외)

○ 소집방법 : 예고훈련, 필요시 불시훈련 가능

○ 훈련시간 운영

- 발령시간 : 오전 7시 전후(기관장이 실정에 맞게 운영)
- 응소시간 : 지역 - 발령후 30분, 직장-발령후 1시간 이내

○ 소집 및 훈련장소

- 지역민방위대 : 회관, 학교운동장, 대피소 등
- 직장민방위대 : 직장내 회의실, 강당, 대피소 등

○ 소집통보 방법

- 지역민방위대 : 통지서 발부, 공공게시판, 마을앰프방송 등
- 직장민방위대 : 구내게시판, 방송, 공문 등

III.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강화

1.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가. 2003년 훈련계획개요

구 분	세 분 류	실시월	훈 련 내 용
민방공 훈 련	○대피훈련 - 정기대피훈련 - 불시대피훈련	3회 실시	·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훈련 · 전시국민행동요령 교육 · 습득 ※ 불시 민방공대피훈련(1회) - 날짜 지정, 시간 미지정
방 재 훈 련	○전국단위 시범훈련	4회	· 16개 시·도 윤번제 실시 · 시·도단위 사태수습 및 방재훈련
	○연합방재훈련 (시·군단위 훈련)	5회	· 인접한 2~3개 시·군이 연합하여 실시 · 1개 시·군 훈련주관, 인접 시·군 훈련지원 · 연합방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시·군단위 훈련 실시
	○지역 · 마을단위 훈련	연 3회 이상 자율실시	· 지역 · 마을단위별 취약재난 선정 · 체험식 · 실습식 동일지역 반복훈련실시 (3회) · 주민 자체적인 방재능력 배양
	○직장 · 단체훈련	연 1회 이상 자율실시	· 직장 · 단체별 위해요소 선정 · 연 1회 이상 자체방호훈련 실시

2. 실효성 있는 민방위훈련

가. 민방공훈련

1) 민방공 대피훈련

가) 훈련개요

○ 훈련시기 : 연 3회

- 정기 민방공 대피훈련 : 2회
-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 : 1회(8월 을지연습기간 중 충무훈련지역)

○ 훈련지역 : 전국 일원

- 읍이상 도시지역 (면단위는 주요직장, 교통요충지, 항만등 포함)

○ 훈련시간 : 20분(공습15분⇒ 경계5분⇒ 해제)

- 정기훈련 : 날짜·시간 지정
- 불시훈련 : 날짜 지정, 시간 미지정

○ 훈련내용 : 경보전파 및 대피소산, 대공감시, 직장방호 등

○ 훈련경보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취명 및 전파체계

·경보단말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지방경보단말 ⇒ 경보전파

·방송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라디오방송사(KBS, MBC, SBS, CBS, TBN, BBS, PBC, EBS) ⇒ 경보방송전파

※ 경보취약지역은 사이렌, 종 등 경보대체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파

나) 민방공 대피훈련의 내실화

○ 민방공훈련 대피유도 '구역책임제' 운영

- 경찰과 합동으로 대피 유도팀을 구성, 팀별로 책임구역 지정

·팀장 : 경찰, 공무원 등

·조원 : 민방위대원·자원봉사대 등 대피유도요원 3~5명

○ 대피유도요원의 정비 및 사전교육

- 유도요원을 젊고 활동성이 있는 대원으로 교체
- 대피유도활동 등 집합교육실시 및 근무기강 확립
- 민방위복, 완장, 호각, 메가폰 등 장비 지참후 현장 투입

○ 다중집합장소·교통혼잡지역에 대한 대피유도 강화

- 근무실태에 대한 상급자(상급기관)의 지도·감독강화, 유도요원의 증강 배치 및 대피통제 강화

○ 직장·단체의 대피훈련 적극 참여 유도

- 실제 대피와 대피중 안보·안전관련 교육 및 장비 실습 실시

○ 직장·단체에 대한 협조공문발송 및 현지 지도·확인 실시

나. 방재훈련

1) 연합방재훈련(시·군 단위 훈련)

○ 훈련시기 : 연 5회

- 민방위의 날 훈련시 30~60분정도 실시
- 지역별·계절별 실정에 맞는 훈련 종목 선택

○ 훈련주관 : 시·군

- 훈련지역의 해당 시·군이 연합(2~3개)하여 훈련추진
- 연합방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기존의 시·군단위 훈련 실시

○ 훈련참여

- 민방위대원·주민·경찰·소방·군부대 등
- 한전·적십자사·보건소·유관기관·단체 등 공동 시연

○ 훈련운영

- 광역방재를 가상하여 2~3개 시·군이 연합하여 실시
- 윤번제로 1개 시·군이 훈련을 주관하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인력과 장비를 지원
- 훈련참여 인원 및 참관인원은 연합 시·군 균등 참여

2)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가) 훈련개요

ㅇ 훈련주관 : 시·군(읍·면·동)

- 시·군(읍·면·동) 주관하에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

ㅇ 훈련회수 : 개소당 연 3회이상

ㅇ 훈련일자 : 방재훈련시 30~60분 정도

- 농번기, 지역행사 등을 감안, 훈련일자 주민자율결정 가능

ㅇ 훈련지역 : 시·군별 2개소(30개소)

ㅇ 참여인원 : 민방위대원·주민 등 개소당 30~50명 정도

ㅇ 훈련운영

- 지역별로 사전에 선정된 취약분야에 대한 실습식 훈련
- 동일종목에 대한 훈련을 연 3회이상 반복실시
- 훈련참가자별로 부여된 역할에 대한 체험식·실습식 훈련

ㅇ 훈련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 훈련지역 1개소당 민방위장비 등 구입을 위해 교부세 지원
- 훈련참여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 면제

나) 지역·마을단위훈련의 실효성 제고

ㅇ 동일취약지역 중심 동종훈련 반복실시로 훈련내용 체득토록 유도

ㅇ 훈련일자를 주민자율로 결정

ㅇ 행정기관 보유장비 사용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ㅇ 사전준비회의와 예행연습 실시

ㅇ 장비는 지역내(마을회관 등)에 비치

ㅇ 훈련책임자에 대한 교육 실시

3) 전국단위시범훈련

ㅇ 훈련시기 : 연 4회(분기별 1회)

- 훈련일정은 도(시·군) 자유 결정

ㅇ 훈련주관 : 도

- 훈련지역의 해당 시·군과 공동 추진

○ 훈련참여

- 민방위대원 · 주민 · 경찰 · 소방 · 군부대 등
- 한전 · 적십자사 · 보건소 · 유관기관 · 단체 등 공동 시연

○ 훈련운영 : 16개 시 · 도 윤번제 실시

- 훈련시기별 취약재난과 관련 있는 훈련종목 선정
- 전국훈련에 걸맞는 훈련규모 및 참관범위 확대
- 새로운 훈련기법 개발 및 파급의 기회로 활용

○ 훈련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 장관표창, 기타 재정지원 등

4) 직장 · 단체훈련

가) 추진방침

○ 민방위의 날 훈련(방재훈련)시 동시 실시

- 직장대별 연 1회 이상 훈련 실시, 자체행사나 교육과 연계

○ 실정에 맞는 특성훈련 실시로 관심과 활력 제고

- 취약한 분야를 훈련종목으로 선정, 실정에 맞게 운영
- 대규모 직장대는 독자적 운영, 중 · 소규모대는 합동 운영

○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 · 단체간 지원 강화

나) 훈련운영

○ 민방위대원이 300명 이상인 단체 · 직장에서는 연 1회 이상 훈련 실시 유도

○ 가장 취약한 분야를 훈련종목으로 선정

- 안보분야 : 공습에 따른 직장 방호, 화생방 방호 등
- 안전분야 : 화재 · 유독가스 · 화공약품 누출대비 등

○ 예방적 차원의 방호력과 사태발생시 수습능력 제고

- 직장 전부서의 직원이 참여, 실제적인 훈련 실시
- 안전대피를 위한 경보전파 및 직원통제훈련 실시
- 자체방호시설 및 장비활용, 사태예방 및 수습능력 제고
- 사태 발생시 인명구조, 응급조치, 후송 등 수습복구

○ 지역별로 특정시기에 집중 실시되지 않도록 분산 운영
- 취약요인과 지역·직장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 시·군별 연간 계획 수립
- 직장·단체의 자체훈련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 수렴

○ 지역단위 소방·경찰·군부대 등의 인력·장비를 적절히 지원 배치
- 특정 직장대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인력장비의 배분과 역할기능을 명확히 구분 조치

○ 각급 기관장 참관 격려, 관계공무원의 훈련상황 지도지원
- 지역단위 기관·단체장이 훈련직장대에 고루 참관, 임직원 위로 격려

다. 학교훈련

1) 학교실정에 맞는 대피훈련 운영

○ 경보발령과 동시에 전 교직원·학생 대피를 원칙으로 함

○ 대피시설 수용규모 감안 학년별, 반별 윤번제로 실제 대피

○ 대피시설이 없는 학교는 강당·체육관 등 대체 활용

○ 대피전담교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피유도

※ 교육부(각 지방교육청)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 민방위훈련 시범학교 운영 내실화

○ 사태수습훈련이나 방재훈련시 가급적 시범학교를 훈련장소로 활용하고 현장중계 등 홍보강화

○ 훈련운영관리를 카드화하여 읍·면·동 또는 시·군에 비치 관리, 전담교사가 훈련운영상황 기록 관리

○ 우수시범학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교육기자재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3. 민방위훈련 홍보강화

가. 훈련방송 실시

○ 훈련안내방송 : 전국단위 방송(행정자치부)

- 대상방송 : TV·라디오(KBS, MBC 등 각 5개 방송사)

- 방송일시 : 훈련 하루전 방송사별로 방송(1분 이내)
- 제작방법
  · 라디오 녹음 : KBS 라디오 전담
  · TV녹화 : TV 3사(KBS, MBC, SBS) 순번 녹화
- 방송내용 : 훈련시간 · 경보전파 · 훈련종목 · 행동요령 등

○ 훈련실황방송

<민방공훈련> : 전국단위방송(행정자치부, 관계전문가)

- 대상방송 : 전 라디오 생방송(8개 방송사, 20분간)
- 방송내용 : 주요 훈련내용 · 행동요령 · 조치사항 등
- 방송방법 : KBS - R실황, 여타방송국 KBS - R수신방송

○ 훈련평가방송

- 대상방송 : KBS 등 5개 라디오 방송사
- 방송일시 : 훈련후 방송사별로 방송(4~5분 정도)
- 방송내용 : 훈련결과 잘된점, 개선사항, 수범사례 등

나. 다양한 홍보대책 강구

○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 홍보매체 : 라디오, TV, 신문, 유선방송, 전광판, 마을앰프, 반상회보, 각종 게시판 등 활용
- 계도사항 : 훈련일시 및 훈련내용, 훈련시간중 주민 · 가정 · 직장에서 해야 할 일 등

○ 대도시 등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홍보강화

- 단지내 가구별 방송시설 활용 등

○ 훈련참여 분위기 제고 : 민방위 표상 등 적극활용

- 지역순회 가두방송과 아파트 구내방송 실시
- 전직장 입간판 설치 : 『오늘은 민방위의 날』
- 민방위 가로기 게양 : 도심지 주요 가로변과 훈련장 인근지역 (가급적 훈련 이틀전 오후에 게양)

○ 백화점, 터미널, 극장, 공원, 운동장 등에서의 사전방송 및 대피시간에 라디오 방송 중계

○ 대중교통은 훈련시간대에 라디오 방송 청취

Ⅳ.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강화

1. 비상대피시설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대피호, 건축물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차(보)도,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구조물 및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자가발전기, 방송통신시설, 급수시설, 공기여과기, 제독시설, 소화기 등의 부대시설 일체

가. 현 황

○ 확보현황

소요량(평)	확보량(평)	확보율(%)	비 고
256,152	293,397	115	

※ 소요기준 : 읍이상 도시지역 거주인구 4인당 1평

○ 소요주체별 현황

계	정부지원 시 설	자치단체 시 설	공공용 지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1,003개소	4	43	98	858
293,397평	717	6,478	16,546	269,656

나. 비상대피시설 확보

1) 신규시설 확충

가) 추진방향

○ 정부지원시설 : 인구밀집지역 및 대공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되 점진적으로 확대

○ 자치단체시설 : 도 및 시·군, 공공기관청사 신축시 설치권장

나) 설치기준 및 규모

○ 현대전에 대비한 화생방 방호가 가능하도록 시설설치

○ 도, 시·군 단위 지휘용 대피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 민간시설 설치시 시범시설로서의 기능 확보

○ 개소당 660㎡(200평)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2) 지정에 의한 확보

가) 공공 및 민간시설의 지정 확보

○ 대상시설

-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설치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중 대피기능을 갖춘 지하층을 시설주와 협의 대피시설로 지정관리
- 지하실 바닥면적 60㎡(18평)이상 (일반주택 지하시설 제외)

○ 지정확대 및 정비

- 권역별 대피능력을 감안하여 공공단체 및 민간시설 지정 확대
-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되 권역별 균형에 맞게 안배
- 대피능력 과다지역은 저등급 순으로 지정해제
- 유동인구가 많은 일시다중집합장소 지하대피시설 추가지정 (역, 터미널, 시장 등)
- 공공용 시설 지정의 경우 시설주와 협의 지정서 교부
- 지정 통보시에는 평시관리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나) 민방위준비명령에 의한 시설 확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대피시설로 사용 가능토록 명령

- 60㎡ 이상의 대피시설

○유사시 활용이 용이하며, 방호력이 우수한 시설을 우선 지정

다. 유지 관리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 강화

○ 정부지원·자치단체시설 : 실질적인 책임자를 지정

○ 지정시설 :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정기점검 실시 및 대피시설 현황도 작성비치 등 관리 강화

2) 대피시설 안내 강화

○ 안내·유도 표지판 미부착시설에 대한 표지판 부착

○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대피시설 위치, 규모, 대피루트 등을 인터넷,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안내

※ 대피유도요원에게 유도요령, 대피루트 등에 대한 교육 강화

3) 평시활용·개방지도

○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시활용
(예 : 휴게실, 노인정, 전시장, 독서실 등)

- 고정시설물의 설치, 이동이 곤란한 물건 적치 지양

○ 폐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비상시 주민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시개방 유도

4) 용도폐지

○ 시설관리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협소(10평미만) 또는 누수, 균열, 환풍 불량 등으로 활용 불가능한 시설

○ 시설입지가 부적정하여 사실상 대피할 수 없는 시설 등

5) 지정해제

○ 소요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정된 권역의 저등급 시설

○ 주변 여건 변화와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른 기능상실 및 노후 등에 따라 방호력이 미흡한 시설

2. 비상급수시설

전쟁, 수원지 파괴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의 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음용수,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 현 황

○ 확보현황

소요량(천톤/일)	확보량(천톤/일)	확보율(%)	비 고
25,614	28,815	112	

※ 소요량 : 읍이상 도시지역 거주인구 대상, 1인/1일 25ℓ 기준

○ 소요주체별 현황

계	정부지원 시 설	자치단체 시 설	공공용 자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127개소	71	10	28	18
28,815톤/일	15,268	2,210	6,132	5,205

나. 비상급수시설 확보

1) 신규시설 확충

가) 자치단체시설

○ 2003년 확충계획

- 3개소 : 천안시, 금산군, 홍성군(총사업비 180백만원)

○ 시설계획의 수립

- 설치대상지역, 시설수준, 시설규모, 설치장소 등을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 추진
- 비상시 급수대책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 수질 등을 고려 평시 활용성과 연계하여 설치·운영
  · 식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 지정시설중 개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방안 강구

나) 민간시설

○ 비상급수시설 설치의무화 건축물의 지속적 파악, 확보

-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 설치

○ 민간자율 확보 유도

- 대상지역 : 해안, 오지, 고지대 등 지역여건상 지하수맥 부족지역

2) 지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 확보

○ 시장·군수는 필요시 국가·공공단체 및 개인소유의 급수시설중 수질 및 수량이 양호한 시설을 시설주와 협의,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활용

- 일일 생산능력 100톤 이상
  ※ 단, 100톤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지정 완료 후에도 확보량이 소요량에 미달하는 지역의 경우 상급단체의 사전승인하에 지정기준을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
- 공공용 지정시설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자(자치단체장)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조에 의거 수질검사 실시

3) 민방위 준비명령에 의한 시설확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지하양수시설 또는 급수탱크, 간이여과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정비를 명령

3. 민방위장비

민방위사태, 재난·재해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

가. 확보 현황

구 분	종 류(종)	수 량(천점)
기 본 장 비	11	26,500
지 역 특 성 장 비	10	33,915
권 장 장 비	8	908
계	29	61,323

※ 장 비 구 분

- 공통장비 :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재해·재난에 대비한 기초적 장비 (메가폰, 환자용 들 것 등)
- 지역특성장비 : 재해·재난에 대비한 보편적인 장비(등짐펌프, 구명환 등)
- 권장장비 : 재해·재난에 대비한 전문적인 장비(기계톱, 구명보트 등)

나. 장비확보

1) 확보방향

○ 재난·재해 발생시 초등조치·인명구조 및 주민대피 유도 등 일반 민방위 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확보

○ 각급 민방위대별로 기본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차등적 장비 확보

- 민방위기동대는 재난발생시 초등수습을, 통리대는 인명 구조및 자위활동 담당을 전제로 필요장비 확보

○ 각 지역별로 빈발하는 재난유형별 수습대응에 적합한 민방위장비 확보

2) 확보기준

○ 공통장비 :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보

○ 지역특성장비 : 지역의 재해·재난에 따라 자율 확보

○ 권장장비 :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 고려 자율 판단확보

※ 장비별 확보수량 등은 대원수, 면적, 지역특성 등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별도 지침시달

3) 민방위준비명령에 의한 장비확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 응급복구, 화생방 의료·구호, 소방 및 방공, 기타 위장시설 물자, 대피용 등 물자·시설·장비 소유자에게 준비명령으로 확보

다. 효율적인 운용 관리

○ 공통장비는 읍·면·동별로 보관, 지역특성장비 및 권장장비는 시·군에서 통합관리

- 장비보관 전용창고를 확보 장비관리 철저
- 재해상습지역의 경우 마을회관, 공공창고 등에 보관하여 재해발생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리

○ 유사시 필요장비의 신속한 동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장비 사용 협조체제 구축·유지

V. 민방위경보망의 체계적 관리·운영

1. 민방위경보발령 및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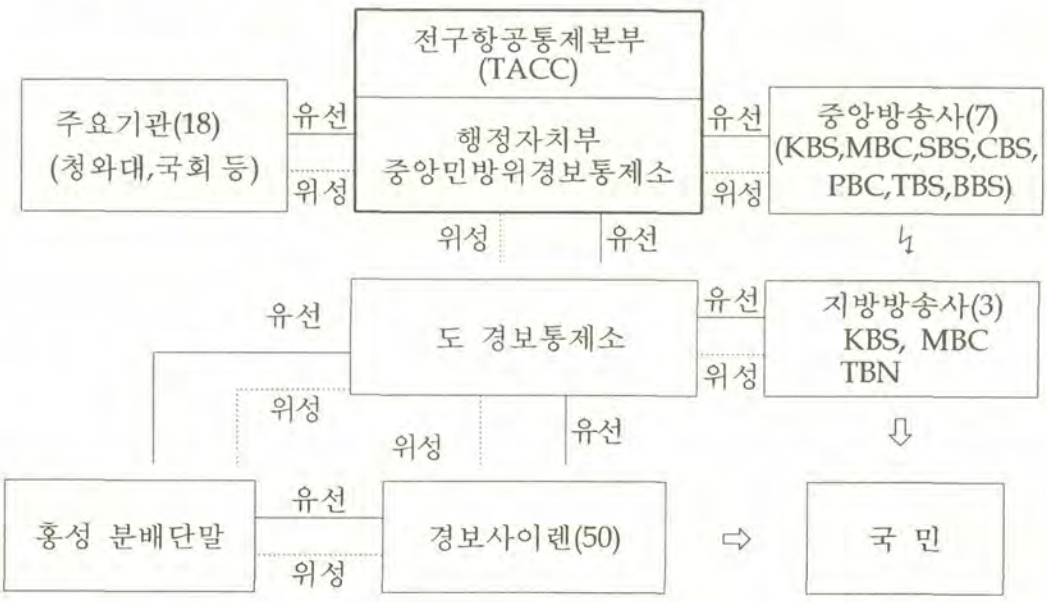
가. 민방공경보

○ 경보종류 :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 발령요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지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때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 발령권자 : 행정자치부장관
※ 다만, 지역군부대장이 일부지역에 국한된 화생방경보를 선포하거나, 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시장·군수가 화생방경보 발령

나. 재해경보

○ 경보종류 : 경계, 위험, 해제
○ 발령요건 : 홍수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 발령권자 : 시장, 군수(시·군 재해대책본부장)
※ 다만, 2개 시·군이상인 경우 도지사가, 홍수에 따른 재해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댐 관리자가 경보발령

다. 경보전달체계



2. 민방위경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가. 경보 상황관리태세 확립

○ 상황유지반 편성, 24시간 상황유지
- 중앙(5명 3개반), 도(2~3명 3개반)으로 구성

※ 분배소는 주간 상황유지

○ 업무집중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상황근무체계 유지
- 기본체계 : 24시간 3교대 운영

○ 장비관리반 편성, 정기점검 및 고장발생 대비 조치
- 상황유지반 이외 인원으로 주간근무(필요시 긴급근무)

○ 방송사 및 주요기관 등 경보전파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 월 2회이상 주요기관별 비상연락망 일제 점검

○ 경보전달방법 및 경보장비 이상시 운영요령
- 경보통제대를 이용 유선/위성 동시발령 및 방송통제대로 경보방송
- 경보발령과 병행하여 일제지령장치를 이용, 육성으로 경보전달
- 유선장비 이상시 : 위성경보장비를 이용, 경보전달
- 경보통제장비 이상으로 경보발령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통제소에 요청하여 위성으로 경보발령
- 기타 행정 및 일반전화 등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 경보전달

나. 민방위경보시설 및 회선망 점검

○ 일일 6회이상 경보시험 실시로 완벽한 경보망 유지

○ 방송사 종합시험 및 위성경보망 절체 운용시험 등 점검·정비 강화

※ 시험모드상태에서 화생방·해제경보 발령으로 경보시스템 종합시험

다. 장비고장시 조치요령

○ 자체적으로 응급조치가능한 사항은 상황근무자가 응급 조치

○ 자체적으로 응급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비점검반에게 연락, 고장장비 수리 조치

○ 점검반에서도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수리업체로 하여금 수리토록 조치

○ 경보시설에 대해 유지보수능력이 있는 보안등록 업체를 선정하여 장비고장 발생시 신속한 고장수리체계 확립

○ 중앙 및 도 경보통제소에서는 관할 시·군지역에 대한 예비품 확보 상황을 년 2회(6월, 12월)조사하여 현황관리

○ 예비품은 필요시 도 통제소에서 총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축전지는 내용년한 초과분 교체)

< 예비품 확보기준 >

△ 주제어용 경보장비 및 경보방송장치 등 주요경보전달장비는 예비장비 및 주요구성품 1식 확보

※ LAN·위성통신장비 등 외자도입장비에 대한 예비품 우선확보 조치

△ 그외 경보장비는 주요구성품을 전체시설수의 20% 확보

라. 전용회선 관리

○ 주·야 전용회선 고장에 대비, 관할지역 KT측과 협조체계 유지 유사시 타 회선으로 교체 등 긴급 조치후 관할 경보통제소에 보고

○ 중앙 및 도 경보통제소장은 전용회선 분기별 고장 통계를 분석, 고장이 잦은 구간은 해당 전화국에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문서통보 조치

마. 경보사이렌시설 유지관리

○ 시·군에 설치된 경보사이렌은 자치단체장 책임관리제로 운영

- 시·군·출장소, 읍·면·동별 관리담당자를 지정, 주 1회 책임점검

○ 운영관리사항

- 경보시설 점검일지, 경보시설 보안관리부 비치 및 기록관리
- 주변환경 정리정돈, 수동취명 등 비상시 대응태세 요령 습득
- DSU, MCU, DET 등 유선/위성수신기 동작상태 점검
- 앰프, 환경감시기능, 전원부, 밧데리, 피뢰시설 등 안전상태 점검

○ 경보장비 관리지침에 따른 관리 이행여부 수시점검 실시

3. 민방위경보시설 방호 및 보안관리

가. 민방위경보시설 방호대책

< 기 본 방 향 >

△ 적의 폭격 등 피습에 견딜 수 있도록 경보통제소 지하화

△ 적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화생방 방호장비 확충

△ 경보통제장비의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장비·물품 확보

○ 경보통제시설의 지하화

- 지상공간에 설치된 경보통제소는 적정 지하공간으로 이전
  - 확보가 곤란한 경우 건물신축시 반드시 지하화
  - 안전관리 부서가 동일청사내에 있는 경우에는 통합상황실 구축
- 지하공간의 근무환경 개선
  - 경보통제장비의 정상적 운영에 적정한 온·습도 유지

○ 경보통제시설의 출입자등 주변 감시장비 보강

- 경보통제소 및 분배소 주변에 CCTV 설치·운영

○ 경보요원에 대한 화생방방호 개인장비의 상태점검 및 확보

- 방독면, 보호의, 해독제 및 피부제독제 등

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 전 경보시설 시설관리책임자(정, 부) 지정 운영

○ 통제소, 분배소, 사이렌단말장치는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으로 설정·운영

○ 무인경보단말은 상시 시건상태로 운영 유지

○ 모든 경보시설은 출입자 통제 및 보안 정기점검 기록유지

4. 경보가청률 제고

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 3 ~ 2003. 11
- 총사업비 : 50백만원(교부세 25, 지방비 25)
- 사업주관 : 도
- 사업내용 : 신도시·도시확산지역 등 경보사이렌 신설 1식

○ 추진일정

- 확충사업 추진계획 수립 : 3 ~ 4월
- 물자구매 및 설치공사 : 5 ~ 8월
- 시운전 및 준공 : 9 ~ 11월

○ 사업물량 및 사업비 : 1식, 50백만원

나. 라디오경보 수신기 개발·보급 방안 검토

○ 경보발령시 라디오 전파를 수신하여 백화점·공동주택등 다중이용시설의 구내방송을 강제로 개폐하여 경보방송을 할 수있는 라디오 경보수신기 개발·보급방안 검토

Ⅵ. 주민자율신고체제 확립

1. 주민신고망 현황

가. 연 혁

- ○ '75. 10. 20 민방위대 창설과 함께 민방위대 임무로 국민 신고망 구성 운용
- ○ '82. 1. 22 군·경·예비군 등 다원적 운용의 신고망을 행정자치부로 통합일원화

나. 주민신고망 : 총 29,250망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19,539망	1,693망	3,101망	4,917망

다. 신고망 운영·관리

- ○ 매년 정기(2회) 및 수시 정비·보완
- ○ 신고자에 대한 표창, 보상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 ○ 유관기관 합동『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설정 운영
- ○ 언론·방송사와 협조 홍보활동 지속적 전개

2. 주민신고망 보강 및 관리강화

가.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 ○ 정비기간
  - 정기정비 : 2월, 6월(집중홍보기간)
  - 수시정비 : 분기 1회 정도
- ○ 주 관 : 시·군
- ○ 정비대상
  -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 정비·보완
  - 임무에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한 신고원 교체

나. 지역특성에 맞는 신고망 구성 및 관리 강화

1) 도시(읍 이상) 지역

- ㅇ 반단위를 기본으로 조직하되
- ㅇ 아파트지역, 공단 등 특수지역은 생활권역 단위로 구성

2) 농·어촌(면) 지역

- ㅇ 자연부락단위로 조직하되
- ㅇ 산간·오지·해안지역 등은 소규모 촌락단위로 구성
- ㅇ 농공단지 등 신규집단시설에 "신고망" 보강

3) 직 장

- ㅇ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신고망이 필요한 직장단위로 조직

4) 관리책임자

- ㅇ 통·반장 자연부락책임자, 직장장 등이 책임관리
- ㅇ 지역여건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여 관리

다. 특별관리망 운영

1) 대 상 : 군·경에서 대공취약지로 지정한 지역

2) 관리책임 : 시장·군수

3) 특별관리망 운영관리

- ㅇ 대공 취약지 특별관리망 지정은 군·경과 협의하여 확정
- ㅇ 취약지 관리카드 작성 비치 활용
- ㅇ 도, 시·군 단위로 정기지도·확인 실시

4) 관리감독 및 교육강화

- ㅇ 행정관서 업무기능별로 관리담당책임제 실시

< 예 시 >

- 경 찰 : 호텔, 여관, 집단하숙촌, 여인숙
- 환경위생 : 음식점, 다방, 이·미용업소, 유흥업소, 전자오락실
- 수 산 : 어촌, 해안지대
- 관 광 : 관광지, 유원지, 역, 터미널
- 보 건 : 약국
- 소방, 상공 : 시장, 상가, 백화점 등

○ 업소관련단체를 통한 교육·홍보

- 분기 1회 업소 기회교육 활용 주민신고 교육·홍보

< 예 시 >

- 요식업협회 : 식당, 주점, 싸롱
- 다방업조합 : 다방
- 숙박업협회 : 호텔, 여관, 여인숙
- 농·수산협회 : 농·어촌

5) 특별관리망의 유관기관 통보

○ 주민신고망 정비후 신고요원 변경사항 통보 철저

○ 군·경 등 유관기관의 반기별 주민신고 접수처리상황 파악관리

라. 이동·고정신고원의 정예화

1) 이동신고원

가) 구 성 : 읍·면·동단위로 10~20명이내로 구성

○ 대 상 : 업무성질상 지역실정과 지리에 밝은 자 우선

- 집배원, 전기·수도검침원, 외판원
- 도로·하천·산림감시원, 환경미화원, 운수·철도·관광종사원, 택시

운전기사, 각급기관 문서사송원, 선박종사자

-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원, 청원경찰, 아마추어 무선사, 경비용역업체 종사자, 등산인, 낚시인, 어민

○ 역　　할 : 거동수상자, 각종 범죄, 민방위사태, 기초질서 저해사범 등의 신고 및 주민계도

○ 위촉권자 : 시장·군수

나) 이동신고원의 관리·운용

○ 기관장 표창, 격려금 지급 및 기념품 증정 등 인센티브 부여

○ 년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및 행사지원 격려

○ 분기 1회 이상 소속기관·단체장 교육·홍보

○ 주민신고 홍보물, 신고요령 책자, 전단 등 제작 배포

다) 관리 감독 및 교육 강화

○ 읍·면·동장을 이동신고원 관리책임자로 지정

○ 유관부서 및 실·과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

- 경　찰 : 자율방범대, 청원경찰, 경비용역업체 종사자
- 우체국 : 집배원
- 운　수 : 운전원
- 수　도 : 수도검침원
- 청　소 : 환경미화원
- 상　공 : 외판원
- 한　전 : 전기검침원
- 소　방 : 의용소방대원

2) 고정신고원

가) 구　성

○ 선정기준

- 교통혼잡지역의 대중이용업소 또는 이용장소중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
- 범인성 위해환경업소 종사원을 신고요원으로 위촉

○ 대 상

- 업소의 대표 또는 종사원(요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 업소, 다방, 매점, 약국 등)
- 특히 테러대비 대형·고층건물 등 주요시설 주변 업소

○ 역 할 : 이동신고요원과 동일

○ 위촉권자 : 시·군 지역방위협의회 의장

나) 고정신고원의 관리·운용 : 수혜 및 행정편의 제공

○ 주민의견 수렴 숙원사업 우선 해결

○ 사소한 법령위반사항 자율보완 강구 등

다) 관리감독 및 교육강화 : 특별관리망에 준함

○ 행정관서 업무기능별로 관리담당책임제 실시

○ 업소 및 관련단체를 통한 교육홍보 강화

3) 신고원 평소관리 강화

가) 신고원 위촉행사 개최

○ 시 기 : 매년 3월(추가 위촉시는 수시)

○ 수여자 : 시장·군수 위촉장 직접수여
(지역방위협의회 의장 명의)

○ 행사내용 : 위촉장수여, 임무부여 및 활동요령교육 등

나) 교육·훈련 및 격려

○ 정기교육(관련부서, 협회 및 단체 등과 협조)

- 시 · 군 주관 : 연 2회 소집교육
- 읍·면·동 주관 : 분기 1회 소집교육
- 통·리·반장 주관 : 월 1회 간담회

○ 기관장 서한발송 : 집중홍보기간중

○ 주민신고 모의훈련 : 집중홍보기간중

다) 활동실적 점검

○ 망별 신고망도 및 신고원 명단 비치

- 시·군, 읍·면·동 사무실에 신고망도 비치(신고요원 표시)

○ 개인별 활동실적 관리(추후 사진제작 참고자료 활용)

○ 신고원 행사지원 :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

3. 주민신고체제 확립

가. 주민신고홍보 강화 및 신고의식 고취

○ 전 국민의 신고 생활화로 의식제고

○ 주민신고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 주민신고원의 홍보 요원화 및 주민신고관련 홍보물 배포

○ 반상회 등 주민 모임시 신고대상 및 요령 등 홍보

○ 지명수배자 등 긴급신고사항 수시 전파

○ 각종 주민신고 홍보물 및 신고정보 우선 전파

○ 신고망 관리책임자 집에 신고망도 및 신고원 명단 비치 활용

나. 주민신고 대상범위의 확대

○ 간첩, 거동수상자, 강·절도, 집단폭력 등 범죄신고

○ 각종 재해·재난발생 등 위험요소 신고

○ 생화학 테러 등 얼굴없는 위험요소 신고

○ 시민 건전생활 위해요소 신고 등

<신고대상 예시>

○ 거동수상자 신고
-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없이 배회하는 자
- 일정한 직업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 이유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

○ 범죄발생 징후사례
-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차나 오토바이
- 이유없는 전화가 자주 오는 경우
-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 대문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 외부인이 까닭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
- 호우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가는 경우
- 제방침식 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시민 건전생활 위해요소
- 음란퇴폐영업, 부동산투기, 도박 등 퇴폐조장행위
- 교통위반, 자연훼손,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행위
- 본드흡입, 마약밀매, 부정식품 판매행위
- 부녀자 납치·희롱, 노약자에 대한 폭언 등 반 윤리행위

다. 주민신고 접수·처리체계 확립

1) 주민신고대상 홍보

○ 각종 매스콤 및 홍보물 이용, 신고대상 및 요령 지속적 홍보
○ 반상회보 게재 및 반상회 날을 주민신고 홍보일로 지정 운영
○ 지역적 시기적으로 긴급히 신고가 요구되는 사항 긴급전파
○ 집중홍보기간 운영 및 각종 교육기회 이용 적극 홍보

2)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방문조사와 신고자의 비밀유지,신변보호 방안 강구

-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참조

○ 행정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사항 종합파악 관리

- 민원실에 신고접수처리대장 비치 활용

○ 신고사항중 타 기관에 이첩사항 처리결과 파악 관리

○ 신고사항 명확한 처리 및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처리결과 통보

3) 우수신고사례 적극홍보

○ 신고사례집 발간 및 정기 간행물 등에 게재 전파

○ 각종 교육시 주민신고 교육자료로 활용

4) 접수 및 처리사항 관리

○ 주민신고 추진태세 실적 보고시 반영

4. 범국민적 신고의식 고취

가. 주민신고의식의 생활화

1) 대대적인 주민신고운동 전개

○ 흉포화·지능화되어 가는 범죄로부터 나와 가정을 보호하는 길은 오직 투철한 주민신고 뿐이라는 인식 확산

○ 신고요원, 사회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급 지역·직장단위에서 신고의식 확산운동 전개

○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 각급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신고의식 고취

○ 주민간담회,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한 계도활동 전개

2) 주민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가) 홍보물 제작 대국민 홍보 활용

ㅇ 새로운 홍보물 제작

- 중 앙 : 생활드라마 등을 통한 TV 홍보물 제작
- 도 : 도(시·군)당 1홍보물 제작 원칙

ㅇ 기존 VTR 적극 활용

- 사랑하는 억순이(KBS), 양촌리 112(MBC) :('95제작 방영분)
- 고향친구(KBS), 용감한 종기아버지(MBC) :('96제작 방영분)
- 좋은 일(MBC) : ('97제작 방영분)
- 신고합시다(MBC) : ('98제작 방영분)
- 잡초(KBS), 양촌리 전설(MBC) : ('99제작 방영분)
- 이상한 버릇(KBS) : (2000제작 방영분)
- 복길의 선택(MBC), 함정 (KBS) : (2001제작 방영분)
- 여름나그네(KBS) : (2002제작 방영분)

ㅇ TV·유선방송 및 홍보책자 이용 적극 홍보

- 예비군, 민방위대원 및 각종 직능단체 교육시 활용
- 학교교육, 주민 교육시 VTR 상영
- 금융기관, 각급 민원실 등에 책자, 팜프렛, 만화 등 제작 비치
- 지역신문, 시·군정지, 사보 등에 게재, 각 가정 배포

나) 매스컴 및 지역유선방송 활용

ㅇ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

- 시·군당 분기 1건 이상 신고우수사례 현지취재 보도
- 주민신고의식 고취를 위한 기획물 제작 보도
- TV 등에 자막을 활용한 주민신고표어 등 홍보

ㅇ 대중이용시설 안내방송 및 계도문 부착 홍보

- 유관기관(철도청, 지하철공사)과 협조
- 열차, 전철, 버스 및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이용 홍보

ㅇ 지역유선방송 적극 활용

- 지방(시·군) 유선TV방송사와 협조
- 행정자치부 제작 VTR 및 공익광고(CF) 등 방영

나. 체계적인 주민신고 교육실시

1) 기회교육

- ㅇ 대 상 : 민방위, 예비군, 직장단체, 새마을교육 참여 주민
- ㅇ 방 법
  - 교육주관기관과 협조, 주민신고교육 필수과목 채택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보조자료 지원 및 강사초빙 협조

2) 소집교육

- ㅇ 대 상 : 특수직종 종사자 및 고정신고원
- ㅇ 주 관 : 시장·군수(경찰서장 협조)
- ㅇ 시 기 : 반기 1회
- ㅇ 방 법 : 업소별, 계층별로 실시되는 직업 교육시 주민신고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채택

3) 순회교육

- ㅇ 대 상 : 대공 취약지 주민
- ㅇ 주 관 : 시장·군수
- ㅇ 시 기 : 반기
- ㅇ 방 법 : 행정기관은 주민소집과 교재지원을 하고, 군·경찰은 위문공연, 대민 진료, 농기구 및 가전제품수리, 장비 전시, 반공 및 주민신고영화·VTR 상영 등

4) 학교교육

- ㅇ 대 상 : 초·중·고등학교
- ㅇ 시 기 : 도덕, 국민윤리, 사회 등 교육시간 및 조회시간
- ㅇ 방 법
  - 교육자료는 시·군, 읍·면·동 단위로 협조제공
  - 시·군 교육청별로 "주민신고 시범학교" 지정

※ 귀순자의 북한실상 및 생활체험강연회와 병행실시

5) 민방위 핵심요원 교육

○ 대 상 : 통·리대장, 통·리기동분대·소대장, 직장대장, 기술지원대 분대장, 민방위담당공무원 및 교관요원

○ 주 관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과(천안소재)

○ 방 법

- 교육과정별, 기별 필수교과목으로 주민신고교육 채택

다.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 · 홍보시책 발굴(예시)

사 례 1

○ 평소 각급 기관 및 직장교환대에 주민신고 안내내용을 녹음, 전화대기 시간을 이용 홍보

○ 자동기상예보전화(131) 및 114 전화안내시 신고요령 홍보

사 례 2

○ 병따게, 책받침, 민원안내서, 각종고지서, 승선권 등에 주민신고홍보용 각종표어 게재 배포

○ 의·약사협의회에서 약봉투에 홍보표어와 신고번호 게재 배포

○ 주민신고 안내전화 스티카 제작 배포

사 례 3

○ 주민신고 VTR "이런 것은 신고합시다" 유선방송 이용 방영

○ 극장에서 영화 상영전에 주민신고 안내방송 및 VTR 상영

○ 지역유선방송, 지역생활신문 활용 주민신고 홍보

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1) 시 기 : 2003. 6월중(10일간)

2) 주 관 : 행정자치부, 지역방위협의회(도, 시 · 군, 읍 · 면 · 동)

※ 협조 :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충남교육청, 군부대, 경찰청 등 유관기관

3) 주요내용 : 주민신고생활화 분위기 조성

○ 대국민 집중홍보 및 교육실시
- 기관단체별로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전개
- TV, 라디오, 언론매체, 지역유선방송 활용
- 주민신고원에 대한 일제교육 실시

○ 주민신고망 일제 점검·정비
- 지역실정에 맞도록 신고망 정비 보완
- 신고망책임자 및 이동·고정신고원 적임자 교체 정비

○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
- 민·관·군·경 합동으로 추진
- 집중홍보기간이용 지역별로 연 1회 실시
- 신고자 포상으로 신고자 사기진작

○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
- 초·중·고등학교 웅변,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
- 귀순용사 강연회 및 우수 신고원 간담회 등

5. 주민자율신고 여건 조성

가. 신고자 포상확대 및 신변보호

1) 주민신고 보상제 강구

가) 보상대상

○ 범인검거, 재난예방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 신고자

○ 주민신고활동에 현격한 공이 있는 업소 또는 개인
-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준용

나) 보상방법

○ 신고보상금 지급(예시)
- 간첩신고보상금(근거 : 국가안보유공자보상금지급규정)
  · 간첩선 최고 1억5천 만원, 간첩 1억원 등
- 유흥업소 심야영업신고 보상금 : 신고 1건당 3만원

ㅇ 직종별 혜택부여(예시)

- 택시기사가 3회이상 주요 범죄신고 또는 검거시 개인택시 면허 우선권 부여
- 대중음식점 및 유흥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등

다) 필요조치

ㅇ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확보 및 자체근거규정 마련

ㅇ 우수신고자 표창, 기관장초청 간담회, 단합행사 및 선진지 견학 지원 등 사기 앙양책 강구

2) 신고에 따른 불편 및 불이익 제거(검·경찰청 협조)

가) 신고단계에서의 보호대책

ㅇ 신고자가 요청하는 장소에 경찰관 등이 현지출장하여 신고내용 조사

ㅇ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대리 청취하는 방안 강구

ㅇ 통·반에 신고용 엽서 배포 우편사서함(경찰서 112호)을 통하여 신고접수

나) 수사단계에서 보호대책

ㅇ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신분 공개시 가명 사용

ㅇ 본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 본인피해가 없도록 1차적으로 간접조사
- 소환조사시에도 가명 사용 및 신원 노출 방지

ㅇ 보호담당요원을 지정하여 신고자 보호방안 강구

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노출방지 및 안전조치

ㅇ 보도자료 작성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ㅇ 신고자에 대한 인터뷰 또는 상세한 인적사항 보도 자제

ㅇ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ㅇ 신고자가 생명·신체 등에 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 안전조치 강구(『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규칙』 준용)

2. 재난관리대책

[소방안전본부 소관]

Ⅰ. 재난예방·대응체제 강화

Ⅱ. 민·관 협동안전관리 체제 구축

Ⅲ. 체계적·과학적인 재난관리 기반 구축

추 진 방 향

○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확인 위주의 안전관리대책 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등 민·관 협동안전관리체제 구축
○ 사회변화에 따른 선진형 안전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기반강화

추 진 계 획

Ⅰ. 재난예방·대응체제 강화

1. 재난예방관리

가.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1) 목적 :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의 관리실태에 대한 분석·안전점검 등으로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해소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2)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 시 기
- 일제조사 : 연 1회(9월~11월)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 매월 1회 이상
  · 중점관리대상시설 : 매반기 1회 이상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 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가능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대상시설 전수
- 신종업소(콜라텍, 번지점프장, 찜질방)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역 등

· 시설물 :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지하철, 축대 · 옹벽, 유도선 등
· 건축물 :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백화점, 시장, 상가, 위험물질저장소 등

○ 방 법

-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도, 시·군에서 직접 실시
- 점검반은 지자체 기술직공무원과 전기 · 가스안전공사 및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구성

○ 조치(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분류 관리)

- 재난위험요인이 많은 시설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 관리
- 보수 · 보강 등으로 위험요인 해소 · 경감시설은 해제 또는 등급조정조치
- 안전조치 불이행 등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 금지
  · 시설안전관리 의무자에 갈음하여 행정대집행절차에 의거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3)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해소

○ 관리방법

- 관리카드 작성 · 이력관리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책임관리(점검 실명제)

○ 재난위험시설 해소 장 · 단기계획수립

- 계획기간 : 장기(2002~2006), 단기(2003.2월~12월)
- 내용
  · 재난위험시설 등의 정비 ·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 연도별 정비 ·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1) 재난취약시기별 · 시설별 안전점검

○ 점검시기 및 대상

- 해빙기 · 우기
  · 재난취약 축대 · 옹벽 · 절개지, 노후 건축물 · 교량
- 설날 · 추석 · 연말연시
  · 백화점 · 재래시장 등 대형상가, 영화관 · 전망대 등 공연장 및 관광휴게시설, 터미널 등
- 여름방학 · 휴가 등 행락철
  · 주요 관광지주변 청소년수련시설, 단체숙박시설, 위락시설, 전통문화시설 등 관광객 운집 예상시설
- 동절기
  · 위험물질 취급업소, 수능 종료후 청소년 집중이용시설, 동절기 레저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 점검 방법 및 조치

- 자치단체장 등 간부 대상시설 불시 직접 확인 · 점검 강화
- 중앙관계부처 합동점검반 편성 표본점검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 ·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합동으로 전수점검 실시
- 안전저해요인은 적발즉시 시정조치,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관리

2)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정 · 관리실태 지도점검 강화

○ 점검시기 : 하반기 일제조사(9월~11월중)

○ 점검방법

- 행정자치부와 도의 재난관리부서 공무원으로 점검반 편성 · 운영
- 차출된 시 · 도 공무원의 교체점검을 실시하여 상호 업무연찬기회 부여 및 공정성 부여

○ 중점점검사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상·하반기 중점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 매월 실시한 재난위험시설 정기점검 및 재난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지정·관리실태

○ 점검결과 조치

-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상 조치방안 강구 등 해소대책 수립
- 점검결과를 근거로 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3)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공무원에 대한 안전점검요령 및 점검장비 활용기법 등의 정기적인 교육실시

- 안전점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순회교육 실시
-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 이수 유도

○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구성·운영 지원

- 도지사, 시장·군수가 민간전문가 10~20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 건축물, 교량·터널 등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사전자문 및 실제점검 참여), 조치대책·등급조정 등에 관한 기술적 자문

○ 시설물의 용도별·규모별 안전점검 표준 메뉴얼의 개발·보급

- 기 개발·보급된 건축물 안전점검 메뉴얼 보완·발전
- 교량, 유·도선 등 미 개발된 사항은 추가개발 추진
- 안전점검자의 안전을 위한 점검분야별「안전수칙」마련

4)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

○ 재난위험시설은 2007년까지 연차별 해소 추진

- 총 55개소(D급 51, E급 4), 60,174백만원 ('03, 18개소, 15,847백만원)
-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통행제한 등 응급대책 추진
- 매월 정기점검, 붕괴 등 위험요인 발견시 사용금지 조치

5) 재난대비 연습 실시

○ 기 간 : 2003. 4월 ~ 10월중 실시

○ 주 관 : 도지사, 시장 · 군수

○ 방 법 : 도 통제부와 시 · 군 연습실시단간 도상 연습실시

※ 재난대비 실제연습은 2002년부터 민방위훈련계획에 따라 「민방위의 날」에 실시

○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실시
- 화재, 유도선 · 유원시설사고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도상 또는 실제연습 실시

6) 안전관리 전문인력 보강 및 정예화

○ 전문기술능력을 갖춘 안전관리인력 확충

○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강화
- 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현장참여 기술 습득

○ 자체 · 유관기관 기술인력 활용 강화

- 자체 및 유관기관 기술인력 일상지원체제 구축

○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방법 개선

- 안전점검장비 확보, 과학적인 안전점검 실시
-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의 D/B구축

2. 재난수습·대응 체제

가.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

1) 24시간 신속한 재난상황관리체제 구축

○ 상황관리의 전문성·책임성확보를 위한 전담관리체제 구축

○ 재난단계별·유형별 비상근무체제 확립

- 평시·비상시 역할분담 및 교육 등 상황대처 능력제고

2)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 행정자치부 ↔ 도 ↔ 시·군 연계 재난상황관리보고·전파체계 확립

○ 중앙·지방, 유관기관·단체간 유기적인 지원·협조 강화

나. 긴급구조·구난체계

1) 중앙긴급구조본부 설치·운영

○ 긴급구조대책 총괄 및 긴급구조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공조체계유지

○ 지역긴급구조본부 지휘, 통제

※ 긴급구조 상황관리 체계도 <붙임 2> 참조

2)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중앙구조대원 긴급투입 및 타 지역 구조대원 지원

○ 재난발생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현장지휘소의 기구 및 기능 <붙임 3> 참조

다. 사고수습 체계

1) 중앙(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 · 운영

○ 도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 시·군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 도 사고대책본부 및 실무반 <붙임 4, 5> 참조

2) 사고수습 지원 · 협조

○ 도 사고대책본부가 요청하는 지원사항 협조

○ 사고현장, 중앙 및 지역사고대책본부에 필요인력 파견 등 협조

○ 지방교부세 지원, 지방세 감면조치 등 검토

3) 재난관리법 소관 주무부처로서 수습 · 복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제도개선 추진

라. 복구대책 등 추진

1) 재난원인 등 조사 · 분석

○ 재난발생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 현황 등)

○ 책임소재 분석(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

○ 배상(보상) 등 능력 유무 판단

– 재산가액, 관련 보험가입여부 등

2) 재난피해 배상(보상)대책 추진

○ 기준 설정

- 대상자 파악(인적 · 물적대상)
- 내용 결정(장례비 · 요양비 · 유족배상 등)
- 금액 산출(라이프니쯔식 · 호프만식 등)

○ 협의

-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 및 보험전문가의 자문하에 추진
- 배상(보상)협의 당사자 선정(피해자협의회 구성 및 대표자 선정)
- 배상(보상)협의(범위 · 금액 · 방법 등)

○ 지급 · 정산

- 배상(보상)협의결과에 따라 배상(보상)금 지급
- 배상(보상)금 확정후 정산지급

※ 책임자를 규명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권 행사

3) 피해시설에 대한 항구복구대책 추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소관시설 · 업무에서 재난발생시 피해원인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 · 예방대책과 소관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 · 시행

- 지역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때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작업
-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 예방대책 및 복구계획은 중앙사고대책본부와 협의(중앙사고대책본부 미설치시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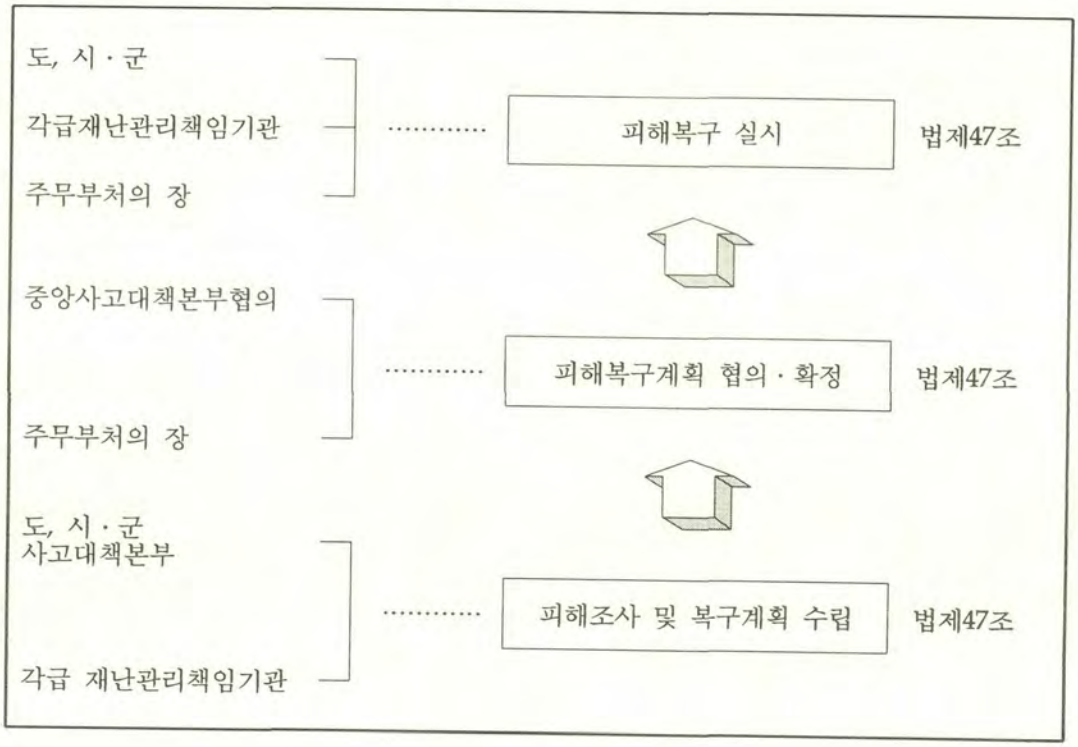
○ 공공시설의 경우 사고관련 주무부서 중심, 유관부서 합동추진

- 예산확보대책 강구(국비 · 지방비 등)

○ 민간시설의 경우 소유자 복구능력에 따라 다각적인 복구대책 강구

- 중앙 ·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개최, 복구대책 협의

※ 재난발생시 복구체계도


도, 시·군
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주무부처의 장
피해복구 실시
법제47조
중앙사고대책본부협의
주무부처의 장
피해복구계획 협의·확정
법제47조
도, 시·군
사고대책본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법제47조

II. 민·관 협동안전관리 체제 구축

1. 민간전문인력 활용방안 강구

가. 『민간기술자문단』 구성 · 운용

○ 목 적
- 재난관리업무의 인력부족과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기술상담 등을 실시하여 지역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 구 성
- 지자체별 각 기술분야 대학교수 · 기술사 ·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 10~20명으로 구성

○ 기 능
- 재난관리계획 및 당면 안전대책수립 자문
-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대책 등 기술적 자문
- 주민의뢰 시설 현장점검 및 상담 등

※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에 『안전상담의 날』 병행운영

나. 『민 · 관 안전관리 협의회』 활성화

○ 필요시마다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안전관리시책 추진과정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

○ 재난관리계획, 취약시기별 · 시설별 안전관리대책 등 당면시책 자문 · 협의

다. 재난 근접관리자 책임강화

○ 시설주 · 관리자, 협회 · 조합 등 관련 회원단체에 1차 책임부여
⇒ 자율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 시민안전봉사자 「안전지킴이」 활동 전개

가. 시민안전봉사자 활동 활성화 대책 수립

○ 지역별 선도봉사대 육성을 통한 민간자율의 안전문화운동 적극 추진
○ 시민안전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 자긍심 고취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나. 현장중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

○ 생활주변의 재난위험 요소 예찰 및 점검활동 강화
○ 시설별 안전제일운동(Safe First Movement, S · F운동)전개
※ 안전모범시설 · 업소 등 선정, 안전문화운동 확산 거점화

3.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가. 시민단체의 안전관련사업 지원강화

○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안전관련사업 지원
○ 시민단체의 세미나, 전시회 등 공동주최 또는 후원사업 확대
○ 안전연대와 시민안전봉사자간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안전문화 관련 정책수립시 참여 및 모니터링 역할

나. 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 강화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및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 공동 전개
- 해빙기 안전을 위한 영상홍보물 별도 제작 · 활용
- 매월4일 『안전의 날』 행사와 연계, 운영 활성화
○ 안전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및 회의시 시민단체 참여 확대
○ 안전관련 사회봉사활동 및 안전문화사업 공동 개최 등

다. 생활안전 무료점검 확대실시

○ 무료안전점검 수혜가구수 : 1만 ⇒ 10만 가구로 확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실시하되 지역여건 등 고려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전문기관과 긴밀 협의 추진

※ 시민안전봉사자, 민간기술자 및 공무원 등 합동으로 전기, 가스, 설비, 구조물 등 위험요소 점검

라. 대 국민 교육 · 홍보활동 강화

○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시 안전교육 강화

○ 언론매체 활용, 연중 홍보활동 전개 : 기획물시리즈, 공익광고 등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효과적 홍보 추진 : 캐릭터 및 슬로건, 인터넷 활용 등

※ 각종 안전관련 인터넷사이트 적극활용

○ 안전문화행사 및 세미나, 연찬회, 전시회 등 개최

III. 체계적·과학적인 재난관리 기반 구축

1. 재난관리법령·제도 개선 지속추진

○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대상 시설의 보수·보강 경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검토

○ 기타 안정적·효율적인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비현실적 법령 정비 등 재난예방기반 강화방안 지속추진

2. 선진형 안전수요 사전대비

○ 최근 다양한 사회적 욕구충족과 업자 상혼이 맞물려 발생된 찜질방, 번지점프 등 신종업종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

○ 소관부처에서 각 시설별 기준 마련

- 국무조정실, 문광부, 복지부 등에 소관부처 지정요구
- 소관부처별로 업종별 안전관리 규정 제정 추진

3.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 내실화

○ 2003년 자치단체별 재난관리기금의 조속 확보로 재난예방·수습의 자체 해결 능력배양

- 본 예산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확보시 추경예산에 반영

※ 법정기준액 : 최근 3년간 ('00~'02)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 해당하는 금액

○ 재난관리기금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규칙 등 정비

- 재난관리대상시설 정비 및 민간소유시설에 대한 융자 범위 확대 등

4. 재난대비자원의 확보 및 효율적 관리

가. 기본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내 동원 가능한 자원 파악관리
(2002. 12월말 기준)
○ 재난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관리 계획수립
○ 당해 행정구역내에서 동원 부족 자원은 인접 시·군과 응원지원체제 구축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추진

나. 향후조치 계획

○ 재난대비자원 일제조사 (지방자치단체) : 2003. 1~2월
○ 재난대비자원 동원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 : 2003. 2월
○ 재난발생시 재난자원 동원계획보고 (도→행자부) : 2003. 2. 28

5. 재난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

가. 지역안전지수 개발·활용

○ 안전경영, 전기·가스·재난재해·교통 등 부문별로 관계 전문기관 및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여 지역안전지수 개발·활용
○ 지자체와 주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제고 등에 지역안전지수 활용

나. 재난위험지도 개발·활용

○ 관내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을 위험색상 등 사용, 재난위험지도 개발·활용

다. 해외재난정보·안전관리기술 등 수집·전파

○ 관련부처, 유관기관, 외국공관 등과 협조를 강화하여 해외재난사례·정보 및 안전관리기술 등 수집·전파

6. 재난대비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재난관리자 과정 : 5급이상(재난관리담당 · 과장), 1주

○ 재난실무자 과정 : 6급이하, 1주(3월 · 5월)

○ 유 · 도선 안전관리자 과정 : 6급이하, 1주(2월)

○ 주택안전책임자 과정 :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 3일(5월)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과정 : 관련안전관리책임자 3일 (7월)

유·도선 등 안전관리 대책

가. 유 · 도선 안전운항대책

□ 안전교육 강화

○ 행자부 주관 유·도선 담당공무원 교육실시(2003. 2월)

※ 전문기관 위탁교육실시

○ 도 주관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교육(년간 8시간 이내)

□ 유·도선장 현장근무 체계구축

○ 기간 : 4월 ~10월

- 관광지 등 주요 유·도선장 공무원 상주근무

○ 설날·추석·연말연시, 하계휴가철 근무강화

□ 유·도선장 및 선박 점검 실시

○ 주관·일정 : 도, 시·군, 성수기전

○ 내용 : 선착장 안전시설 정비실태, 구명장비 확보 및 관리실태

○ 대상 : 선박 61척, 선착장 6개소(유선장 6)

□ 안전운항 점검

○ 주관·일정 : 도 및 시·군, 행락철 및 성수기(2003. 6~7월)

○ 중점 점검 : 화재취약시설, 장비결함사항, 승선신고 및 출입항 신고 등

□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검사

- 도지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2003. 3월까지)

- 모든 유·도선은 1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실시

○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특보시 안전조치 강화

○ 법령상 인명구조요원수 확보 및 비상구조선 상시 출동태세 확립

○ 인명구조장비정수 비치 및 출·입항 상황 관리철저

□ 사고대응 수습체계 구축

○ 사고유형별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수습체계 구축 및 지원 협조 강화

○ 승선객 안전대피 및 구조계획 수립 : 군부대·경찰·119구조대·민간 구조대 등

○ 도단위 유·도선 사고대비 실제훈련 실시

○ 사고대책본부 설치계획 수립

나. 유원시설 안전대책

○ 기간 : 춘계 (4월~5월), 추계(9~10월)

※ 행락철 이전까지 정비완료

○ 대상 : 유원시설중 안전검사 대상

○ 방법

- 소관부처(문광부), 기술사, 대학교수,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 점검실시
- 지자체는 전수조사, 중앙은 표본점검 실시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 민간전문가 참여 유도

〈유원시설 현황〉

○ 종합유원시설 : 2개업체 22종

- 상록 훼밀리랜드, 대천 필랜드

○ 일반유원시설 : 18개업체, 35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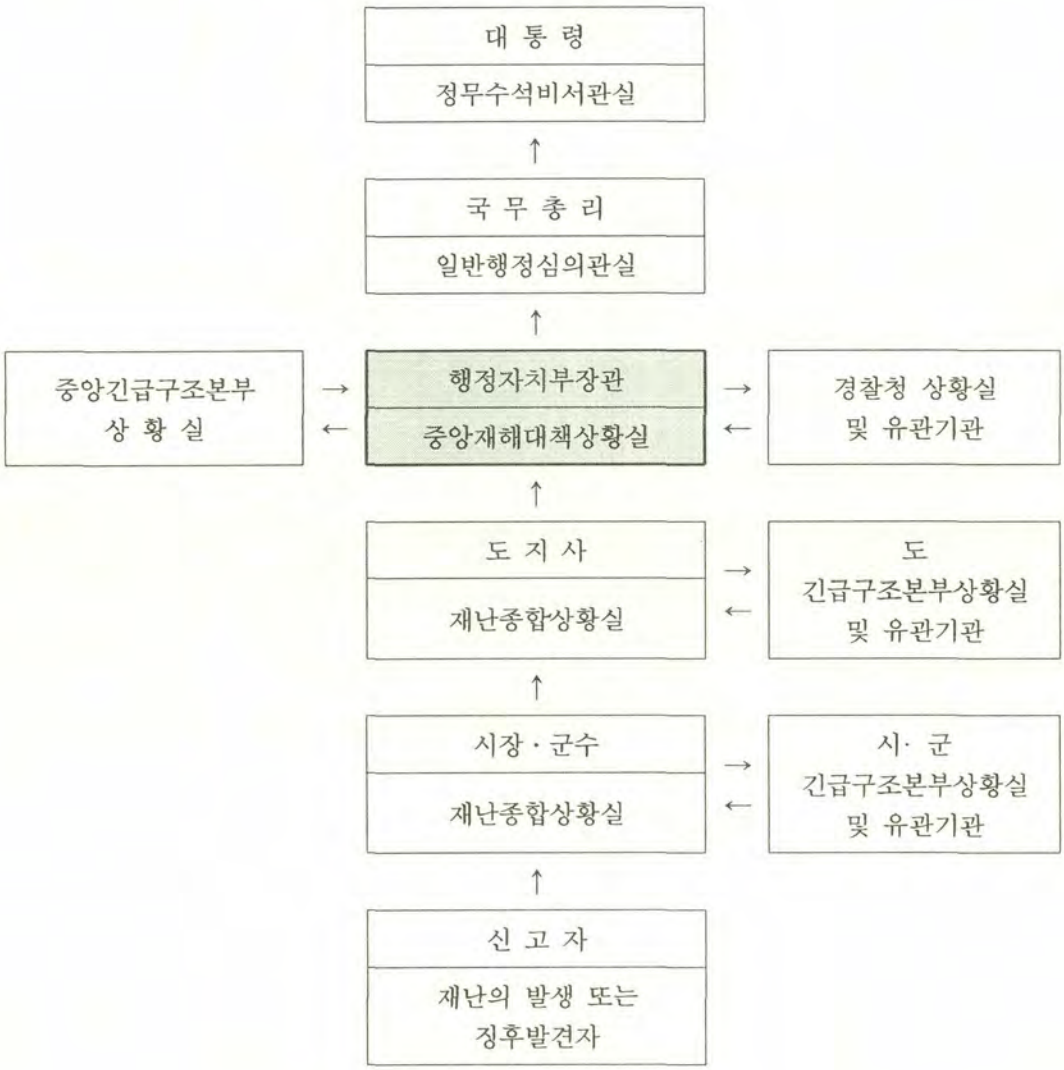
- 한양 랜드, 독립 기념관 등

○ 점검결과 조치

- 위해요인 발견시 사용중지후 보수·보강조치 및 기업주 제제조치
  ·이용객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계도·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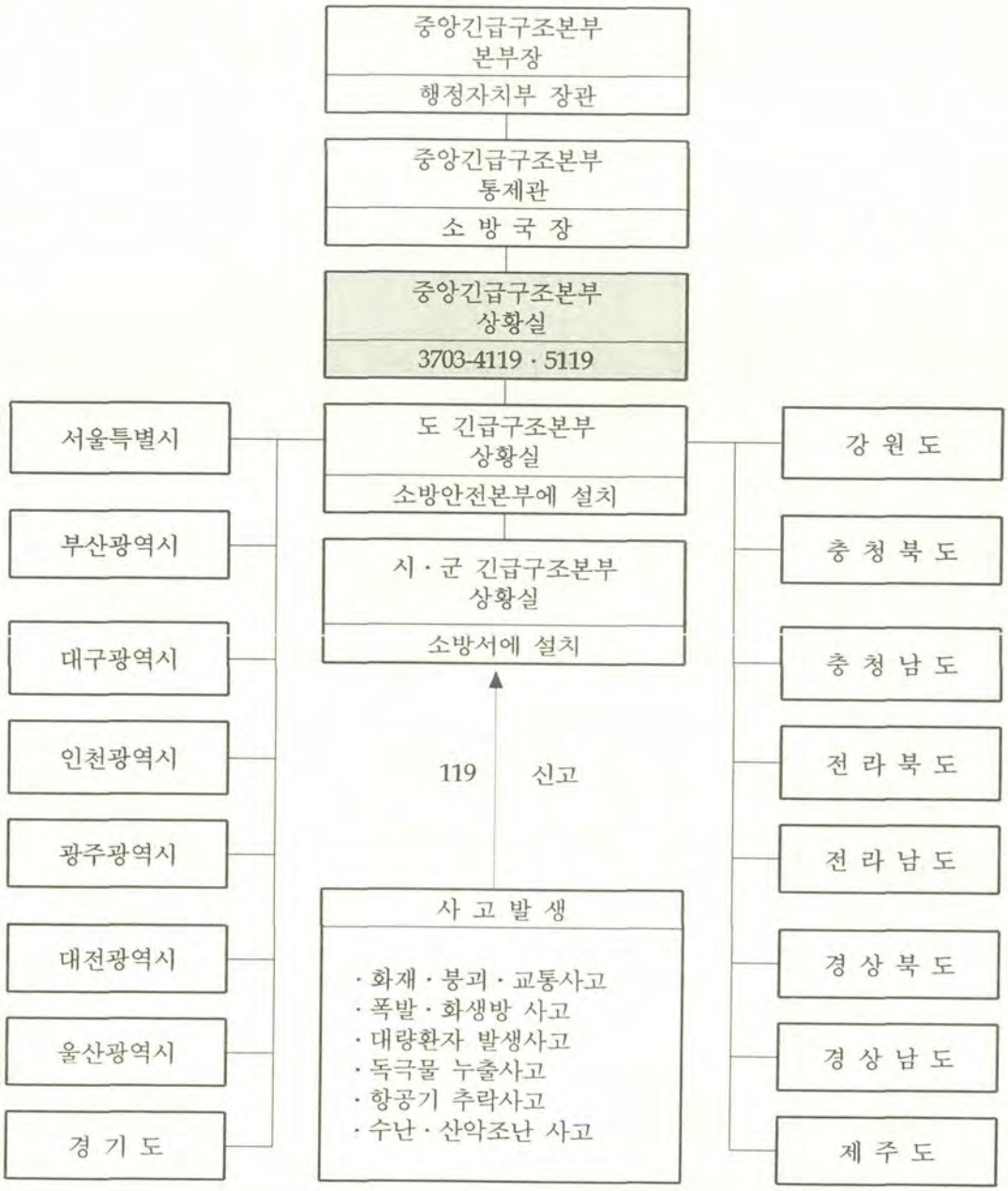
붙임 1

재난상황관리 체계도



붙임 2

긴급구조 상황관리 체계도



○ 긴급구조 관련기관 협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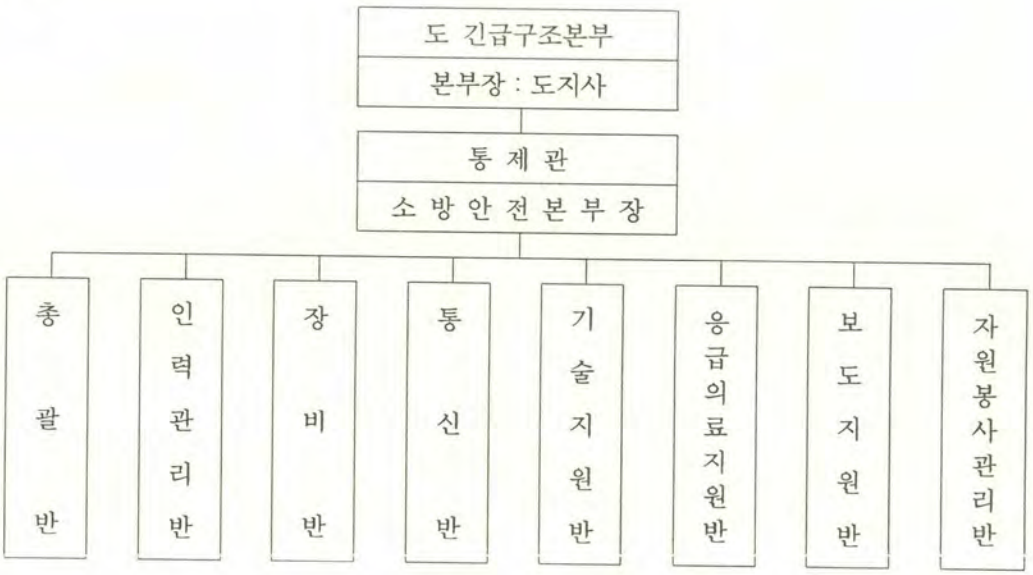
담당기관(단체)	협 조 요 청 사 항
국 무 총 리 실	○ 중앙안전사고대책위원회 운영 (단, 인위재난시)
재 정 경 제 부	○ 재난수습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조치
국 방 부	○ 인명구조 지원병력 투입
보 건 복 지 부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 ○ 응급의료기관 협조체제 지도
건 설 교 통 부	○ 건물·교량 등 안전진단 기술지원 ○ 중장비 및 조작요원 동원 협조
과 학 기 술 부	○ 전문기술 및 전문지식 자문
공 보 실	○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체제 유지
경 찰 청	○ 현장 출입통제 ○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 인명구조 지원 경찰력 투입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환 경 부 노 동 부	○ 산하기관·단체의 협조체제 구축 지도
대 한 적 십 자 사	○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 자원봉사업무
한 국 전 력 공 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단전시 전력공급(조명·동력) ○ 전기안전관리
한 국 가 스 공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공급 차단, 가스안전관리 ○ 구호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 등
한국전기통신공사	○ 긴급전화 가설
한 국 수 자 원 공 사	○ 댐 및 수로에 대한 사용 협조
한 국 도 로 공 사	○ 고속도로상 응급환자 이송 협조
대한광업진흥공사 대 한 석 탄 공 사 삼성3119구조단	○ 인명 구조기구·구조대원 협조

붙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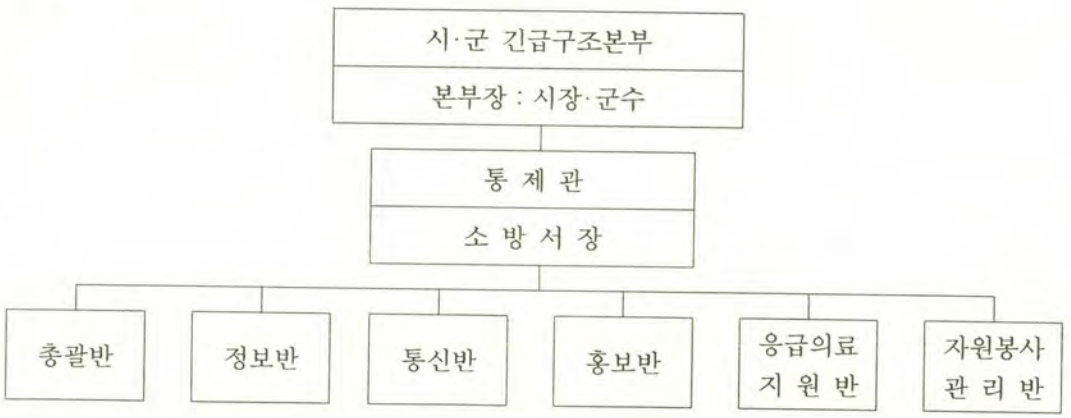
현장지휘소의 기구 및 기능

가. 현장지휘소의 기구

1). 도



2) 시·군



나. 현장지휘소의 기능

1) 도 현장지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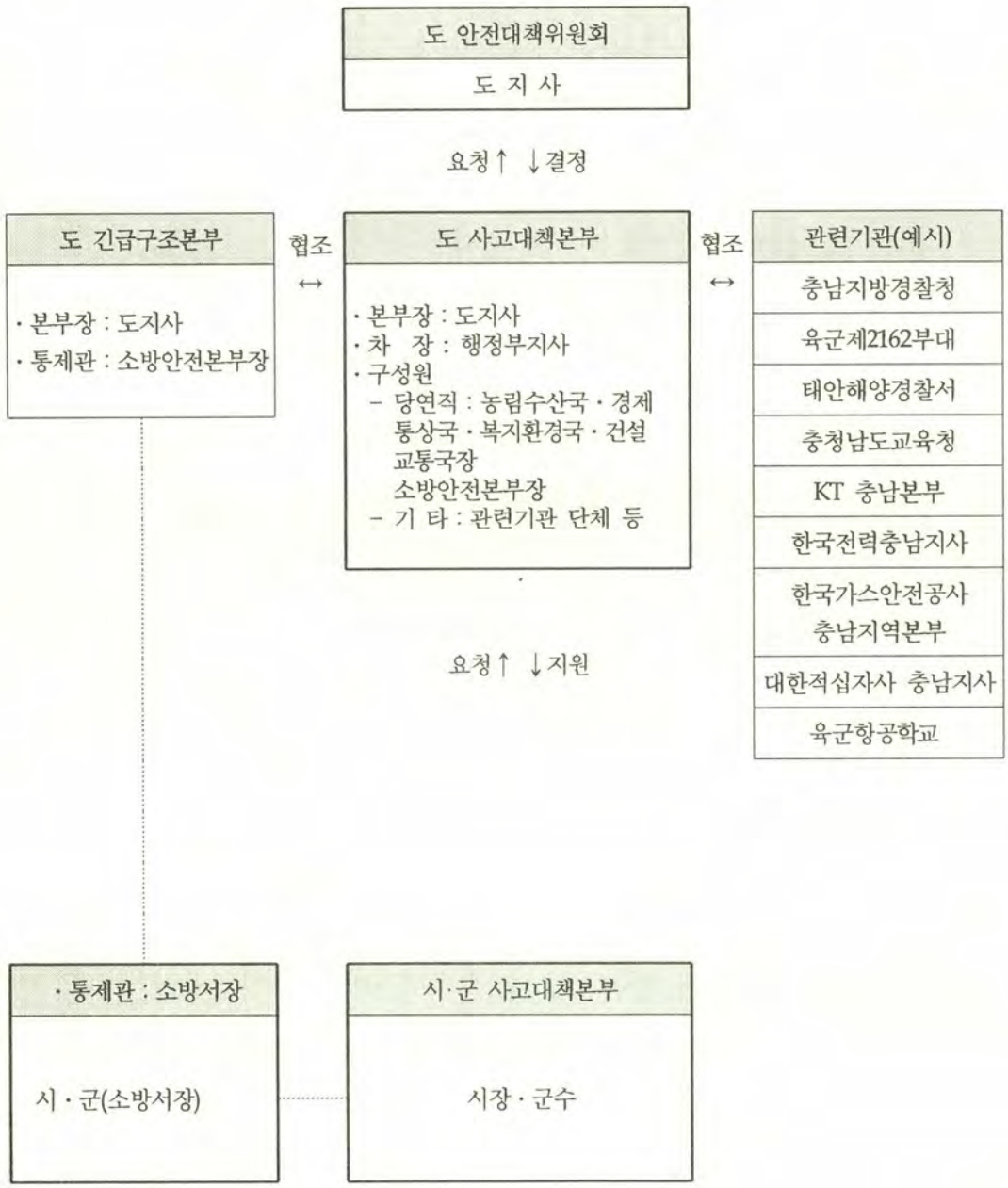
구 분		담 당 업 무
총 괄 반	현장경리팀	재난활동 운영경비 조치, 각종 비용의 회계
	재난정보팀	재난원인조사 및 2차 재해발생 위험 파악, 정보 수집, 실종자 신고접수
	상황기록팀	구조활동 및 현장지휘소 운영상황 등 종합
	상황보고팀	상황파악·유지·전파, 관계관 대책회의 개최
인력관리반	인명탐색팀	탐색장비 등을 활용하여 요구조자 위치 및 숫자파악
	구조활동팀	119구조대원, 군· 경등 지원팀편성
	소방활동팀	경방요원 동원 화재진압, 양수작업등 지원
	항공구조팀	헬기동원 지상과 공중간의 입체적인 구조구급활동
장 비 반	일반장비팀	구조장비, 소모품 등 현장물자의 조달·관리
	특수장비팀	탐색장비, 중장비, 수난장비등 특수장비 조달
통 신 반	무선통신팀	현장지휘망, 활동망, 보고망등 무선통신망 구축
	유선통신팀	전화, 모사전송등 유선통신망 설치·운영 및 지원
	정보전산팀	컴퓨터 설치, 전산처리망 구성·운영 및 지원
기술지원반	기술지원팀	건설, 토목, 가스, 방사능등의 전문가 동원 및 지원
	안전자문팀	구조방향 판단등의 지원, 안전진단등 기술지원
응급 의료 지 원 반	총괄지원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긴급 의료제공기관과의 협조등
	의료지원팀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기전까지의 사상자 처리
보도지원반	보도지원팀	보도요원 대기소의 설치, 자료배포, 보도요원 안내
	홍보보도팀	상황브리핑 지원, 현장상황 촬영기록 보존
자원 봉사 관 리 반	등록접수팀	현지 지원자 등록배치
	편의지원팀	식·음료수 수급, 장기작업시 숙영지의 관리
	구호활동팀	담요, 시신보호낭 등 현장 소모물품의 관리 및 배포 등

2) 시·군 현장지휘소

구 분	담 당 업 무
총 괄 반	○ 지휘본부 운영 및 본부장 보좌 ○ 재난원인 조사 및 재해실태 파악 ○ 소방활동 상황파악 및 2차 재해발생위험 파악 ○ 재해경과의 기록 및 상황보고
정 보 반	○ 관계자료의 확보 및 대상물 실태 파악 ○ 인명위험 및 재해의 확대위험 파악 ○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정리 및 종합등 ○ 사상자 발생요인 파악
통 신 반	○ 현장지휘망 및 유·무선 통신망 구축 ○ 명령전달, 통신연락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홍 보 반	○ 현장상황 촬영 기록 보존 ○ 기타 언론관련 업무
응급 의료 지 원 반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긴급의료제공기관과의 협조등 ○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사상자 처리
자원 봉사 관 리 반	○ 자원봉사자의 등록 접수 ○ 민간전문가 등 직할지원대의 관리 및 소모물품의 관리 및 배포 등

붙임 4

도 사고대책본부 설치 체계도



붙임 5

도 사고대책본부 실무반 체계도



반별	행정지원반	긴급구조지원반	구호반	상황관리보고반
임무	· 행정지원 업무 등 수습 상황 총괄 · 반별 기능 통합 조정 · 지역사고대책본부의 건의사항 파악·검토 · 유관기관 협조 · 여론동향 파악분석 및 대국민 홍보 등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세제·재정지원 방안 등 검토보고 · 부상자·유가족 보상협의 지원	· 인명구조 지원 · 현장 경계구역 설정 · 유관기관 및 민간 구조대 지원 협의 · 현장 질서유지 ※ 소방서에서 전담	· 사망자 신원확인 및 후송, 장례 지원 · 부상자구호 및 유가족 위로 지원 · 부상자 의료 지원 · 동원자원 파악 및 보상협의 지원	· 사고수습상황파악 · 상황(수시·일일) 보고 · 도 사고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조치 사항 파악

3. 소방안전대책

[소방안전본부 소관]

Ⅰ. 화재 대응능력의 확충

Ⅱ.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의 제고

Ⅲ. 테러대응 소방안전대책 추진

Ⅳ. 200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추 진 방 향

○ 조직 · 인력의 지속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소방행정 수요 충족
○ 긴급구조시스템의 정보화 구축으로 재난에 신속대처, 피해 최소화
○ 재난대비 관련 조직들과의 연계협력 강화로 대응력 제고
○ 테러대응 인명구조 · 구급능력 배양 등 대테러 소방안전대책 추진

추 진 계 획

Ⅰ. 화재 대응 능력의 확충

가. 소방조직의 확충

1) 지역별 적정규모의 관서 설치 추진
○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 · 단계적으로 균형배치
○ 소방수요와 지방재정을 고려, 적정규모의 신설 · 확대 추진

2)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관서 배치
○ 교통체증, 불법주정차 등 출동여건 악화 반영, 출동 5분권 확보
○ 신도시 · 공단 등 소방사각지역과 농 · 공 · 화학단지, 주택밀집 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에 우선 배치

3) 의용소방대 편성 · 운영의 내실화
○ 조직정비 : 기술지원반 신설에 따른 조직정비 연내 완료
○ 지역실정에 적응하는 활동능력 배양(예 : 금산-수난, 공주-산악 등)
○ 사회 소외계층 보호활동 등 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문화운동 정착 유도

○ 교육훈련 및 복지개선

- 교육훈련 강화 : 교관요원 및 대원교육(월 4시간), 장비조작, 소방활동 등 특별훈련(연 8시간)
- 의용소방대 교관요원 양성 : 3기 210명(11월중)
-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 등 후생복지 지원 강화

4) 직장자위소방대의 보강

○ 조직정비

- 민방위, 예비군 등 자체방위조직 통합편제 강화
- 취약대상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한 편제 구성

○ 초기화재진압 능력향상

- 119신고, 인명대피, 소화기·소화전사용법 등 초동조치 훈련
- 화재진압장비 및 개인장구의 보강

○ 자위소방대 합동훈련 강화

-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사전계획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회 개최
- 민방위훈련시 합동훈련 실시(소방서별 1개대 이상)

나. 소방인력의 확충

1) 소방공무원 증원 추진

○ 『소방인력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 관서신설 등에 따른 인력증원

※ '01실적 : 42명 증원

※ '02실적 : 88명 증원

2) 의무소방대의 효율적 운영

○ 24시간 영내근무 의무소방대 설치로 기동성 강화

○ 현장인력 확보로 화재 사전예방과 초기진화 능력보강

- 정 원 : 132명

- 연도별 배치인원

· '02년 3회모집, 56명 배치

· '03년 3회모집, 58명 배치

※ '04년 상반기 이후 정원 132명 유지

- 임 무 : 소방업무 보조(출동중 소내근무, 소방순찰 등)
- 복무기간 : 28개월
- 복무장소 : 소방서, 소방파출소(영내생활)

3) 우수 소방인력 확충

○ 재난대응장비 및 기술의 발달에 따른 첨단소방 장비의 운용과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소방인력 보강추진

- 구급 전문요원 특별채용 : 응급구조사 등
- 소방관련학과 출신자 특별채용

다. 소방장비의 보강

1) 차량 등 장비보강

○ 10년 이상된 노후소방차량의 교체 및 현대화

○ 첨단 다기능 장비 보강 및 신설관서, 위험물시설 집중지역 등에 장비 우선 배치

○ 구조구급장비 중점보강

- 총 22종 451점(개인 10종 433점, 특수 12종 18점)

2) 소방용수시설의 확충

○ 교통난으로 물탱크차 활용에 한계 노출 → 화재진압용수의 원활한 확보 및 공급방안 강구

○ 기존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연 1회 이상)

라. 화재예방활동의 강화

1) 소방안전문화의 정착

○ 소방홍보의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확충

- 지역적 · 계절적 특성에 맞는 소방홍보 이벤트의 활성화
  · 지역문화축제에 적극 참가, 정형화된 체험코스 개발 보급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방홍보 강화
  · 한국소방방송의 활성화, 간접광고기법 활용도 증가

○ 소방교육의 내실화

- 체험교육 및 사회안전교육 강화
  · 유치원 및 학교의 지도교사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보급, 안전교육 연수기회의 마련)
  · 청소년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체험교육의 이수 장려
  · 부녀자에 대한 소방교육 강화(주택화재가 전체화재의 30%)
  · 각급 단체 교육시 출장 소방교육 실시
-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 내실화
- 한국119소년단의 육성을 통한 소방안전의식 저변확대

○ 소방훈련의 내실화

- 체계적인 화재진압 기본훈련 실시
  · 민 · 관합동 119종합시범훈련 실시(소방관서별 연2회)
- 소방기술 시범 · 경연행사 추진
  · 자체훈련 강화(격년 시범행사, 가상화재 등)
- 소방대상물을 영상CD화하여 수시 도상훈련 실시

2) 계절별 · 대상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 계절에 따른 화재요인 분석 및 적합한 소방안전대책 수립 추진

○ 화재점유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 무료소방안전점검(소방 · 전기 · 가스) 실시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책 강화

- 비상구 · 실내장식물 불연화 등 피난 · 방화시설의 강화
- 찜질방 · 화상대화방 · PC방 등 신종업종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 소방시설 등 유지 · 관리의 적정화

- 건축 · 가스 등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에 의한 정밀점검 실시
- 관련기관 · 시민단체와 소방검사 합동평가반 편성 · 운영

마. 화재조사 전문화 · 과학화 추진

○ 화재조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 연수 실시

- 화재조사 교육기간 확대로 전문자격요원 양성(12주)
- 전문기관(국과수, 일본 현지연수) 등 국내외 연수추진

○ 전문화재조사 기자재 및 화재감식 장비, 전담차량 확보

○ 화재조사 기본핸드북 및 화재조사작성 사례집 제작, 보급

II.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의 제고

가. 현장대응능력 보강

1) 특수·대형재난 대응능력 보강

○ 도시건물붕괴, 고층인명구조, 화학사고대비 구조장비 확충

○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수난구조장비 배치

2) 긴급 기동능력 강화

○ 소방헬기 적극 활용

○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보강

나. 긴급구조 체제정비 및 119구조·구급대원 전문화

1) 구조·구급대 보강

○ 첨단 구조장비 보강 등을 통한 고층건물·화학·방사능사고 대응능력 강화

○ 소방서 미설치지역에 119구조대 배치 등 구조·구급 사각지대 해소

○ 석유화학 공단지역 화학전문구조대 지정 육성(서산 소방서)

○ 화학, 방사능 등 특수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2) 재난유형별 동원 가능 인원·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

○ 특수기능인력 수용체계 구축 및 특수장비의 긴급동원계획

3) 응급의료 인력 보강

○ 신규충원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전문인력 우선 채용,

○ 소방공무원중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확대 실시

○ 응급처치능력 향상 및 교관요원 양성을 위한 국외연수 확대

○ 소방헬기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다. 긴급 구조시스템 정보화 구축

1) 사업방향

○ 긴급구조활동 전 단계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중앙긴급구조본부상황실 - 도 소방안전본부 - 소방서 상호연계

2) 시스템 주요기능

○ 긴급구조상황실운영, 무선지령 서비스, 재난현장 영상전송 서비스

○ 차량위치정보서비스, 인터넷 대민지원 서비스 등

○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상황의 신속한 분석 및 인터넷

3) 사업기간 : 2000~2006(7개년), 총 사업비 : 1,457억원

라. 소외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확대

○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무선페이징 시스템』 확대 보급 및 운영지침 제정 등 유지·관리 강화

- 단말기 검정제품 보급(FI인정기준 마련 : 2002. 6. 5)
- 소방관서, 노인관리부서, 노인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 활성화

III. 테러대응 소방안전대책 추진

가. 테러대응 인명구조 · 구급대책

1) 테러대응 전문구조대 지정 육성

○ 도내 1개대 구조대 지정운영 (서산 화학구조대)

○ 소방관서별 테러대응팀 지정·운영(6개 소방서)

2) 테러대응 교육훈련 강화

○ 테러대응 긴급구조훈련 실시

○ 충청소방학교에 테러대응과목 편성운영

3) 국가주요시설 『예상테러대상 대응계획』 수립(75개소)

○ 인명구조계획도 작성 및 도상·실제훈련 실시

- 도상훈련 : 대상별 1회
- 실제훈련 : 연 1회(긴급구조훈련 병행)

나. 대형 · 고층건물 등의 테러대비 안전대책

1) 중요시설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 11층 이상 고층건물, 대량위험물·가스 저장시설, 방송시설 등(75개소)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보시스템 및 피난계단, 비상구 등 관리상태 및 전기·가스·위험물 취급상태 등 중점 점검 실시

2) 다중이용시설 테러대응 대책

○ 정기적인 민관 합동훈련 등을 통한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

- 초기진압, 대피유도 및 소방시설 등 작동활용 요령 등

○ 유사시를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 유도

○ 중요시설 안전대책을 위해 유관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Ⅳ. 200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가.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 제1차확충사업('95~'01) - 실적

- 차량등 85대(구조차6, 구급차78, 헬기1)
- 구조구급장비 254종 5,567점

○ 제2차확충사업('02~'06) - 계획

- 차량 등 108대(구조차10, 구급차98)
- 장비 25종 1,505점(첨단, 개인, 수난, 특수구조장비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02까지	2003예산	2004예산안	2005이후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11,245	2,246	2,237	2,324	4,438

○ 2003 사업 세부내역

- 구조차 3대×150백만원 = 450백만원
- 개인구조장비 10종 433점 = 731백만원
- 특수구조장비 12종 18점 = 176백만원
- 구급차 16대×55백만원 = 880백만원

유관기관간의 협조·지원사항

기 관 명	협조·지원사항
1. 각 기관 공통	○ 자율화재 예방대책 추진 - 화재예방교육 (직장교육 일환) - 자체 소방·방화시설 점검 정비 ○ 직장교육 등 자체추진 및 산하기관·단체 지도 ○ 표창시 부상·기념품으로 소화기 선정 권장
2. 교육청	○ 자율방화대책 추진 및 화재 예방 교육 - 소방차량 진입지장시설·소화시설 점검 - VTR 상영, 홍보책자 등 활용 화재 경각심 고취
3. 자치문화국	○ 관광호텔, 청소년수련시설 등 방화대책 추진 - 종사원에 대한 교육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 - 비상구 등 소방·방화시설 자체 점검
4. 경제통상국	○ 공장, 시장, 백화점, 등의 소방안전 관리 ○ 전열기구 등 광고시 화재예방 홍보 ○ 가스·유류·전기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5. 복지환경국	○ 의료기관, 사회복지·노유자시설 자체 방화대책 추진 ○ 유흥업소 등 종사원 방화교육 및 피난통로 점검 등
6. 건설교통국	○ 철도·지하철역 및 버스·여객선 터미널에서 화재예방 홍보 ○ 항만·공항 등 다중집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4. 화생방 방호대책

[소방안전본부 소관]

Ⅰ. 화생방 방호조직의 보강·정예화

Ⅱ. 화생방물품 보급확대 및 관리 강화

Ⅲ.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Ⅳ. 화생방 교육·훈련 및 홍보강화

Ⅴ. 화생방 재난취약지역 주민보호대책 강화

추 진 방 향

○ 화생방전 및 생화학 재난대비 방호조직 · 기능 보강 추진

○ 화생방 재난취약지역 주민안전보호대책 강화

○ 화생방 방호 행동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추 진 계 획

Ⅰ. 화생방 방호조직의 보강 · 정예화

1. 민방위 화생방분대 조직보강

가. 화생방분대 편성 · 운영

○ 편성기준

- 비행장 주변지역 · 화학공단 소재지역 등 취약지역은 편성기준보다 보강하여 편성하고,
- 농어촌 · 산간지역은 감소편성

※ 민방위대의 규모와 화생방재난 취약정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

○ 편성규모

- 기술지원대 : 시·군단위로 1개분대이상 편성
- 지역민방위대 : 동단위로 20개통당 1개분대 이상 편성
- 직장민방위대 : 대원수의 10%정도를 화생방분대로 편성

○ 화생방분대원은 관련 기술 · 기능 소지자와 군부대 화생방 주특기자 등 유경험자로 편성하여 정예화

○ 가급적 1~4년차로 편성하여 화생방분대원 소집교육을 이수

나. 화생방기동대 구성 · 운영

○ 백화점 등 테러 취약시설과 화학공단지역에 중점 편성 · 운영

○ 사태수습용 장비를 보강하여 운영체계 확립

- 1개 기동대별 장비물자 확보기준 : 8종 59점

방독면	보호의	해독제	제독제	메가폰	무전기	탐지킷 (탐지지)	오 염 표지판
12	12	12	12	1	2	2	6

○ 상시 출동가능한 인원으로 편성하여 유사시 사고현장에 긴급출동, 주민안전 대피유도 등 임무수행

2. 행정기관의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가. 화생방 전담공무원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 도 및 화학공단소재지 시 · 군에는 화생방 전담조직 · 인력을 확보, 화생방 재난방재대책 강화

○ 화생방 전문조직 · 인력이 미배치된 시 · 군은 화생방 관련분야 유경력자 배치, 국가전문행정연수원(민방위교육과) 등의 전문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

나. 화생방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

○ 화생방업무 연찬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발표 및 관계전문가 초빙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 화학공단 화생방 실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 · 교육 등 실시로 업무수행 능력 향상

○ 화학공단 소재지역 화생방 담당공무원을 방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하여 전문성 제고

※ 전문기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립환경연구원

3. 화생방업무 기능분담 및 협조체제 확립

가. 관련 부처별 업무분담

○ 행정자치부 : 주민 안전보호대책 추진
○ 과학기술부 : 방사능 방호대책
○ 보건복지부 : 생물학전 방호대책
○ 산업자원부, 환경부 : 유독가스재난 방호대책
○ 국방부, 경찰청 : 사태수습지원

나. 지방자치단체(도, 시·군)

○ 관련 유관기관·부서와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 민방위 부서는 주민안전 보호대책을 중점추진하고, 위해시설 안전관리는 개별법에 의거 관련부서에서 책임추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원자력법
- 재난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보건의료기본법

II. 화생방물품 보급 확대 및 관리강화

1. 방독면보급 10개년계획 추진

가. 추진기간 : '98~2007년

나. 기본방향

○ 보급우선순위에 의한 단계별 보급

① 화학공단 민방위대원/주민 ② 일반지역 민방위대원

③ 일반지역주민

○ 지역민방위대원과 화학공단지역 주민은 정부지원 보급

○ 직장민방위대원은 직장 자체예산으로 확보

○ 민방위대에는 시·군의 지역특성에 따라 기존 일반방독면과 다용도 방독면을 자율선택하여 보급

○ 일반국민에게는 평시 활용이 가능한 다용도 방독면 구입을 권장

다. 보급계획량 : 116,277개

총보급대상	'86~'97까지 보급실적	10개년 계획기간중			총보급 실 적
		보급계획량	'98~2001 보급실적	2002~2007 보급계획	
150,212명	33,935개	116,277개	43,148개	73,129개	89,272개 (59%)

라. 보급방법

○ 정부지원 보급계획 : 104,470개

- 지역민방위대원 104,470개,

구 분	계	'98~'01 보급실적	년차별 보급계획						
			소계	'02	'03	'04	'05	'06	'07
보 급 계획량	104,470 개	37,501	66,969	11,161	11,161	11,161	11,162	11,162	11,162
정부지원 소요예산	1,787 백만원	641	1,146	191	191	191	191	191	191

※ 방독면 개당 가격 : 일반방독면(17,090원), 다용도 방독면(32,900원)

○ 자율구입권장 : 6,160개

- 직장 민방위대원 6,160개,

마. 재원 : 1,892백만원

○ 예산사업 : 1,787백만원(지역민방위대)

○ 비예산사업 : 105백만원(직장민방위대)

2. 2003년 화생방물품 보급계획

가. 방독면 보급

○ 정부지원 보급 : 11,161개, 191백만원(국비30%, 지방비70%)

- 지역민방위대원 : 11,161개

○ 자율확보 권장 : 1,028개

- 직장민방위대원 : 1,028개(직장부담)

※ 일반주민은 자비부담 자율보급

나.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

○ 보급기준 : 지역·직장대 화생방분대(1조기준) : 5종 34점 보급

보호의	해독제	제독제	탐지킷 (탐지지)	오 염 표지판
12	9	6	1	6

-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1조기준) : 7종 44점 보급

※ 보호의 12, 탐지킷 1, 해독제 9, 제독제 6, 오염표지판 6, 휴대용제독기 2, 제독용액 8

○ 보급방법

- 화생방분대당 1조를 기준하여 미보급된 물량 보급
- 기 보급된 장비 중 유효기간 초과, 노후·파손된 물량에 대한 교체

3. 취약지역 화생방 기동대용 방호장비 보강

○ 화학공단·백화점 등 취약시설 소재 시·군 화생방 기동대의 화생방 방호장비 보급 지속확대

< 확보기준 : 1개대당 1조(8종59점) >

방독면	보호의	해독제	제독제	메가폰	무전기	탐지킷 (탐지지)	오 염 표지판
12	12	12	12	1	2	2	6

○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직원용 방독면 및 해독제, 제독제 등 필요한 방호장비를 위 기준에 의거 자체확보

-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휴대용 화학작용제 탐지장비 보급추진

4. 방독면 자율보급 확대를 위한 국민계도 활성화

○ 다용도방독면 자율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도 실시
- 「화생방 대비요령」 VTR 활용, 다중집합장소에서 지속적 방영
- 반상회보, 시·군정지 등 홍보물에 게재("방독면 갖기운동 전개")

○ 시·군 단위로 "방독면판매소"를 확대설치 구입편의 도모
- 시·군 단위 1개소이상 설치

○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주민자치센터)에 방독면 견본 등 비치, 구입안내

○ 응급대체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 비닐포대, 마스크, 고무장갑 등

○ 공공기관·일반기업체 등에서 각종 행사시 방독면을 시상품이나 증정품 등으로 수여토록 적극 권장

5. 화생방물품 관리 강화

가. 다용도방독면 개인지급에 따른 관리철저

○ 시·군에서 보급하기 이전에 보급대상 우선순위 선정, 보급계획량, 개인무상대부 및 양여 또는 통합보관, 제품 성능유지 방안 등에 대한 자체세부계획 수립

○ 개인에 무상대여 및 양여시 관리대장 작성
- 수령자 인적사항 확인 및 관리·안전사용방법 사전교육
- 공정하고 합당한 배부기준 마련
- 개인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독면 회수, 타인에 지급

○ 관리대장에 수령자 서명 확인, 개인주민등록카드 "민방위란"에 방독면 지급사항 기록

○ 화재시 등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관리

나. 통합보관관리

○ 평시 테러 등 화생방재난 우려가 많은 취약시설(화학공단·백화점 등) 소재지역 및 유독가스 취급시설 주변지역은 방독면을 사용자 가까이 보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 장기 비축용으로 보관중인 방독면은 수명연장을 위하여 보급 당시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직장은 사무실 단위로, 지역은 마을단위 통합보관을 원칙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책임관리

○ 습기, 먼지, 직사광선, 침수, 결빙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유지

다. 점검 및 정비

○ 매분기 1회 점검표에 의거, 관리기관 자체점검·정비 실시

○ 도 주관으로 생산업체와 협의, 순회정비를 실시하여 장비의 정상 사용상태 유지

○ 보관중인 장비·물자중 표본을 수집 성능유지 여부 검사후 성능저하 장비는 교육용으로 활용 또는 폐기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라. 사용시기

○ 화생방전 및 화생방물질 사용 테러발생시

○ 각종 산업활동중 유독물질 취급시

○ 민방위 교육·훈련시에는 교육훈련용 장비 사용

III.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1. 화생방 방호가능 대피시설 확충

○ 신축 공공시설은 화생방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 설치

○ 일정규모 이상 건물 신축시는 화생방 방호기능을 갖춘 대피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 강화

○ 기존대피시설,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은 유사시 화생방방호 가능시설로 응급 활용하는 방법을 각종 교육을 통하여 홍보

○ 기존 설치된 민방위 2등급시설을 임시 화생방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문·출입문 밀폐장치 설치 등 단계적 보완

2. 완벽한 시공 및 관리

○ 화생방대피시설 설계는 전문가 검토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

○ 가스여과기 등 화생방 방호시설·장비는 공인된 규격품을 장착하여 정상기능을 발휘토록 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 유지

○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년 1회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로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정비

- 점검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조치
- 시설관리 담당자 지정, 관리 및 조작요령 교육

Ⅳ. 화생방 교육·훈련 및 홍보강화

1. 화생방 전문교육 실시

○ 화생방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관과 방재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화생방 전문인력으로 양성

○ 각급기관 직장교육, 학교기관 등에 화생방 교육을 실시하여 방호행동요령에 대한 능력향상

○ 도 주관으로 화생방분대원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사태수습 능력배양

○ 일반대원에 대한 화생방 교육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화생방방호" 과목을 편성, 교육실시(연 8시간중 1시간정도)

○ 생화학재난 취약시설(지하철·백화점 등) 소재 시·군에 편성된 화생방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도 주관으로 응급대처요령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2.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

○ 화생방분대원은 가급적 소집교육 대상자로 편성하고 화생방 분대원 교육을 이수토록하여 임무수행능력 향상

- 화생방교육은 대원의 임무와 지역재난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중점교육

○ 지역군부대와 협조 군부대 화생방 훈련장을 활용, 오염지역 제독요령 등 실기실습 교육 강화

○ 화생방 방호훈련은 재난취약지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실시

- 훈련내용은 경보전파, 주민대피·소산, 보호장비착용, 탐지·제독, 사태수습 등 실제상황에 맞게 실시

3. 대국민 화생방방호 행동요령 홍보 강화

○ 화생방전 및 테러발생시 방호행동요령, 방독면 착용법 등 응급대처요령에 대한 주민교육·홍보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TV, 라디오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

○ 역·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화생방VTR 방영을 통한 주민홍보 실시 및 시·군별 인터넷홈페이지에 화생방란을 개설, 사이버 홍보강화

○ 마을단위, 학교, 직장 등을 순회하며 화생방 방호행동요령에 대한 국민교육 강화

V. 화생방 재난취약지역 주민보호대책 강화

1. 위해업체 주변지역 주민보호대책

○ 화학공단, 유독가스 취급시설 소재지역은 화생방 재난취약지역으로 관리
○ 재난취약지역 주민보호용 방독면은 위해시설 사업주 부담원칙에 의거 연차별 보급
○ 위해시설 주변지역 주민긴급대피 계도를 위한 경보방송망을 보강
○ 취약요소별 방호장비·물자를 보급하고 사태발생시 방호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2.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 위험요소가 많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 중점관리대상 시설별로 안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예방활동 실시
○ 사고발생시 주변지역 주민피해 예측상황을 분석관리
○ 역, 터미널, 백화점, 극장 등에서의 생화학테러 대비, 시설 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긴급보호조치 및 대피유도를 위한 안내 방송문 사전 준비
- 시설별로 방독면, 응급치료장비를 기준에 의거 확보

3. 유관기관 합동방재체제 구축

○ 행정기관, 유관기관, 관련업소 방재계획을 상호 연계성있게 보완하고 사고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제고
○ 재난 유형별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실시
○ 유관기관과의 지원 협조사항을 사전 임무고지하고 업소, 유관기관 등의 가용장비를 사전 파악하여 유사시 즉각 동원될 수 있도록 관리

5. 방사능안전대책

[소방안전본부 소관]

Ⅰ. 방사능 방재체제의 확립

Ⅱ. 긴급 재난관리체제의 확립

Ⅲ. 방사능테러 대책 강구

Ⅳ. 국가 방사능감시 및 평가계획 수립

Ⅴ. 국제기술협력 및 자치단체의 방재능력 강화

추 진 방 향

○ 실효성있는 방사능방재체계의 확립 및 전문조직 · 인력 확충
○ 방사능 방재기관의 비상대응능력 제고 및 협조지원체제 강화
○ 방사능방재 시설 · 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의 강화
○ 방사능방재 행동요령 주민홍보 및 전파체계 강화
○ 원전등 원자력 관련시설의 대 테러 대응책 및 국제협력 강화

※ 방사능안전대책은 대부분 원자력발전소 등과 관련된 시·도 소관으로, 우리도는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함

추 진 계 획

I. 방사능 방재체계의 확립

<적용 대상>

·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취급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 · 처분 시설
· 방사성동위원소의 선원분실, 도난, 누출 또는 운송사고로 인한 지역오염 발생시
· 국외 원자력시설 사고, 핵실험, 핵물질 탑재 인공위성 추락사고 등

※ 방사능 재난의 특징 : 오감(五感)으로 감지불가능,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며 유전적 영향 등 장기간 피해

1. 방사능 비상대응체제의 확립

가. 권한 및 지휘통제체계

○ 방사능방재대책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 조정 : 과학기술부장관 소속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를, 원전 등 원자력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 방사능재난발생시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권한『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에게 있으며, 긴급시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후 사후에『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에게 보고

○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가 소재한 지역에서는 방사능재난 정보의 수집과 통보,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이하 "현장지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현장지휘센터장은 과기부 원자력안전심의관이 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파견된 관계관으로 "방사능방재합동대책회의"를 구성·운영

○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 발생시 자체 "사업자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방사능재난 발생시 중앙 및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방사능방호조치 등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과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이하 " 기술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중앙 및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본부에 급파할『현장파견기술지원단』구성·운영

○ 원자력병원장은 방사능재난 발생시 방사선 상해자 또는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상의 조치를 위해 "방사성비상의료지원본부"(이상 "의료지원본부"라 한다) 를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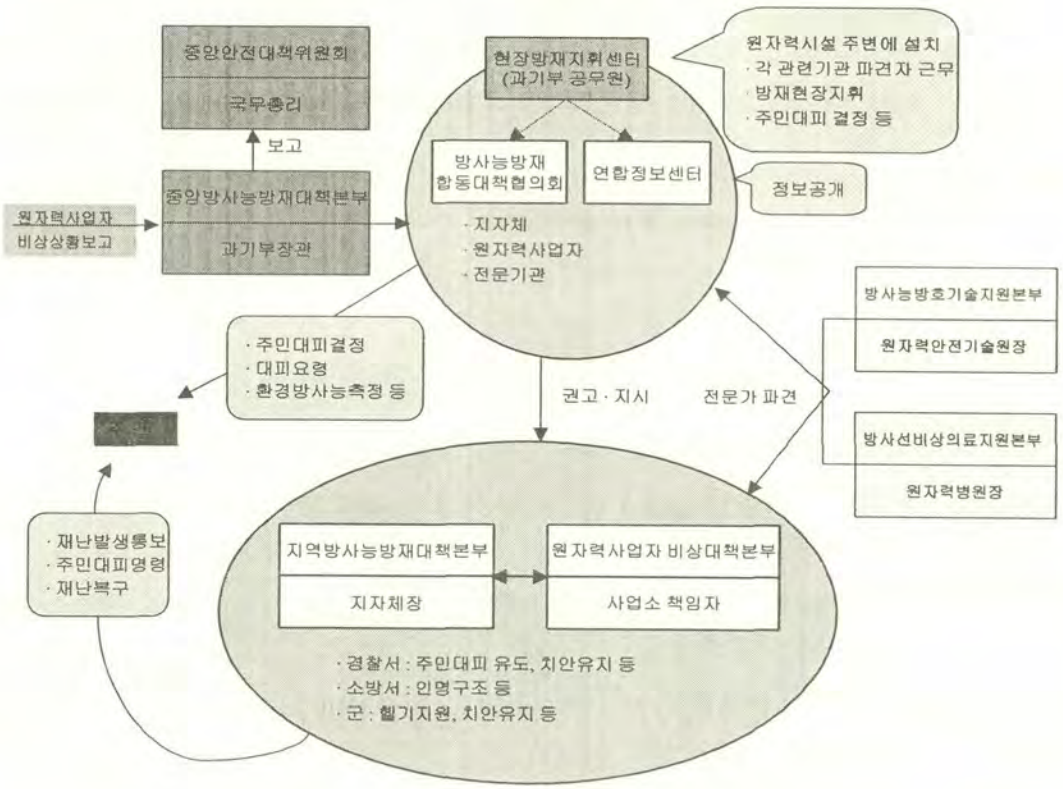
나. 방사능방재조직의 구성과 임무의 명확화

○ 각급 방재기관은 방사능재난 발생시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비상조직을 구성하고 비상시 임무·책임을 명확화

○ 비상조직에는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포함하고, 비상요원의 직급·임무, 타기관과의 연계사항 등을 사전 문서로 작성

○ 비상조직은 소관 임무수행을 위해 평시조직의 기능과 임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상황이 장기간인 경우에 대비하여 18시간 범위내에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표-1 방사능방재체계 >



다. 비상계획구역(EPZ : Emergency Planning Zone)의 설정

○ 방사능재난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8~10㎞지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

○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시설별로 방사능재난시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방사능방재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구역을 설정 · 고시

라. 방사선비상등급의 설정

○ 방사능재난재해발생시 효과적인 방재활동수행을 위해 비상등급은 다음 3가지 종류로 구분하며, 비상등급 외에 "이상상태"를 둠

가) 백색비상(Alert)

실제 또는 가능성이 있는 발전소의 안전성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되었거나 진행중인 사건·사고 또는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발전소 건물내 국한된 경우로서 원자력발전소내 비상대응 개시 및 소외 방재대책 유관기관의 경계가 요구되는 비상사태

나) 청색비상(Site Area Emergency)

발전소의 주요 안전기능의 손상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진행중인 사고로서 발전소내 비상대응의 강화 및 소외 방재대책 유관기관의 비상대응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비상사태

다) 적색비상(General Emergency)

격납용기 건전성 상실에 대한 가능성 및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방사성물질의 대량누출이 예상되는 사고로서 발전소부지 외부에서의 비상대응활동의 개시 또는 발전소부지 주변의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사태

○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등급에 대한 세부기준과 각등급별 대응절차로 정하여 고시

마. 재난관리법과의 관계

○ 방사능재난 발생시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앙, 도 및 시·군 사고대책본부는 중앙 및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로 이를 갈음

2. 비상계획서 및 절차서의 수립

○ 비상계획구역내의 각급 방재기관은 방사능재난 발생시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비상계획서와 비상수행절차서를 수립·운영

○ 비상계획서에는 참여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의 임무를 명시하고 비상수행절차서는 각급 방재요원이 주어진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각급 방재기관은 원자력사업자 및 외부 관련기관과의 업무연락과 협조를 위해 담당관(Coordinator) 지정·운영 : 對 원자력사업자 1인, 對 지자체 1인, 對 정부 1인)

○ 비상계획서, 절차서, 참고자료, 비상기능 수행을 위한 각종문서들은 당해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예:비상상황실 등)에 비치

○ 비상계획서와 절차서는 매 반기마다 점검하여 수정·보완하고 방재훈련 실시 결과를 반영

○ 방사선비상계획서의 수립 대상기관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포함되는 중앙행정기관 : 민방위 기본계획에 의한 소관 의무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자체 비상계획 수립·운영

  ※ 중앙행정기관 :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기상청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 도, 시·군 단위로 모든 관련기관의 비상계획을 종합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사업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비상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운영

- 과학기술부 : 중앙행정기관의 비상계획을 종합한 국가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운영

- 원자력사업자 : 본사 및 사업소 단위로 자체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운영

3. 방재대책 물자·시설, 장비 통신체제의 확립

· 각급 방재기관은 비상대응조치 및 소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방재시설, 장비 및 장구, 통신시설 등을 사전에 지정하거나 확보(가능한한 평시업무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립)

· 방사능 누출과 같은 사고상황하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비상시설의 설치 또는 공공시설 지정

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구축 · 운영

○ 원전 등 원자력시설의 사고 · 고장 및 방사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 상황 파악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반 방사능방재대책 총괄 관리하기 위한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을 과학기술부에 설치 · 운영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사고분석 · 평가자료의 실시간 수집으로 주민보호조치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지원대책수립 및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원 기능을 수행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은 정보 유통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재상황실(CARE시스템)과 연계한 사고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나. 원전주변 방재시설의 보강

1) 방사능 경보시설

○ 원전주변 2km 이내의 지역주민에 대한 비상경보용 방송망은 현장 사정을 고려한 최적 수량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설치

○ 비상경보용 방송망 이외에 발전소 인근지역의 마을 앰프, 방송시설 등 기존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2) 구호소의 확보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구역내에 두고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소개 또는 대피를 위하여 구호소 확보

○ 구호소는 소개 예상인원, 소요시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사전에 지정 · 운용

○ 풍향 등에 따라 방사능 확산에 의한 피해 지역이 달라짐을 감안, 구호소를 적절히 분산 · 지정

3) 비상통신망 구축

○ 비상시 긴급통보를 위한 비상통신망 확보

○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등 사업소와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간에 긴급시 신속한 비상통보 및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전용전화 및 모사전송 시설 등 설치·운영

4) 원자력발전 사업자의 비상대응시설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방사선비상에 대비하여 다음의 시설을 확보·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절차를 수립·시행

- 주제어실(Control Room)
- 비상기술지원실(Technical Support Center)
- 비상운영지원실(Operation Support Center)
- 발전소 비상대책본부(Emergency Operation Facility)
- 원자력안전정보표시장치(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 사업자는 비상대응을 위한 데이터시스템과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이 정보를 과학기술부(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공

다. 장비 및 장구의 확보

1) 방사선측정 및 분석 장비

○ 각급 방재기관은 방사선비상시 효율적인 방재업무 추진을 위한 방사선측정 및 분석장비를 최대한 확보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사시 소외 비상대응조직 및 관련기관의 방재업무 수행에 필요한 방사선측정 및 분석장비를 지원

2) 개인 방호장구

○ 개인피폭선량계를 포함한 방재요원의 개인 방호장구를 관계기관별로 연차적으로 확보

라. 자금 및 기술지원

○ 원전소재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에 의한 기금에서 최대한 충당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시설, 장비 및 장구 등의 확보 및 운영 자금을 최대한 지원

4.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및 연습

가. 방사능방재교육

○ 방사능방재계획 입안자 및 비상 필수요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방재교육과정 설치·운영

○ 한국수력원자력㈜는 원전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규제요원, 119구조·구급대 교수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나. 방사능방재훈련

○ 원자력발전사업자 :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방사능방재훈련을 전체훈련과 부분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 부분훈련은 특정분야의 대응능력향상을 위해 발전소별로 매 분기마다 실시
- 전체훈련은 주민보호조치가 가능한 사고상황을 가정하여 발전소별로 년 1회 실시

○ 연구용 원자로 운영자 :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부분훈련 년 2회 이상, 전체훈련 2년에 1회 실시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의 자체훈련과 병행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민방위의 날에 실시

○ 소외 대응기관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원자력시설 부지별로 4년에 1회 실시, 관련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5년마다 실시하여 방재계획 및 체제를 종합점검

○ 훈련시나리오는 실제상황을 가상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보완·발전

II. 긴급 재난관리체제의 확립

1. 초기 사고평가

○ 원자력사업자는 초기사고 상태에 대한 평가를 위한 체계와 기준을 명확히 수립
○ 초기사고평가에는 방사능방출방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계통의 상태, 방출방벽의 손상, 시설내 방사선준위, 방사선물질의 정상 방출지점으로부터의 방출률, 안전성 저감 수준, 소내·외 방사선측정결과, 화재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원자력사업자는 원전 등 원자력시설의 비정상 사건에 즉각 대응하고 비상등급의 발령과 이를 검출하기 위한 절차서 및 계측기 마련

2. 비상통지 및 초기대응 활동전개

가. 비상연락망의 구성·운영

○ 각급 방재기관은 비상시 대내·외 긴급통지를 위한 비상통보절차를 수립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성·운영
○ 비상통지시스템은 24시간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
○ 방사능재난 발생시의 보고방법과 절차는 과학기술부 고시 "원자력관련보고 규정"에 의거

나. 비상대응활동 전개

○ 각급 방재기관은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상등급 또는 상황에 따라 대응조직을 구성·운영
○ 각 비상대응조직은 비상등급에 따라 즉각 초기대응조치 실시
○ 각급 방재기관은 초기대응조치에 참여하는 비상대응조직 구성원에게 비상통지할 수 있는 수단(긴급통보수단)을 확립하고, 초기통보(후속통보를 포함) 메시지 및 절차를 사전 수립

< 표-2 각급 방재기관의 초기대응조치 권고 시간 >

구 분	원자력사업자	현장 방사능방재 대책기구(지자체 등)	중앙정부 (과학기술부)
○비상등급 후 소외 지역 방사능방재대책기구 (지방자치단체) 통보	15분 이내		
○비상대응조직 전면 가동	2시간 이내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IAEA 등 통보	-	-	4시간 이내

○ 각급 방재기관은 비상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계별 대응책을 수립·운영

- 1단계 : 비상대기 또는 적절한 대응조치
- 2단계 : 비상자원 확보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간 협조지원 체제 확인
- 3단계 : 비상대응책 수립 및 대응조치 전개

다. 원전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경보 및 긴급통지

○ 긴급시 원전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비상경보 또는 통지는 비상경보용 방송망을 이용하여 통지

○ 비상경보용 방송망을 통한 경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결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되 긴급시에는 원자력사업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운용방법이 변경되었을 때는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명시
- 방사선비상 경보 신호방법은 방사선비상 종류별로 수립하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름

3. 사고 완화조치

○ 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선사고발생시 방사성물질의 환경 유출을 억제하고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을 저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초기 사고완화 조치 프로그램을 개발

○ 초기 사고 완화조치 프로그램에 반영할 사항

-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사고상황을 포함한 비상운전절차서
- 비상운전절차서의 적용을 결정하기 위한 비정상상태의 주요 안전변수 목록 및 예상 대응조치사항
- 비상시 주제어실 출입통제
- 소내 기술지원 수단
- 비상대응 조직간의 통신수단 등

4. 긴급시 주민 보호조치

가.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개입준위

○ 과학기술부는 긴급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개입준위(InterventionLevel)를 수립·운영

○ 긴급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기준(참고자료1)

나. 주민보호조치 절차 수립

○ 원자력시설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속한 주민보호조치 수행을 위하여 예방조치지역을 사전 지정·운영

○ 원자력사업자 및 원전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색비상" 선포시 긴급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 절차서를 수립·운영

○ 주민 소개 및 옥내대피에 대한 결정은 현장지휘센터장이 합동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 대피 명령권은 재난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수행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개주민에 대한 방사선오염 감시 및 필요시 제염조치에 대한 방안을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축·수산물의 섭취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수립·시행

다. 긴급시 환경감시

○ 원자력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결정을 위해 즉각적인 환경방사선 감시활동 수행계획을 수립

- 원자력사업자는 시설 내·외 방사선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제반정보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주기적으로 제공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환경방사능감시망과 연계하여 방사능감시 업무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으로 방사능감시망을 구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국환경방사능감시망 외에 원자력시설 주변의 방사능을 감시하기 위하여 측정소를 설치·운영

○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 방출량, 시설의 상태, 기상조건 등을 근거로 소외 방사능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운영

<표-3 비상등급별 방재기관의 대응조치>

기 관 별	대 응 조 치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원자력사업자 - 본사 - 사고 발전소 또는 시설	· 비상기술지원실 설치 · 사고확대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 시설내 환경방사능 감시	· 발전소 비상대책본부 설치 · 비상계획구역내 환경방사능 감시강화 · 사고 확대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 발전소 비상대책본부 설치 · 비상계획구역내 환경방사능 감시강화 · 사고 확대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주민보호조치 권고
지방자치단체	· 비상대책반 설치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 · 중앙기관 및 관계기관 보고 · 환경방사능 감시지원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 · 재난발생상황 및 대응조치결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관계기관 보고 · 주민보호활동 전개
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일부 설치 · 전문가단 현장파견 준비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설치 · 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및 사고조사, 기술지원 · 시설외부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설치 · 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및 사고조사, 기술지원 · 시설외부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원자력병원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설치 준비 · 의료반 현장파견 준비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설치 · 의료지원반 현장 파견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설치 · 의료지원반 현장 파견 · 의료지원활동 강화
과학기술부	· 비상대책반 설치 · 비상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통보	· 비상대책본부 설치 · 사고상태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통보 · 비상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통보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 · 방사능재난대책 총괄 조정 · 홍보활동 강화

<표-4 비상상황하에서의 긴급조치 권고시간>

구 분	원자력사업자	현장방사능 방재대책기구 (지자체 등)	중앙정부 (과기부 등)
· 사고등급에 따른 주민긴급보호조치권고	15분 이내	-	-
· 긴급보호조치결정	30분 이내	30분 이내	-
· 시설내 보호조치 완료	1시간 이내	-	-
· 시설 및 인근지역 환경감시수행	1시간 이내	4시간 이내	-
· 비상계획구역내 환경감시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5. 대국민 홍보 및 계도

○ 원자력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자력 재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대책을 수립

○ 주민홍보책자에는 방사능재난의 개요, 비상의 종류, 소개/옥내 대피 집결지 및 구호소 위치, 소개 경로, 비상시 연락체제, 방사선방호 및 주민행동요령 등을 포함하여 제작

○ 방사선비상시에 대비한 주민 홍보책자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전에 준비하며,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 배포(년1회 배포 원칙)

6. 방재대책요원 보호대책

○ 각급 방재기관은 사고를 완화시키고 긴급 방사선방호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을 비상요원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보호대책을 수립(방재활동에 필요한 보호장비 및 장구 확보 포함)

○ 비상요원의 긴급작업에 필요한 방사선피폭관리 프로그램(기준수립 포함)을 개발

- 방사선피폭관리 프로그램에는 교육 · 훈련, 방사성방호약품 복용, 긴급작업 승인절차 등을 포함

○ 비상요원의 방사선 과피폭에 대비한 긴급의료 및 선량평가계획을 사전수립

7. 의료 및 구호, 소방 및 치안(경찰) 대책

가. 의료 및 구호

○ 방사능재난 발생시 방사능지역사고대책본부에 긴급의료본부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의료요원 등을 사전 지정, 긴급의료체제를 구축

○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 옥소에 의한 갑상선 피폭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소제를 비축하고 배포체제를 수립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주민 구호를 위한 식량, 생활용품, 의류 침구류 등의 확보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나. 긴급시 방사선 비상진료체제의 구축

○ 과학기술부장관은 평시 및 방사능재난 발생시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국가적차원의 방사선비상진료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병원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전국 권역별로 제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지정·운영(참고자료 10)

- 원자력시설 소재지 및 국·공립병원 의료진의 방사선 비상진료를 위한 "표준진료지침서"를 개발·보급

○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는 의료기관, 의료요원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 방사선 피폭자에 대한 비상진료체제를 구축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전소재지 별로 인근병원과 사전협약을 체결 운영하고(2개 이상) 전문적인 방사선영향평가 및 치료기술개발 등을 위한 전문기관(방사선보건연구원)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 및 각급 보건소 의료진의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능력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

다. 방사성방호약품 및 구호물자의 비축

○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 옥소에 의한 갑상선 피폭을 예방하기 위한 옥소제를 비축하고 필요시 배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
○ 지역주민 구호식량, 생활용품, 의료 및 침구류 등을 사전확보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주민 소개시 주민이 일시적으로(1주일 정도) 거주할 구호소를 사전 지정하고 편의설비 설치 등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

8. 對 언론대책

가. 연합정보센터 설치 · 운영(중앙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방사능재난 발생시 비상정보 종합관리
○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
○ 언론에 대한 브리핑 및 유언비어 관리

나. 각급 방재기관

○ 언론발표를 위한 대변인을 1명 사전지명 운영
○ 언론의 보도내용 파악 및 오보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반 구성 · 운영

다. 정부차원의 대 언론발표는 중앙(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사업자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연합정보센터에서만 발표한다.

라. 대국민 비상홍보와 관련 연합정보센터에 제공해야할 정보

○ 원자력관계사업자 : 사고내용 및 방사선과 관련된 각종 정보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관할지역 주민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 조정하에 사고상황과 방사선(능) 영향과 관련된 정보

9. 피해복구 및 장기수습 대책의 수립

가. 장기수습을 위한 개입 준위 설정

○ 장기간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민 이주, 음식물 섭취제한 등의 조치를 위한 개입준위 설정·운영

나. 복구계획 수립

○ 원자력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비상대책을 종료하기 전에 사고 복구 계획을 수립·이행

○ 복구조치는 원자력시설내의 상태가 안정되고 시설 외부의 오염분석 및 범위가 확인된 후 시행

다. 방사선(능) 제염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과 협의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비, 건물, 도로, 토지 등에 대하여 제염조치 대책 수립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통제하에 제염에 필요한 장비 동원계획 등 제반 조치사항 강구

라. 음식물 섭취제한

○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의한 음식물 섭취제한조치는 현장지휘센터장이 합동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지휘센터장이 결정,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또는 사업자는 그 결정을 위해 협조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대체 음식물 확보 및 비상급수 공급체계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

○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참고자료 5)

마. 가축 등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 방사성물질의 방출로 인한 가축 보호를 위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저장된 사료공급, 2차 오염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강구

○ 방사선비상시 애완 동물에 의한 오염확대 방지 대응책 강구

10. 방사성동위원소(RI) 사용기관 사고시 비상대응(부록 1)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RI 분실·도난·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비상대응조치

III. 방사능테러 대책 강구

○ 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에 원전등 원자력관계시설 운영자는 대 테러에 대비한 정보수집 및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지원체제를 강구 및 물리적 방호대응책을 수립 보강하고 이의 실효성을 훈련을 통해 검증

○ 방사능테러 발생시의 대응조치는 테러대비 정부종합대책('01.11.30)"방사능테러 대응계획" 에 따라 조치

IV. 국가 방사능감시 및 평가계획 수립(부록2)

○ 정부(과학기술부장관)는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 사고 조기 탐지 및 방사능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방사능 감시 및 평가계획" 수립·운영

V. 국제기술협력 및 자치단체의 방재능력 강화

가. 국제기술협력의 강화

○ 정부(과학기술부)는 방사선 비상시 사고수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자력시설 공급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국제기술협력을 강화

○ 방사선비상시의 국제협력은 IAEA의 『핵사고시 조기통보협약』 및 『핵사고시 비상지원협약』에 따라 시행

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능력 배양

1) 원전주변지역 『방재환경협의회』 설립 · 운영

○ 원전방재환경협의회 설립 · 운영 : 환경방사능 감시 및 방재대책과 관련된 현안 문제 협의(4개지역 : 고리, 월성, 영광, 울진)

○ 환경방사선감시 및 평가와 방사능재난대책, 주민보호대책 수립과정 및 방재훈련에 참여

2) 전담조직 및 인력확충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 구역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방재대책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

다. 방사능 안전대책 계획의 유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

○ 방사능 안전대책 계획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을 의무화

200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획		2003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0,429		1,402
방재요원교육		10회	60	2	12
지방방사능 측정요원교육	정기실시	5회	18	1	3
	순회실시	125회	27	25	5
	피폭선량평가	5회	25	1	5
방재훈련	자체훈련	155회	419	31	77
	합동훈련	9회	180	2	40
방재시설	연합정보센터	4식	1,200		
	화상회의시설	5식	200	1	40
방재장비	측정평가분석장비	20종 500대	1,500	20종 100대	300
	옥소제	1,150천정	100	230천정	20
방재기술개발	방재시스템구성등	1식	3,000		600
방사능방호 체계 보강	방사능방재장비 및 장구	1식	915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망 구축	측정소 3 감시포스트 13	1,585		
	현장방재지휘센터구축	4개소	1,200	1개소	300

유관기관 협조·지원사항

기 관 명	협조 · 지원사항
1. 과학기술부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운영 ·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의 대응책에 관한 전문기술적 사항 자문 · 지방자치단체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제공 및 자문 · 원전 공급국 등 외국 관계기관과의 기술협력 추진 · 기상 관계자료의 제공(기상청)
2. 기획예산처	·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예산 지원
3. 행정자치부	· 중앙긴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 주민보호대책에 관한 행정 조치 총괄 · 지방행정기관의 지휘· 통제 · 원전 방사능재난대책에 관한 대국민 교육 실시
4. 국 방 부	· 군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 및 장비 지원 · 기술지원단의 긴급 파견과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 방사능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5. 농림부	· 농산물, 가축 등에 대한 방호 조치 · 방사능 오염지역내 농·축산물에 대한 통제
6. 해양수산부	· 방사능 오염지역내 수산물에 대한 통제 · 사고지역 해역에 대한 어로금지, 선박운항 통제 등
7. 산업자원부	· 원전사업자의 사고수습 및 시설복구를 위한 긴급 물자 조달 지원
8. 건설교통부	·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9. 보건복지부	· 의료 및 구호지원, 방사능방호약품 지원
10. 정보통신부	·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11. 국정홍보처	· 각종 매스컴을 통한 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
12.지방자치단체	· 지역사고대책본부 및 지역긴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 주민보호조치(주민대피 및 소개, 의료 및 구호) · 민방위대 동원 및 치안유지 · 주민행동요령 홍보·전파

기 타

가. 2002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2002추진계획	2002상반기 실 적	진도 (%)	2002하반기 계 획
방사능 재난대책	○방사능방재체계의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대응능력 확보	50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대응능력 확보
	○방사능방재 운영체제 확립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시에 대비한 방사능방재기술지원시스템(CARE)의 구축·운영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설립운영 및 권역별 협력병원 지정	100	○원전 주요변수 이상시 자동통보시스템 개발
	○재난응급대책의 강구	○월드컵 방사능테러대비 각급 방재기관 관계자교육,모의훈련실시, 비상대응메뉴얼 제작배포, 경기장 주변 방사선 탐사 실시	90	○부산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가적행사의 테러대응 ○원자력시설등의 안전점검 및 관계기관대책회의 개최
	○ 방재요원 교육	○각급방재기관(군, 경찰, 119구조대,지자체,의료진 등)관계자 교육 실시	90	○각급방재기관(군, 경찰, 119구조대,지자체,의료진 등)관계자 교육 실시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현실성 있고 적용 가능한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90	○현실성 있고 적용 가능한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나. 2002계획대비 2003계획의 주요변경사항(요약)

분야별	항목	주요변동사항	
		2002	2003
방사능 안전대책	○방사능방재체제 보강	○방사능 사고발생시 과기부 소속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지차체 소속의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재난수습 등의 역할 수행	○기존의 방사능방재체체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추가 보강 -사고지역현장에 방재관련기관이 공동참여하여 방사능 재난의 정보수집, 신속한 지휘와 상황관리 등을 수행하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치 -원자력병원내에 방사선 사상자 및 주민의 진료와 치료를 위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운영 ○방사능테러대응대책 추가
	○방사선비상 등급의 설정	○비상등급을 3단계(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분류	○비상등급에 '이상사태' 추가
	○방사능방재 훈련	○원전에서의 방사능방재 훈련을 3가지(부분훈련, 전체훈련, 합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기존의 방재훈련에 '연합훈련' 추가
	○비상등급별 방재기관의 대응조치	○정부차원의 의료분야 대응업무 부재	○원자력병원의 대응업무 추가
	○방사능사고시 대응	○사고시 음식물섭취 제한조치를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결정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이 '합동대책협의회'에서 협의결정
	○환경방사능측정망 확충	○지방측정소 10개소 ○무인감시포스트 17개소	○지방측정소 : 12개소 ○무인감시포스트 : 37개소

부록 1

방사성동위원소(RI) 사용기관 사고시 비상대응

가. 목 적

○ 방사성동위원소이용과 관련한 방사선사고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비상대응체계 확립

나. 기본개념

○ 과학기술부(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는 총괄 지휘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행정자치부에 협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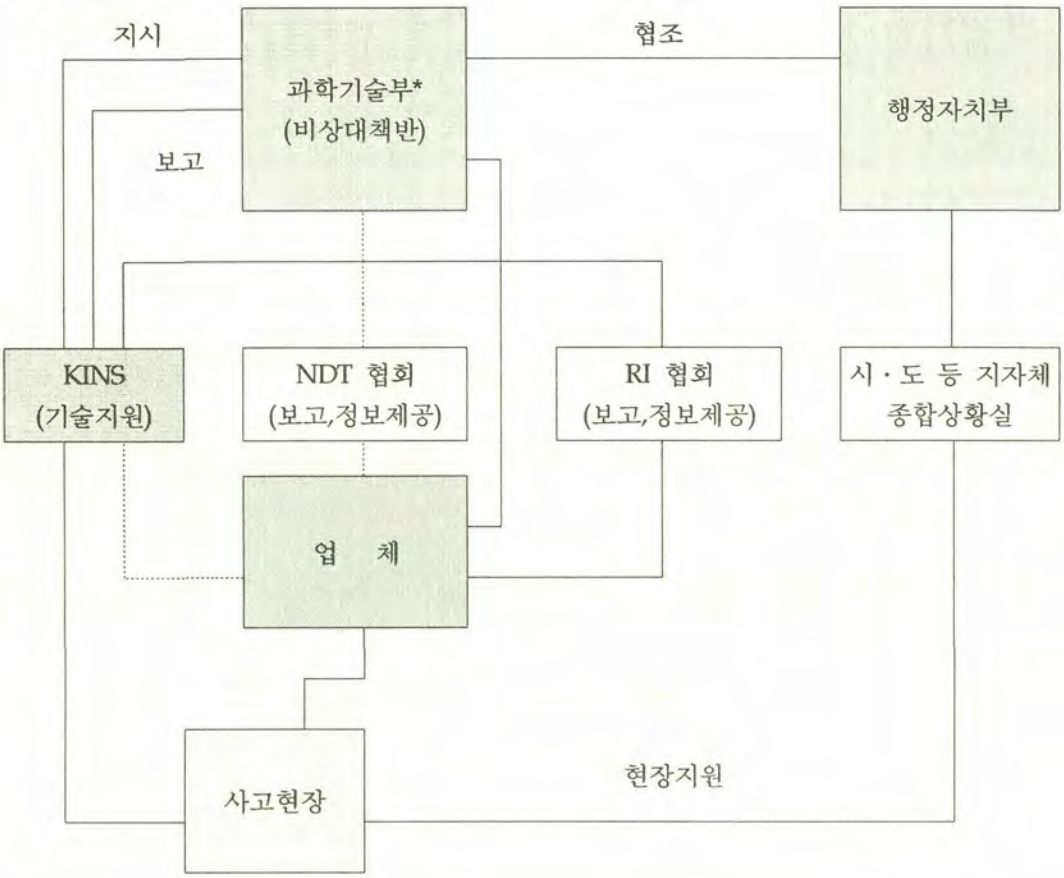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지원팀은 과학기술부(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지원체제로 구성

- KINS 본부 : 대책반장(총괄 · 상황반 · 평가반 · 지원반)
- 현장 파견 : 방사선측정 · 기술지원반

○ 필요시 인근 원전 방사선안전관리 부서로부터 기술지원

다. 방사성동위원소(RI) 사고시 방재조직

1) 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 연계체계



※ 향후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에서 비상대책반 기능수행

※ 註) KINS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NDT : 비파괴검사

RI : 방사성동위원소

2) 단계별 대응조치 운영계획

(가) 1단계 조치

○ 사고 발생시 과기부(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와의 협의 아래 현장파견단 파견 여부 결정

(나) 2단계 조치

○ 현장 파견시 우선적으로 방사선측정반이 긴급 출동하여 공간선량율 및 오염 여부 측정

○ 측정결과 오염확산을 방지하거나 주민통제 등 별도의 사고수습조치가 필요한 경우 : 과기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의 연계체계 활용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지원 체계

(가) 기술지원반 상시 운영

(나) 장 비

○ 통신장비

- 전화기
  - 본부 : 고정전화기 3대, 휴대폰 3대
  - 현장파견단 : 고정전화기 1대, 휴대폰 8대
- FAX : 본부 및 현장파견단 각 1대

○ 방사선(능) 측정장비

- 공간 γ 선량율 측정기
- 오염측정기
- 공기부유진측정기
- 감마핵종분석시스템 및 방사선측정차량(필요시)

○ 방사선 방호장구(필요시)

- 방호복, 방호모, 덧신, 양말, 고무장갑, 방독면 등

부록 2

국가 방사능 감시 및 평가 계획

· 본 계획은 민방위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국가 방사능감시 및 평가계획으로 국내에서 방사능 비상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인접국가 등 외국에서 우리 영토에 방사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범국가적인 방사능 감시 및 평가를 위한 기본 계획임.
· 동 계획의 목적은 방사능 재난시 요구되는 국가차원의 방사능감시 및 평가체제의 확립과 평시에는 전국토에 대한 자연방사능의 준위를 측정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음.

I. 목 표

○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한 방사능 오염의 조기 탐지능력의 확립
○ 비상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사능 감시 및 평가 지원체제의 확립

II. 방 침

○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부터 방사능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사능 사고에 대비, 종합적인 방사능감시 및 평가계획을 수립·추진
○ 평상시 자연방사능준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전 국토 환경방사능의 분포 및 변동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비상시를 대비한 기초자료 확보
○ 전국환경방사능 감시기능의 강화를 통해 방사능 측정자료의 신속한 제공 및 체계적인 방사능방호기술 지원체제 확립

○ 유사시 화생방 방호계획 및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감시체제와 연계하여 범국가적 방사능 감시체제의 확립

○ 전문 인력·장비의 연차적 보강 및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환경방사능 감시역량을 제고

○ 피해지역이 광범위하여 재해구역 선포 등이 필요한 중대한 사고 발생시 방사능 방재대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

III. 추진계획

1.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 방사능오염사태 발생시 사고현장의 방사능감시 및 평가와 전국 환경방사능의 측정·분석·영향평가 등 방사능방호에 관한 기술지원을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내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이하 "기술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

○ 기술지원본부는 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운영하며,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정함.

○ 기술지원본부는 전국방사능측정소 운영관리와 방사능 측정자료의 종합분석 및 평가기능을 수행

2. 전국 환경방사능감시망의 구축

가. 중앙 및 지방 측정소의 설치·운영

○ 평상시 전국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하여 방사능 측정소를 설치·운영

○ 방사능측정소는 중앙측정소, 지방측정소 및 간이측정소로 구분하여 중앙측정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내에, 지방측정소는 전국 각 지역에 적절히 설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감독 하에 운영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은 평상시에는 전문인력 및 측정장비 보강 등을 통해 자체분석 및 평가능력을 제고하고 감시망의 확충 및 전산화 등을 통하여 국토전역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운영

○ 과학기술부장관은 비상시 방사능측정소를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기상청 산하의 기상대를 이용한 시료채집과 원전사업자, 군 방사능 낙진 시료채집소 등을 활용한 종합적인 방사능 감시체제를 구축

나. 전 국토 자동환경방사선 감시망 구축

○ 평상시 전국토 공간 감마선량률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 자동감시망은 지방방사능측정소, 원전주변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설치한 감시측정소(MP) 및 각 원전 사업자가 설치한 MP 1개소로 구성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관리하에 운영, 인터넷에 실시간 단위로 방사선량률을 나타냄

다.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감시망과의 연계

○ 원자력사업자는 평시 및 방사능의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감시망을 활용, 환경방사능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방사능의 측정 및 분석 결과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공

○ 원자력사업자의 평시 환경방사능 감시업무는 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거 수행

라. 군 방사능감시망과의 연계

○ 과학기술부의 주관하에 군 방사능감시망의 수행부대는 방사능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자체감시망에 의해 수행된 방사능 측정·분석결과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공

3. 긴급시 방사능 감시 및 평가체제의 확립

○ 과학기술부눈 비상시의 긴급 방사능감시 및 평가를 위하여 범국가적인 방사능 감시체제를 확립

○ 방사능감시체제는 과학기술부의 주관하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화생방방호대책에 의한 화생방분대와 군 인력과의 합동 운영체계를 강구

○ 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방사능 비상시를 대비 긴급환경방사능 감시 및 측정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긴급시에는 군의 방사능 낙진 시료채집 및 분석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방사능 측정 및 분석을 수행

○ 긴급시 환경방사능 감시 및 측정소 운영계획에는 비상시의 환경방사능 감시조직, 측정지역, 측정대상 시료 및 방법, 보고체계, 기타 지방측정소에 대한 인력 및 장비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긴급측정 및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비상시 대처능력을 제고하며 인근 국가간 비상시 지원·협조체제를 구축

4. 비상대응절차의 확립

가. 비상통지 및 방사능 감시활동 전개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소집운영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방사능오염사태를 판단하여 요구

○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직접 방사능 비상통지 및 기술지원을 요청

나. 방사능 환경오염 사태의 조사 및 기술지원

○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관계부처의 요청에 의거 방사능방호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관계부처의 대책본부에 기술지원 요원을 파견하여 신속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수행

○ 과학기술부의 주관하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오염사태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오염조사를 위하여 오염지역에 방사능 탐측 및 기술지원 요원을 파견하여 방사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보호, 환경보전 등 현장 기술자문 업무 수행

○ 기상청장은 방사능의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기상정보의 제공과 중앙측정소가 요구하는 환경시료의 수집·공급을 위한 지원·협조업무를 수행

다. 방사능 측정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전국의 지방측정소 및 원전현장, 군 방사능 감시망 등에서 제공한 방사능 측정자료를 종합 분석·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

○ 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통보해온 측정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국민보호 및 환경 보전업무에 활용토록 함

라. 비상통신체제의 구축

○ 방사능 환경오염 사태 발생시 신속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국의 지방측정소, 원자력발전소 현장 및 과학기술부간에 비상통신망을 구축

○ 각급 방재기관간의 비상통신망은 기존 상용전화를 최대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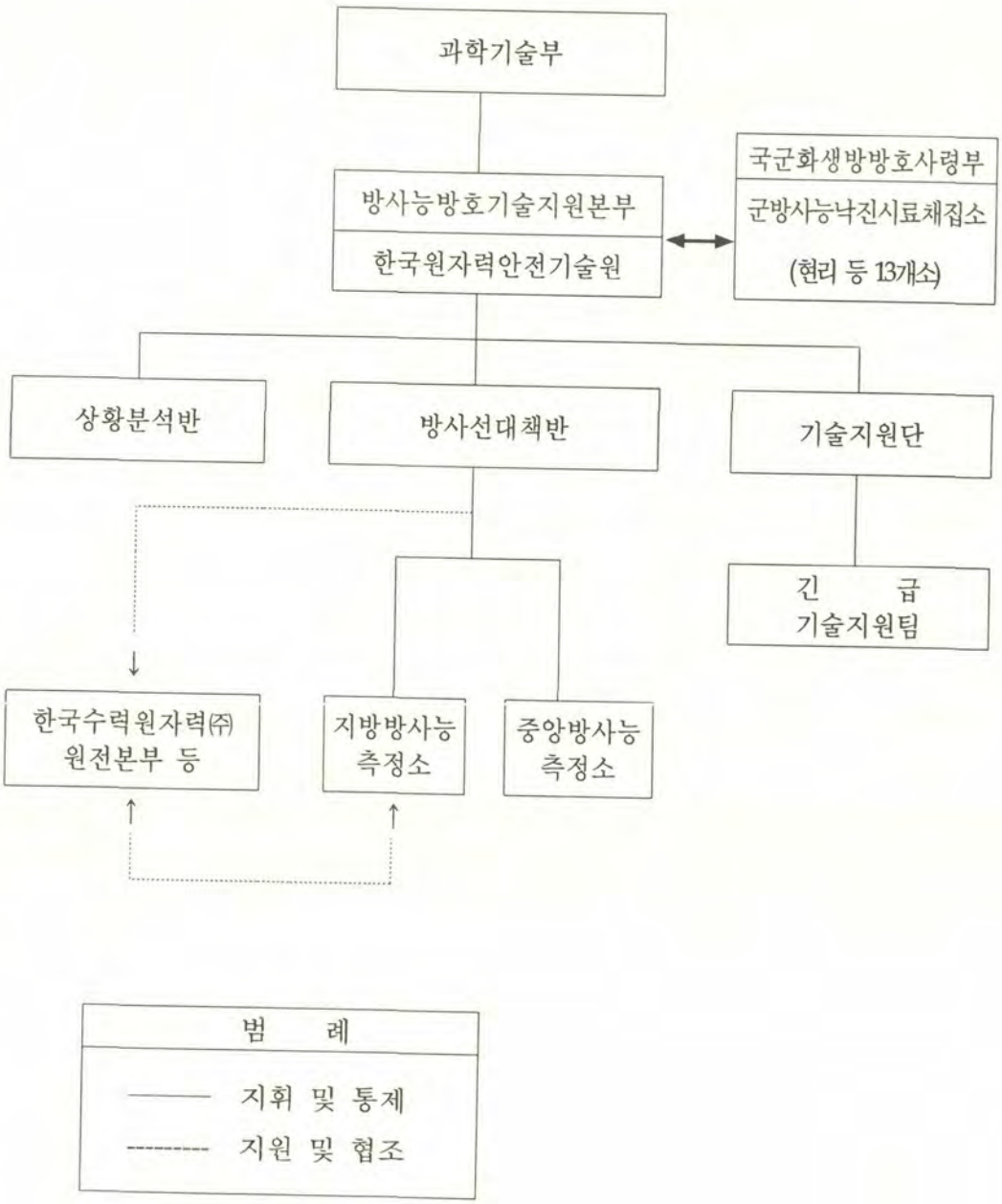
마. 기상이동 감시강화

○ 기상청장은 방사능의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국 기상조직을 활용하여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가 지정하는 기류의 동향분석을 강화, 예상 오염지역 판단을 위한 제반 기상정보를 제공

○ 필요시 전국 방사능오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상대에서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가 지정하는 강수물 등의 환경시료를 수집,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장의 환경방사능 측정 업무를 지원·협조

[별표 1]

방사능 감시 및 평가체제



[별표 2]

전국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 및 간이측정소 설치현황

설치지역	기 관	관할지역	인원	비 고
서 울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서울	2명	
수 원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경기	2명	'02 신설
춘 천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강원(영서)	2명	
대 전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대전, 충남	2명	
군 산	군산대학교 물리학과	전북	2명	
청 주	청주대학교 물리학과	충북	2명	'02 신설
광 주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광주, 전남	2명	
대 구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대구, 경북 남부	2명	
부 산	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부산, 경남	2명	
제 주	제주대학교 농화학과	제 주	2명	
강 릉	강릉대학교 물리학과	강원(영동)	2명	
안 동	안동대학교 물리학과	경북 북부	2명	
계			24명	

[별표 3]

무인감시포스트 설치현황

구 분	측정소명	설치년도	주 소	비고
간 이 측정소	울릉도	'94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 589-2, 울릉도기상대	자동 감시망 연결
	백령도	'94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875, 백령면사무소	
	서산	'02	충남 서산시 수석동 188, 서산기상대	
	목포	'02	전남 목포시 연산동 726-3, 목포기상대	
	진주	'02	경남 진주시 초전동 426, 전주기상대	
	서귀포	'02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538, 서귀포기상대	
	울산	'02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315-4, 울산기상대	
	전주	'02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소송동 515, 전주기상대	
	고리원전	'92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읍사무소	
	영광원전	'92	전남 영광군 홍농읍, 복지회관	
	월성원전	'92	경북 경주시 양남읍, 양남소방서	
	울진원전	'92	경북 울진군 부구면, 부구면사무소	
	국군	'95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국군제1화학방어연구소	
	충주	'02	충북 충주시 안림동 521-5, 충주기상대	
	문산	'0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103-17, 문산기상대	
	철원	'0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964-2, 철원기상대	
	속초	'02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11-3, 속초기상대	
	원주	'02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218, 원주기상대	
	동해	'02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227-3, 동해기상대	
	영덕	'02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233, 영덕기상관측소	
	추풍령	'02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205, 추풍령기상대	
	거창	'0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동 169-9, 거창기상관측소	
	완도	'02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26, 완도기상대	
	여수	'02	전남 여수시 고소동 304, 여수기상대	
	인천	'02	인천시 중구 전동 25, 인천기상대	
계			25 개소	

<참고자료 1>

주민보호조치 기준

주민보호조치	일반개입준위 (유효선량)
옥내대피	10 mSv ①
소개	50 mSv ②
갑상선 방어	100 mGy ③
일시이주	30 mSv/첫월 ④ 10 mSv/다음월
영구정착	1 Sv/평생 ⑤

※ 주 : ① 옥내대피는 2일 이상 권고되지 않는다. 의사결정권자는 더 짧은 기간 내에서 더 낮은 개입준위에서 옥내대피를 결정할 수도 있다.

② 소개는 1주일 보다 더 긴 기간은 권고되지 않는다. 의사결정권자는 주민 소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더 낮은 개입준위에서 소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인구 밀집지역 또는 부적절한 수송으로 소개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더 높은 개입준위를 적용할 수도 있다.

③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연령군에 대해 1개의 개입준위가 권고된다.

④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평생기준은 70년이다.

<참고자료 2>

옥내대피 및 소개시 주민행동요령

가. 비상 경보 신호

○ 비상방송망 또는 경찰관, 소방관 및 민방위대 등의 비상연락에 의함

나. 비상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 요령

○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하는 것은 금물
○ 라디오, TV, 민방위 조직 등을 통한 정부지시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
○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옥내대피하고 기밀성을 유지
○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옥내대피, 소개

다. 옥내대피 및 소개 지시를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 전기 및 가스를 끄고 수도꼭지를 잠금
○ 담요, 의복, 구급 약품 및 유아용품 등을 지참하고 소개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 동물 동반 금지
○ 가축물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
○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및 저장
○ 사무실이나 집은 반드시 잠그고 흰 수건이나 의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 두어 소개 완료를 표시
○ 자녀가 학교에 있을 경우 학교에서 집단으로 옥내대피 또는 소개시키므로 학교로 찾아갈 필요가 없음
○ 옥내 대피시의 최대 체제시간은 2~3일을 초과하지 말 것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금지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 유도 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

<참고자료 3>

방사능 낙진 강하시 행동요령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

○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

○ 우물이나 장독 등은 뚜껑을 덮어 둠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하거나 오염검사후 사용

○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

○ 대용으로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외 섭취금지

○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음

○ 야채, 과일 등 채소류는 잘 씻어서 먹음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의 유입 최소화

<참고자료 4>

원대복귀시 행동요령

가. 통보 방법

○ 스피커, 앰프 등 마을 또는 직장 단위로 설치된 기존 방송망을 활용

○ 경찰 또는 민방위대 차량 활용

- 스피커를 부착하여 순회 방송

○ 라디오, TV, 신문 등의 활용 및 병원, 학교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전화 활용

나. 원대 복귀 시 행동 요령

○ 경찰, 민방위대 또는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 외 접근 금지

○ 환경감시등 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방재요원 또는 정부지시에 따라 행동

○ 대용으로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 검사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 금지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하거나 오염 검사 후 사용

<참고자료 5>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

방사성핵종		일반음식물(Bq/kg, Bq/ ℓ)			
		육류 어류 곡물	야채 과일	물 우유	유아식품
1군	Cs-134, Cs-137, Ru-103, Ru-106, Sr-89	2,000	1,000	200	100
2군	I-131, Sr-90	1,000	500	100	10
3군	Am-141, Pu-238, Pu-239, Pu-240, Pu-242	10	10	10	1
4군	H-3	100 kBq/ ℓ			

※ 1. 방사선(능)으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주민의 추가 내부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의 섭취 제한 조치를 취함

2. 음식물
   - 오염된 식품 폐기
   -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의 혼합 방지
   - 오염정도가 낮거나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감쇄 또는 처리 후 사용
   -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가공처리 방지

3. 음료수
   - 허용치 이상으로 오염된 식수원은 봉쇄 조치
   - 오염 정도가 낮거나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감쇄 또는 처리후 사용

4. 우유
   - 오염지역에 방목된 젖소로부터 나오는 우유는 잔존 방사능농도에 따라서 적당한 처리과정을 거쳐 치즈등 다른 식품으로 가공 처리하여 보관 또는 영구히 폐기시킴

5. 농·축산물 및 가축 사료
   -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오염된 식품, 가축사료는 일시 저장후 사용
   - 반감기가 긴 핵종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영구 폐기
   - 목초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경우 가축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오염되지 않은 사료 공급

<참고자료 6>

옥소제 복용요령

○ 대기중의 방사성 옥소(I-131)증가로 인하여 주민의 갑상선 피폭 우려가 있을 시, 사고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옥소제를 피폭 직전 또는 직후 빠른 시간 내(6시간)에 복용

○ 1세 이상의 모든 사람

- 처음 24시간 내에 KI 130mg 또는 KIO_3 170mg 복용
- 24시간 이후에는 KI 65mg 또는 KIO_3 85mg 복용

○ 1세 미만의 유아

- 매 24시간마다 KI 65mg 또는 KIO_3 85mg 복용

< ※ 옥소제 비축 현황 >

구 분	고리원전	월성원전	영광원전	울진원전
대상인구수(인)	61,494	11,733	28,055	19,453
확보수량(정)	615,000	116,000	280,600	188,400

<참고자료 7>

긴급작업자 복귀지침

주민보호조치	외부피폭선량
인명구조	> 250 mSv ①②
심각한 상해방지 대량 집단선량 회피 환경방사선 공간선량률 모니터링	< 50 mSv ①
단기간의 복구활동 긴급한 보호조치 이행 환경방사능 시료 채취	< 25 mSv ①
장기간 복구활동 사고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작업	작업종사자 피폭지침

주 : ① 상기 기준은 피폭 전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만일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이 값을 5로 나누어야 한다. 만일 호흡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이 값에 2를 곱하여 적용한다. 긴급작업자는 지원자이어야 하며, 비상관리자는 피폭에 의한 잠재적 영향을 작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 값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급성효과가 나타나는 발단선량) 이하로 선량을 유지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작업자는 방사선방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자료 8>

오염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요령

가. 목적

○ 오염 지역 및 사고 지역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통제사항

○ 인원 통제

- 방사선 피폭 방지, 오염 확대 방지, 소개 주민 재산의 안정적인 보호

○ 차량 통제

- 교통 혼잡 예방, 주민 보호에 필요한 경로 확보
- 방재요원, 장비 등의 신속한 반출입 경로 확보
- 오염된 표면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오염 확대 방지

○ 물질의 외부 지역 반출 통제

- 오염 지역의 식품, 농작물, 가축 등

다. 오염 구역 설정 및 통제 방법

○ 담, 울타리, 철조망, 차량 등의 물리적인 구조물 활용
○ 출입 차단 지점에 기 수립된 비상계획서 및 절차서에 따라 통제 요원 파견
○ 오염 경고판 설치
○ 공고(신문, 방송 등)

라. 통제 요원

○ 군인, 경찰관, 소방관, 민방위대, 보건소요원 및 사업자요원 활용

마. 기타 고려 사항

○ 통제조는 차량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이동
○ 지역사고대책본부와의 무선 교신 장비 확보
○ 각 통제조는 휴대용 방사선 감시기 및 개인 방사선량계(TLD, Film badge, 포켓선량계)를 지참
○ 주기적인 교대 계획 수립

<참고자료 9>

오염구역 제염요령

가. 대상

○ 오염지역내의 장비, 건물, 도로, 토지 등 방사선(능) 오염이 확인된 곳

나. 방법

○ 도로·건물·차량·장비는 물 또는 제염세제로 세척하거나 공기 청소기를 사용하여 제거

○ 잔디, 토양표면은 긁어내어 폐기장소에 폐기 또는 지표면을 뒤집어 지표면 위에 있는 오염물의 공기중 재부유 방지

○ 기타 지표상의 오염물은 제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 보관

다. 제염 조치시 고려 사항

○ 제염 요원의 방사선(능)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방어 장비, 방어복 착용 및 개인 선량계 등 지급

○ 넓은 지역이 오염된 경우 표면 오염물의 수송 장비 확보

○ 대형 구조물 등의 오염 제거 시에는 전문가 자문

라. 제염 조치후 대책

○ 제염 조치 완료 후 또는 제염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 확산 방지와 방사성물질의 공기중으로 재부유를 막기 위해 잔존 방사능 고착화

○ 모든 제염 작업에 대한 기록(오염 준위, 오염 물질 발생량, 폐기 장소 등) 관리 유지

6. 시설물안전대책

[소방안전본부 소관]

Ⅰ. 주요시설물 안전관리강화

Ⅱ. 건설공사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진방재 대책

Ⅲ. 국가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Ⅳ. 부실 안전진단 방지대책 강화

추 진 방 향

○ 대형 ·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1 · 2종)안전관리체계 강화
○ 건설공사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진방재대책 강화
○ 국가 주요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 부실안전진단 방지대책 강화

추 진 계 획

Ⅰ.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가. 대상시설 : 1 · 2종시설물(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다중이용 건축물

나. 안전점검 : 관리주체 책임으로 실시

※ 해빙기(3~4월), 자체점검 (10월)

다. 안전조치

○ 시장 · 군수 : 민간관리주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이행사항 확인

라. 안전 점검계획 수립 · 운영

○ 건설공사현장 시공실태점검
○ 재난위험시설물의 일제점검

II.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진방지대책

가.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점검

○ 건설공사 현장 시공 안전실태 점검

- 발주청별 자체점검계획의 수립시행, 지방국토관리청은 매월 점검계획을 수립 현장점검시행(민간 시공사 포함)

-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특별점검실시

○ 재난위험시설물 일제조사 및 점검실시

- 관리주체별로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일제조사 및 점검실시(4월)

- 재난발생 인지즉시 보고책임자가 재난유형별·단계별 보고 체계에 따라 재난상황 및 응급조치 내용을 보고 수습 및 복구
  ※ 세부내역은 건설교통부 재난·재해 편람 참조

나. 지진방재대책 강화

○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기법 및 향상기법 개발 "완료('02.12) 시설안전기술공단

III. 국가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가. 국가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보고체계 전산화

○ 국가주요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국가주요시설물 연계정보 D/B 구축

Ⅳ. 부실 안전진단 방지대책 강화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 추진 및 공사현장 점검 강화

- 부실공사방지대책 세부과제 중 미 완료된 과제 추진완료
- 주요 SOC 건설현장 및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물 건설현장에 대하여 월별로 순회점검 실시 등

7. 교통안전대책

[건설교통국 소관]

Ⅰ. 항공 안전성 및 보안강화 대책

Ⅱ. 항공보안 강화 대책

Ⅲ. 철도교통 안전대책

Ⅳ. 육상교량 안전대책

Ⅰ. 항공 안전성 및 보안강화 대책

추 진 방 향

○ 항공안전 감독체계 구축 및 강화대책의 지속추진

○ 항공안전 및 보안협의 강화

○ 표준업무 수행지침 제정 및 보안검색 요원 전문화

※ "항공안전성 및 보안강화 대책"은 중앙정부(건설교통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도는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함

추 진 계 획

Ⅰ. 항공교통 안전성 제고

1. 국제기준에 적합한 항공안전감독체계 구축

○ 국제기준에 의한 연간 점검계획(점검항목 및 일정)을 수립,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실시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

- 연간 및 월간 지속감독프로그램 수립(89개 항목 : 운항 41, 정비 48)
- 항공안전감독관에 의한 상시 점검활동 실시
  · 감독관현황 10명 (조종 4, 정비 4, 운항관리 1, 객실 1)
- 매월 점검결과에 대한보고 및 시정지시사항 이행결과 확인을 통한 운항안전확보 및 사고예방

2. 항공기안전강화대책 지속 추진

○ 지난 수년간 국적항공사의 연이은 항공사고로 크게 실추된 국내외 신인도 회복 및 세계 선진국 수준의 항공안전 목표의 달성
- 조종·운항 분야의 우수조종사 확보
- 정비·검사 분야의 정부 검사기능 강화
- 질 높은 관제 및 공역 확대 및 공항, 안전시설의 현대화

○ 각 분야별 국제기준의 검토 및 도입으로 국내실정에 적합한 제도 정착으로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

II. 항공보안강화 대책

1. 항공안전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협의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 보안업무수행지침 제정

○ 보안검색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행능력을 제고함으로서 효과적인 보안업무수행

- 인원, 차량 등의 검색 방법 및 화기, 무기, 위험물 식별방법
- 보안교육과 훈련 및 인원배치 등

3. 보안검색 및 장비 운영기준 제정

○ 보안검색 장비의 최소 요건 및 기준설정

- 각종 탐지기 장비요건 및 운영원칙
- 폭발장치 탐지장치 장비요건 및 유지보수 절차 등

○ 보안검색 요원 증원
- 일부 국제공항 및 군지원 곤란 공항은 최소인원 증원추진
  · 한국공항공사 284명 (335 ⇒ 619) 증원예정
  · 인천국제공항공사 204명 (543 ⇒ 747) 증원예정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획('02~'06)		2002 실적		2003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9,600		7,280		29,600
공항보안 검색장비 보강	폭발물 탐지장비 외 2종/104점	4,100	폭발물 탐지장비 외 4종/149점	1,040	-	-
폭발물 처리장비 보강	폭발물X-선 촬영기 외 14종/84점	3,500	폭발물X-선 촬영기 외 17종/152점	4,900	-	-
화생방장비 보강	방독면 외 52종/3,522점	2,400	방독면 외 15종/4,533점	1,340	-	-
보안검색 요원 증원	검색요원 484명 증원	29,600	-	-	검색요원 484명 증원	29,600

2002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2002추진계획	2002상반기실적	진도 (%)	2002하반기계획
항공안전 기술자문	항공안전기술자문 및 미연방항공청(FAA) 교관초청 전문교육 실시	- ISI 기술자문 실시 : '02.4~12월 까지 - FSB(Flight Safety Boeing)교관 초청 운항검사관 초기교육 실시 : '02.3.4~14(17명)	80	기술자문 계속
항공안전 교육훈련	안전감독관 전문교육 실시	초기교육 실시(6명) : '02.3.4~14	100	-
항공기안전성 인증 수행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연간 점검계획 수립 완료 및 실시중	80	안전점검 지속 추진
공항보안점검 검색장비보강	폭발물 탐지장비 외 2종/104점	폭발물 탐지장비 외 4종/149점 확보	100	-
폭발물 처리장비 보강	폭발물X-선 촬영기 외 14종/84점	폭발물X-선 촬영기 외 17종/152점 확보	100	-
화생방장비 보강	방독면 외 52종/3,522점	방독면 외 15종 /4,533점 확보	100	-

유관기관 협조·지원사항

기 관 명	협조·지원사항
국방부	- 민항기가 취항하는 군공항에서 항공안전감독관 및 검사관의 안전점검활동 협조
국정원	- 민간항공보안지침 제정시 협조
공항공사	- 항공안전사고 발생 대비 항공기 소방계획의 철저한 수립·시행
경찰청	-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공항경비 철저
항공사	- 정부의 항공안전활동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III. 철도교통 안전대책

추 진 방 향

○ 철도 무재해운동 강력 추진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
○ 직무사상사고 예방활동 강화
○ 고속철도 개통대비 대책

추 진 계 획

1. 기본에 충실한 자율적 안전관리의 정착

가. 안전의식의 제고

○ 안전확보가 철도경영의 최우선 목표임을 각자 인식
○ 안전관련 구호의 재정비

※ 안전확보 실천지침

○ 현업 각 소속(분소·주재 포함) 사무실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하여 안전의식 재무장

※ 안전 결의문

○ 직원 조회 또는 소집교육시 구호 제창으로 안전의식 함양

※ 작업 안전구호

○ 각종 작업 시작전에 제창 후 작업에 임하여 직무사고 예방 실천의지 재확인

나.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확립

○ "안전관리상 꼭 필요한 사항 및 금지사항"을 선정, 작업장별 실천

○ 소속장은 직원 스스로 안전관리활동을 시행토록 엄격히 지도·독려

○ 반별·부서별·소속별 등 각 계층별 안전관리체제 정립을 위한 풍토 조성

○ 안전지도관은 현업직원의 안전관리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도에 역점

다. 안전관리기본지키기 운동 적극 추진

○ 안전관리 생활화 운동 전개(4월 "교통안전의 달" 행사와 병행)

- 계절별 취약요인인 졸음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활동

- 이례사항 발생시 대응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실시

- 사고사례 및 운전취급자 특별교육 실시(특히 신규자 및 업무미숙자)

○ 기본지키기 운동의 활성화(계속, 특히 10~11월 중점시행)

- 운전취급·보수작업 등 기본적 준수사항 철저 이행(규정, 업무수칙)

- 지적확인 환호응답 교육 및 경연대회

- 소속장 및 전 안전지도요원 중점 지도·독려

○ 안전확보 실천지침 생활화

- 규정과 안전수칙 준수

- 운전정보 교환 및 운전협의 철저

- 지적확인 및 무재해 운동의 생활화

라. 잘못된 취급관행의 개선

○ 업무지침서(Manual)에 의한 표준작업의 정착

- "쉽고 편하게" 적당히 하려는 행위의 근절

- 이례상황시 안전확보 후 작업시행

○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수범사례 교육 소속장 책임하에 시행(월 1회 이상)

- 잘못된 취급관행으로 기인된 사고사례 교육

- 국내·외 사건사고 신속전파 및 대응책 강구

- 사고예방 수범사례 발굴, 발표 및 표창

마. 무재해운동의 적극적 추진

- 신안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

○ 무재해운동의 대상 및 범위 확대

- 직무사상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예방 활동에 적용
- 무재해운동 추진계획 수립·시행

○ 무재해운동의 추진기법 교육 및 생활화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성공사례집 제작
-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실시(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협조)
- 소속장 및 간부의 강력한 의지로 직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소집단별 자율적 안전토론회 활성화
- 자소속에 잠재된 불안전 요인의 적극 발굴 및 개선
- 매월 1회 무재해운동 추진 결의대회 실시

○ 중점 추진사항

- 위험 예지훈련 시행
  · 안전토론회 등 활발한 토론을 통한 위험요인 색출
  · 대책 및 활동목표 설정·이행

- 지적확인 환호응답의 생활화
  · 실천상태 확인·지도독려 및 전직원 체질화 유도
  · 우수 소속 및 직원표창
- 무재해운동 확산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 지역책임관 단위, 지역사무소·정비창 단위 경연대회 시행
  · 우수 소속에 대한 표창시행
- 업무개선 전·후 이행사항
  · 복장·보호장구 착용상태 상호 확인
  · 안전결의문 및 안전수칙 확인·제창
  · 작업종료시 주변정리 철저
-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 본청 선임, 순회교육

2. 안전 교육·훈련의 강화

가.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

○ 안전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통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 안전관리 정책반
  - 대상 : 5급이상 소속장 및 간부급
  - 교육인원 : 40명(1회 20명, 2회)

○ 안전관리 지도반
  - 대상 : 6급이하 안전관리자, 역장, 부역장
  - 교육인원 : 90명(1회 30명, 3회)

○ 인트라넷을 이용한 자기학습용 교육자료 제공 확대

○ 자소속 취약점 및 대비책에 대한 교육

○ 새로운 기술 및 제도의 습득교육(신장비 도입시 사전교육)

나. 적시성 있는 사고사례 전파 교육

○ 업무수행중 발생된 중대사고 및 외국철도 사고를 신속히 전파
- 동종의 유사사고를 사전에 예방

○ 중대사고 및 외국 철도사고 분석내용 교육

○ KROIS 및 인트라넷을 이용, 사고내용 신속 전파

○ 안전지도관 지도활동시 전파교육 실시

다. 이례적 사항 발생시 대응능력 배양

○ 이례적 운전취급시 신속한 안전조치 및 운전정보 교환
- 수신호, 착선, 열차교행, 대피, 폐색방식 등

○ 이례적 운전 취급사례 발굴 및 훈련실시
- 개인별 임무부여 및 취급요령
- 실기위주 가상훈련 실시

라. 운전취급 기본사항 특별교육 및 평가

○ 대상 : 역, 승무사무소, 모터카 및 보선장비 운전자 등 운전취급자

○ 방법 : 소속별 운전취급 특별교육 시행·평가 및 본청·지역사무소 안전요원 활동시 표본평가(본청에서 교육과제 부여)

마. 현업직원 안전관리교육 강화

○ 정기 안전교육시간 확대(매월 1시간 → 2시간)

○ 안전수칙 교육 등 작업현장 교육강화

○ 전입자,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한 교육 철저

3. 소속별·지역별 안전관계회의 활성화

가. 지역안전위원회 운영강화(연 2회 이상)

○ 구성 : 지역사무소 관할 구역내 지역관리역장, 사무소장

○ 회의사항 : 지역내 안전관련 사항의 심의·조정·평가 등

○ 지역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무소의 조정기능을 강화함

나. 안전협의회의 활성화

○ 지역책임관 단위 지역안전협의회 개최(지역책임관 회의시 월 1회)

- 구성 : 지역관리역 관할 구역내 역·소장
- 임무 :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 토의·시정 및 건의 등

○ 소속별 자체안전협의회 개최(철도 안전의 날 익일)

- 소속내 불안전 요인의 발굴 및 시정 협의
- 실질적인 의견수렴과 개선방안 마련의 장이 되도록 소속장이 적극 유도
- 문제점 발굴 및 개선사례는 즉각 안전관리에 반영

○ 각 소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 : 철도차량 정비창, 지역관리역, 사무소
-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안전확보가 노사공동의 책임과 의무임을 인식

4. 소속별 금지행위 선정 이행상태 확인 및 철저한 지도·감독

가. 소속별·분야별 실정에 부합하는 필수적 금지사항을 선정

나. 소속장 책임하에 철저한 이행확인 및 지도·감독 강화

다. 분야별 금지사항 '예시"

※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 포함하여 선정 시행

○ 운수·운전분야

- 선로 및 선로전환기 반위 방치행위 - 지정된 자 이외의 운전취급 행위 - 본선지장 입환시 승인을 받지않고 입환 - 기관차 운전시 불확실한 신호, 전호, 통고에 따르는 행위 등

○ 차량분야

- 차량부품 납품검사 형식적 시행 및 생략
- 고압전원 스위치 취급지정자 이외의 자 조작
- 규정에 의한 분해검수, 전기절연저항측정 등 검수생략
- 디젤엔진 및 전기장치를 휘발유로 세척
- 기중기 엔진가동중 벨트 조정

○ 시설분야

- 선로 작업관계
  · 선로내에 공기구와 재료를 방치하는 행위
  · 안전장구 미착용, 감시자 미배치, 열차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행위
  · 레일 천공시 장갑을 사용하거나 손으로 지지하는 행위 등
- 장비운전 및 취급관계
  · 운전협의를 하지않고 모타카를 운전하는 행위
  · 운행중인 차량이나 장비에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 보선장비 운전시 허용속도 초과운전 또는 음주운전 행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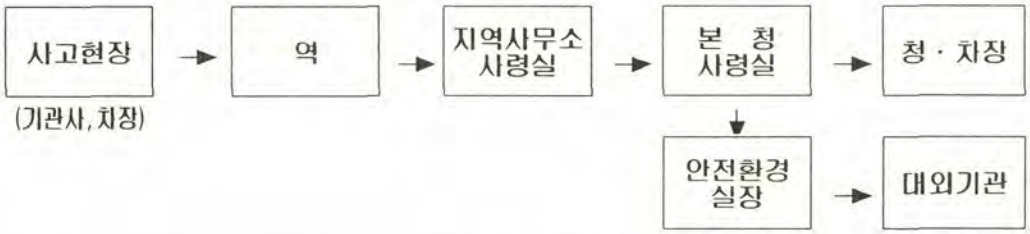
○ 전기분야

- 계전기의 인위적 작동 및 협의 미시행
- 운전명령 없는 전차선로의 급·단전 조작(장애발생시 제외)
- 급단전 조작 또는 운전협의시 지정자 이외의 자가 조작
- 절체작업 등 보안장치 작업 후 안전조치 강구 후 연동검사
- 선로전환기 취급지정자 외 임의취급

5. 사고 복구·수습체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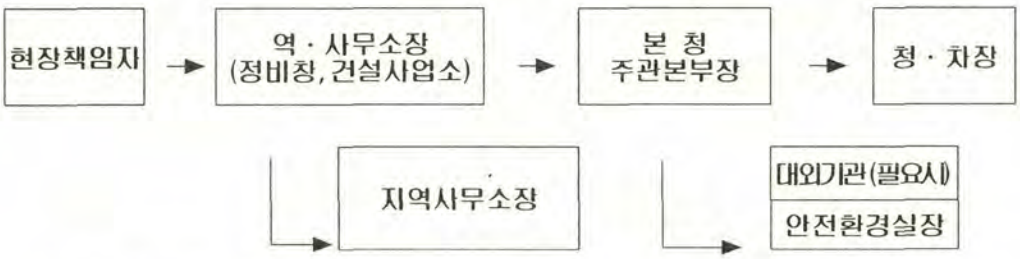
가. 신속한 사고급보체제 운영

1) 운전사고 : 사령실을 통하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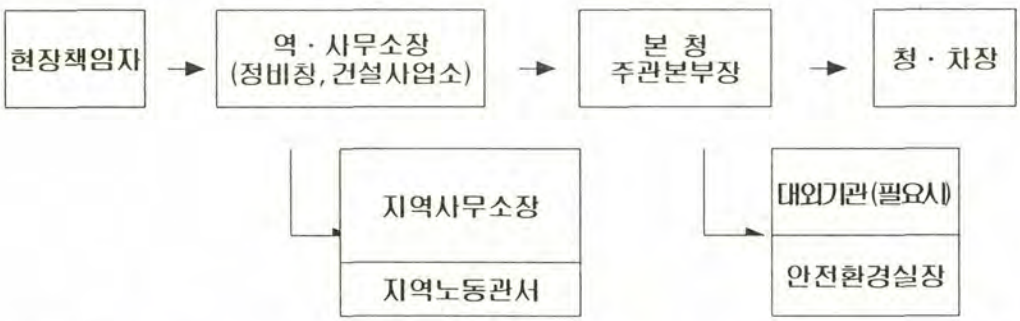


※ 초동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등 단계별 보고이행

2) 일반안전사고(건설선 사고 포함) : 역 · 소장이 본청 관계본부장을 경유 청 · 차장에게 보고



3) 직무사상사고 : 노동관서 통보



4) 현장 복구 · 수습상황을 정확하고 책임 있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 책임자 지정운용

○ 정 : 복구지휘자가 현장 5급직원 중에서 지정

○ 부 : 사령요원을 현장 파견시켜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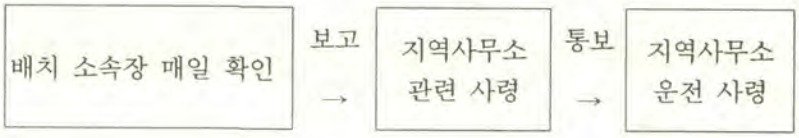
○ 보조자 : 전기통신원

나. 사고대비태세 확립

1) 지역사무소별 사고복구·수습처리내규 제정 운영

2) 주요복구장비·자재 비치상태 상시점검 파악

○ 일일점검 및 보고 : 배치 소속장이 시행



※ 운전사령은 기중기 배치상황을 관련사령은 복구자재 비치상황 (비상화차 적재품 포함)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정기점검 : 지역사무소장(안전환경담당관)이 매분기 시행

※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해 배치 소속장에게 시정요구

3) 지역관리역의 소속역 지원(인력동원)체제 확립

5) 사고발생시 개인별 임무부여(임무카드 작성)

6)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상시 구축

○ 인력·장비 동원업체(중장비, 선로·전차선 복구업체) 연락망 구축

○ 시, 군,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과 협조유지

다. 모의사고 복구·수습훈련 실시

○ 일사분란한 복구 지휘체계 확립 : 순서화된 행동요령 습득

○ 신속·정확한 사고보고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복구용 장비·자재 및 요원 상비태세 점검

○ 열차운행 통제 및 조정능력 배양 등

○ 복구장비 배치소속 자체훈련(매월)

○ 복구훈련

- 지역사무소 주관 : 연1회(1/4분기)

- 본청 주관 : 연1회(2/4분기)

○ 훈련방법

- 실제행동 및 가상 행동사항을 구분 시행

- 훈련 종료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현지교육 시행

라. 사고복구체계 확립

○ 초동단계의 신속대처를 위한 지구별 임시복구 책임자 지정운영

- 5급이상 소속장중에서 차량, 시설, 전기, 승무, 역분야 순으로 지정
- 5급이상 소속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6급 분소장이 임시 복구 책임자 역할수행

○ 기능별 사고복구반 편성

- 복구지휘자는 기본적으로 차량사무소장이 담당하되, 사고유형에 따라 복구업무 비중이 큰 해당분야 소속장을 복구지휘자로 지정
  - · 기중기가 출동하는 사고 : 차량사무소장
  - · 자연재해, 시설물 파손·지장사고 : 시설관리사무소장
  - · 전기 및 신호보안장치 피해사고 : 전기(제어)사무소장
  - · 화재, 환경오염 등 사고 : 해당 시설물(지역)을 담당하는 소속장
- 사고복구반 기본편성표 :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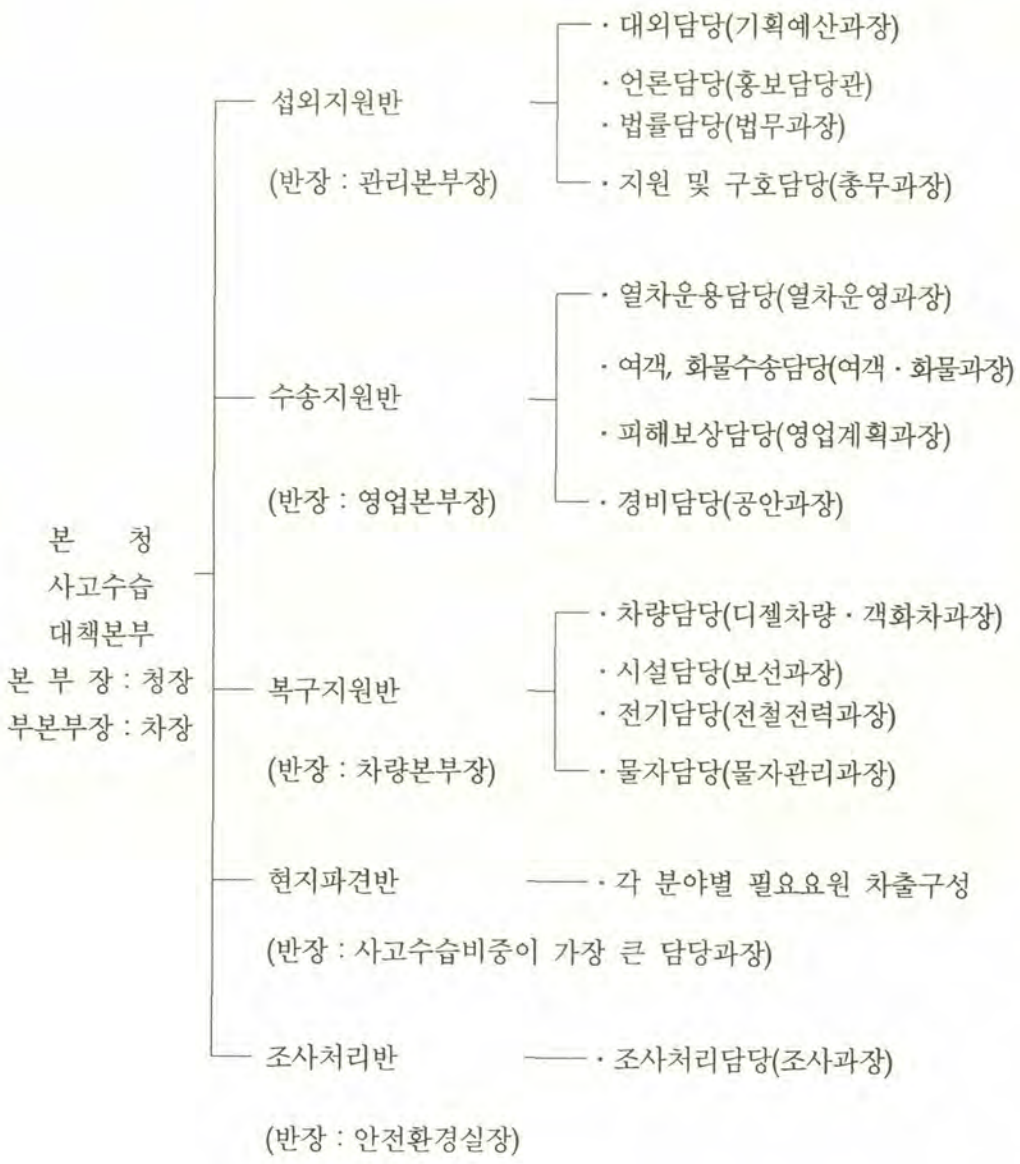
마. 사고수습대책본부 운영

○ 본청 대책본부

- 현지파견반의 구성은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본부장(청장)이 당해 사고 수습상의 비중이 가장 큰 해당분야 담당과장을 반장으로 지정하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요원을 선정, 현장 신속 파견

□ 본청 사고수습 대책본부

ㅇ 분야별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사고에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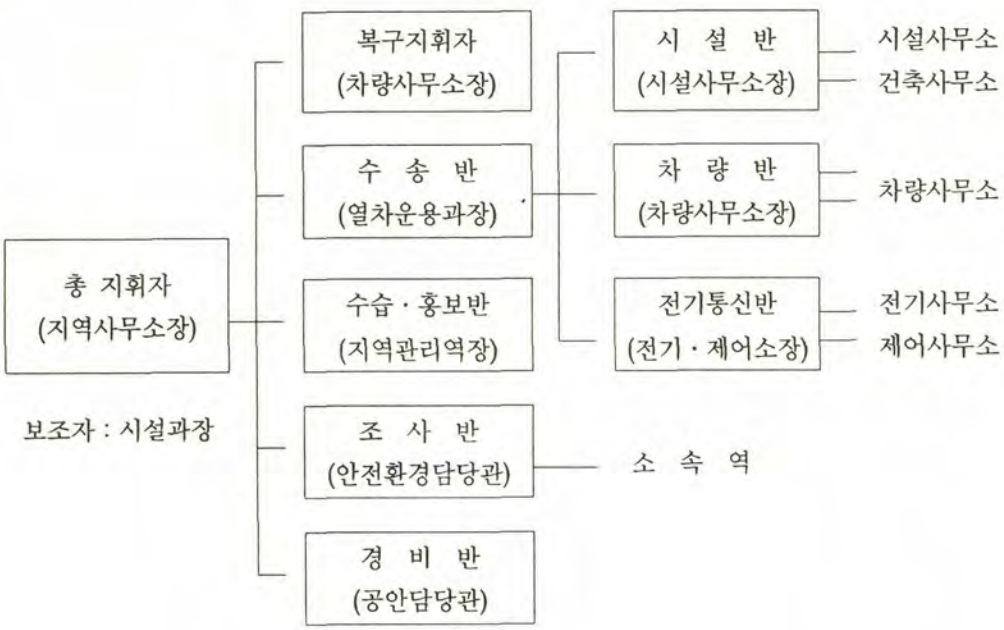
주) : 현지파견반의 구성은 피해규모 및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결정

□ 지역 사고수습 대책본부

○ 설치장소 : 지역관리역에 설치

○ 기 구 표 : 본청 편성표 및 각 반별임무 준용
(본부장 : 지역사무소장)

※ 사고수습대책본부의 구성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는 지역관리역장이 주관하여 수습



바. 재해대책본부 운영

1) 자연재해 등의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수습을 위해 풍수해발생 가능 계절에 일정기간 본청 및 지방청에 재해대책본부를 상설 운영

2) 주요 기능

○ 재해대책의 계획 수립 및 심의

○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사항 실시

○ 기타 재해관련사항

3) 운영기간 : 매년 6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4개월간)

4) 재해발생시 보고

○ 본청 재해대책본부장은 활동상황 및 재해현황을 청장에게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 선로복구반장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요구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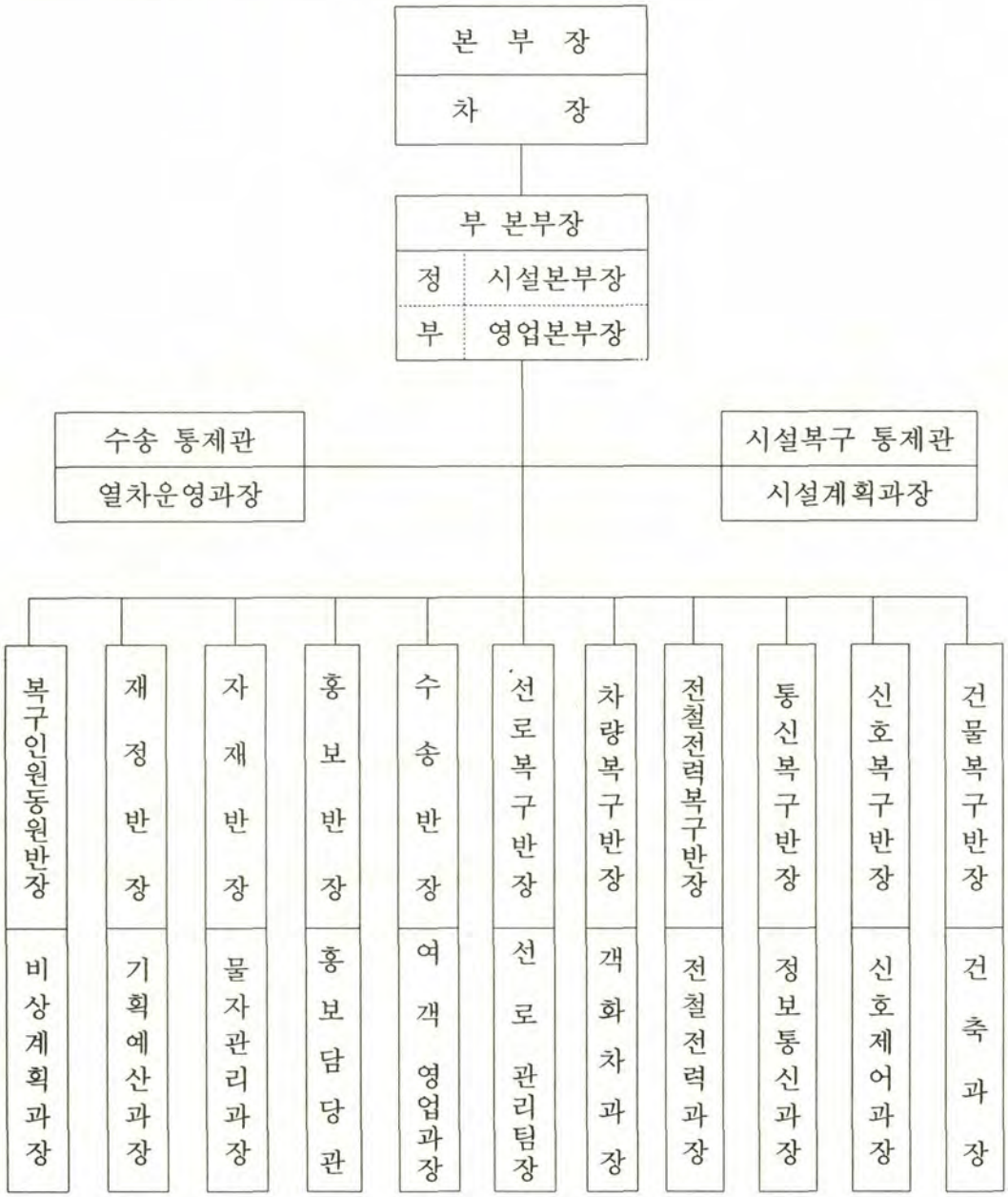
○ 시설관리소장은 피해상황, 복구대책 및 기상상황 등을 본청재해대책본부장에게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 재해 발생시는 철도재해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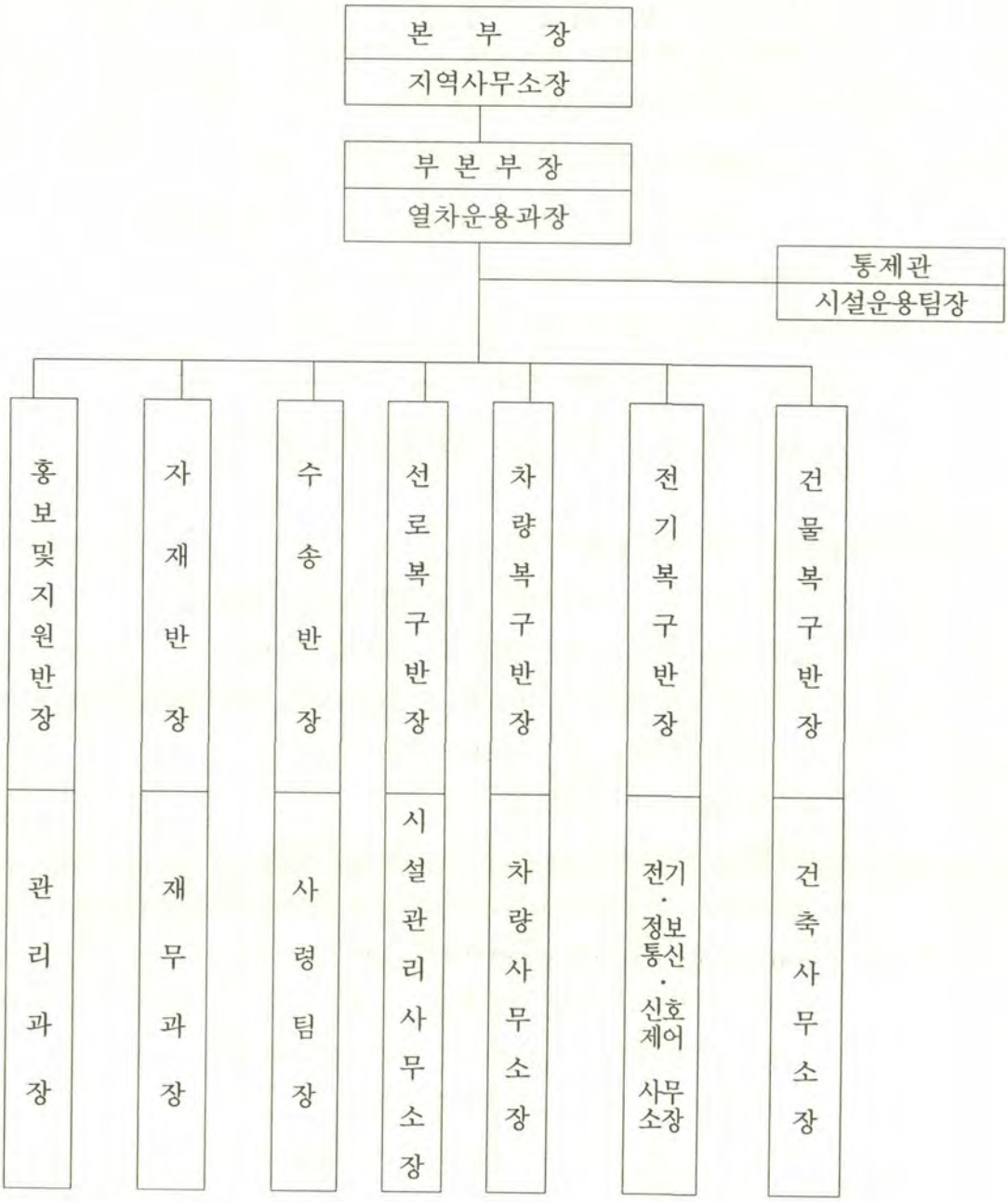
○ 재해발생시 시설관리소장은 전기, 정보통신 및 신호제어사무소 등 타 소속의 피해보고를 취합하여 관할 시·군의 재해대책본부와 도의 재해대책본부에 피해 행정구역상의 위치별 피해종별, 수량, 피해액, 복구소요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조, 구난 등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철도 재해대책본부 조직표

○ 본청



○ 지역사무소


본 부 장
지역사무소장
부 본 부 장
열차운용과장
통제관
시설운용팀장
홍보및지원반장
관리과장
자재반장
재무과장
수송반장
사령팀장
선로복구반장
시설관리사무소장
차량복구반장
차량사무소장
전기복구반장
전기·정보통신·신호제어 사무소장
건물복구반장
건축사무소장

6). 사고·재해 발생시 고객불편 최소화

○ 열차 지연정보 전달 및 통보체제 정착

- 열차지연 예상시간 산출 정확
- 역·열차의 전달경로 및 통신망 정비
  · 사령실 → 역 → 열차
  · 안내문안을 사전 정비하여 방송 또는 매출창구에 게출
- 역장 등 간부급이 직접 상황수습 대처 및 고객 이해유도

○ 열차지연에 따른 운임 및 요금반환 신속시행

○ 열차지연 도착에 따른 대체 수송수단 사전확보

- 전세, 고속버스 회사 등 운송업체와 사전 협약체결

7)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

○ 공사전 안전교육 시행(공사현장 전직원 및 민간관계자)

- 중점 교육대상 : 장비운전원 및 신규자(전입자)
- 안전관리요원 배치 : 안전관리요원, 열차감시원, 임시 건늘목 감시원 배치
- 반대선 진입금지 등 안전관련 사항
- 병행작업 등 특이사항 교육

○ 공사현장 방호설비 설치 및 안전장구 착용 철저

- 안전펜스,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 설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 접근금지, 추락주의 등 안전표지 정비
-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 개인보호장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

○ 공사지장물 사전점검 및 관련기관 협의 시행

- 가스, 송유관 등 외부시설물 관련기관 협의 시행

○ 터파기, Pile박기 등의 작업으로 선로변형 우려시 이상유무 확인 및 계측관리 철저 이행

○ 공사후 합동점검 실시 : 관련 역·소 및 시공업체 공동 참여

○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강화

-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및 검사 적기 시행

- 2대이상 설치개소는 타워크레인을 통제할 수 있는 통합통제실 설치

- 감리원 증원조치 및 주 1회 합동 안전회의 개최(시설관리사무소장 주재)

○ 작업에 따른 운전협의는 공사감독자가 역장과 작업내용, 작업시간, 연락방법, 최초열차 운행시각 등에 관하여 상세히 협의·기록유지

○ 신호보안장치 개량공사(절체작업)

- 작업책임자와 감독자는 무전기를 휴대하고 수시 운전정보 교환

-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후, 뒷정리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취급 책임자 입회하에 신호보안장치 연동시험을 철저히 시행

8) 시설·장비의 점검·보수 및 관리 엄정

가. 주기별·계층별 책임점검제 시행

○ 일일점검 : 안전관리자, 팀장(신호보안장치, 장비, 처소별 점검자 지정)

○ 주별점검 : 팀장급 이상 간부

○ 월별점검 : 역·소의 장

○ 월별순회점검 : 지역관리역장, 사무소장

○ 계절별점검 : 지역사무소·정비창·본청 건설·고속철도·사업개발본부장

○ 반기점검 : 본청

○ 특별점검 : 본청, 지역사무소장, 소속기관의 장

○ 시설, 차량, 전기 등 각 기능분야별 개별 점검규정에 의한 점검

나.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정비

○ 신호보안장치 점검 강화

- 분소별 현장 정밀점검(기술우수자 2~3명)
- 신설비 도입시 제작사 기술진 일정기간 상주
  · 초기장애에 신속한 대처
- 점검주기 재검토, 점검 및 보수 매뉴얼 제작

○ 선로검사규칙에 의한 궤도 및 재료검사

○ 건축물유지 관리지침에 의한 안전점검 및 기록유지

○ 차량류 검수규정에 의한 검수 및 차축, 차륜 탐상검사

○ 전철·전력·통신설비 보수규정에 의한 각종 검사

다. 취약개소 및 재난관리시설의 특별관리

○ 취약·주의 개소관리

- 변동사항 일제조사 : 12월(현업)
- 특별관리 필요여부 검토 : 1월(지역사무소)
- 변동사항 및 안전대책 수립 시달 : 2월
- 취약개소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 2월(시설본부)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 2001.4월 지정한 재난관리 시설물 4개소에 대한 재지정
  · 개·보수 등 상태변화와 변상된 시설물을 재평가
  · 대상 : 교량, 터널, 건물, 유류저장소, 기타 시설물
- 재난관리카드 작성 관리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물 월1회, 중점관리대상시설물 반기1회
-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장·단기 개량계획 수립·시행

라. 기존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 취약시기인 해빙기, 우기시에 시설물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불안전 요인을 보완하여 토목, 건축시설물 및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 열차운행선 인접 공사현장과 교량, 터널, 옹벽,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소속별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기존 시설물 및 토목·건축·건설공사 현장

○ 주요 점검사항

- 재해 우려개소, 변상구조물, 주변여건 변화개소 등의 공사현장
- 공사용 차량·장비 등의 작업관리 상태 및 토목·건축시설물의 시공상태, 열차감시원 배치, 안전교육 실시상태(특히, 장비운전원) 등

○ 점검계획

- 기존 시설물 : 소속 자체점검(연 2회) 및 특별점검
- 공사현장 : 본청 특별점검시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미점검 개소는 자체 안전점검 시행(매월)

9) 기타 안전활동 강화

가. 선로 무단통행 빈발지역 관리강화

○ 선로 무단통행 빈발지역 일제조사 및 특별대책 수립

○ 무단 통행방지 울타리, 경고판 등 확충 및 재정비

○ 시설관리원, 전기원 등 선로순회시 단속강화

○ 취약개소 기적취명으로 통행자에게 주의 환기

○ 지속적인 계도활동 적극 전개

- 각종 단체 및 모임에 참석 적극 계도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육교 등의 통로설치 촉구

나. 공중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계도활동의 강화

○ 철도교통안전의 달 지정, 활동 강화

- 『교통안전의 달』 행사 실시(4, 9월)
- 철도안전 문예대회 개최(4월)

○ 안전계도 표지 확대 설치

- 교통량이 많은 철도가도교 등에 안전계도 표지 설치
- 취약건널목에 프랑카드 및 주의안내판 설치
- 역광장 옥외전광판에 문안삽입 계도

○ 대중 매체와 간행물을 통한 계도활동 적극 전개

- TV·라디오·신문을 통한 계도 활동
- 주요 언론사 및 방송사에 보도자료 배포
- 반상회보, 철도지, 철도소식, 철도신문, 레일로드, 교통안전지 등을 통한 계몽 활동

○ 역구내 및 차내시설을 이용한 대국민 계도

- 방송시설을 이용한 교통안전 의식 고취
- 게시판 등에 안전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 게시

다. 화재예방 종합대책

○ 건축물내 전기시설의 주기적 점검

- 전기 절연측정 주기적 시행 및 분전함, 소켓 등 수시점검
- 자동차단기, 콘센트 등 기능점검 강화

10. 고속철도 개통 대비대책

가. 고속철도 개통대비, 효율적운영시스템 구축

○ 고속철도 1단계 개통(2002.4)에 따라 새로운 운영시스템과 운영체계에 걸맞는 운영절차와 기본운영방향 제시

- 고속철도본부 조직을 운영준비기능 위주로 개편(5과 17팀)
- 단계별 고속철도 운영기능강화
  - 1단계 : 서울 구철도청사 전진배치
  - 2단계 : 고속철도 운영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직 및 인력보강

○ 고속철도 운행안전성 확보 및 고속철도의 이용도·신뢰도·안전도 실현을 위한 적정 운행기준 마련

○ 고속철도 운영체계 구축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영업, 열차운행, 경영정보, 시설·장비 운영 등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확보방안 마련

철도청과 공단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방안 협의

나. 고속철도 운영대비 시설 및 검수장비 설치·운영

○ 시설장비 유지보수체계 정립 및 매뉴얼 정비

- 고속차량 및 시설물의 검사주기·시행절차 등 유지보수체계 검토

- 유지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전담반 구성

- 유지보수 조직 구축(안) 마련 및 소요인력 산정

- 차량, 전차선, 열차제어 등 매뉴얼 인수 및 번역·발간

○ 고속차량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차량정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의 신뢰도 제고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

- 고속철도 현장요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습교육 강화

다. 고속철도 핵심 운영인력의 교육훈련

○ 핵심 운영요원의 해외훈련 등으로 운영능력 제고

- 각 분야별 운영인력중 핵심운영요원을 선발, 프랑스 현지 훈련실시로 TGV운영기술 직접 전수

○ 고속철도 시험선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실무능력 배양

- 시험선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인력은 핵심운영요원으로 활용

○ 실무 적응훈련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실습철도' 구축

- 고속철도 운전 시뮬레이터 설치
- 고속철도 실습장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행

Ⅳ. 육상교량 안전대책

추 진 방 향

○ 육상 대형교통사고중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노후·위험 육상교량의 점검 및 개·보수

추 진 계 획

1. 교량안전점검

○ 안전점검 기준

- 정기점검 : 2회/년
- 정밀점검 : 1회/2년
- 긴급점검 : 수시/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

○ '02안전점검 결과

- 시의 국도, 지방도 및 시·군도 이하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244개교

〈개·보수현황〉

<개소>

구 분	계	개축대상	보수대상	정밀진단
계	244	58	155	31
시의 국도	9		6	3
지 방 도	78	10	62	6
시·군도 이하	157	48	87	22

2. 교량 개·보수사업 추진

○ 보수대상(155개교) : 2005년도 보수완료
○ 개축대상(58개교) :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하여 2005년까지 완공계획
※ 안전점검 결과 개축 및 보수대상 교량은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3. 통행제한 실시

○ 안전점검 결과 차량통행의 안전이 우려되는 교량에 대하여 통행제한 조치

4. 사고발생시 수습대책

○ 우리도와 시·군의 자체인원과 수송장비로 환자 긴급후송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응급복구
○ 사고규모에 따라 인근 소방서, 경찰서, 지방자치단체(민방위대),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도로 및 언론사를 통한 우회도로 안내

<2003 교량 개·보수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 축		보 수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	22,694	52	8,488	
시의 국도			5	1,378	
지 방 도	6	6,695	18	822	
시·군도 이하	29	15,999	29	6,288	

※ 매년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차년도 교량 개·보수사업을 시행하므로 변경 될 수 있음

유관기관 협조·지원사항

기관명	협 조 · 지 원 사 항
경 찰 청	도로교통통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소 방 서	환자수송 등 구호활동 관련 사항
방송·언론기관	도로상황 홍보 및 우회도로 안내에 관한 사항
군 부 대	도로시설 긴급복구 지원 및 협조
지방자치단체 (민방위대)	도로시설 긴급복구 지원 및 협조

8. 산업재해대책

[경제통상국 소관]

Ⅰ. 유류관련시설 안전대책

Ⅱ. 가스관련시설 안전관리대책

Ⅲ. 전력시설 안전대책

추 진 방 향

○ 자율적인 방재태세 확립을 통한 재해의 사전예방에 중점
○ 재해위험시설물의 지정 · 안전관리 강화
○ 각종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한 점검 및 정비강화
○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추 진 계 획

Ⅰ. 유류관련시설 안전대책

가. 재해 예방대책

1) 주요 시설물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정기 · 특별 안전점검 실시

2) 시설별 자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 방재훈련 정기 · 수시 실시

3) 재해유형별 방재메뉴얼 작성 및 안전관리규정 수립 · 운용

4) 피해시설별 자체실정에 맞는 복구대 편성 등 신속복구 · 피해확산 방지 주력

5)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체계 확립

나. 사태수습 및 복구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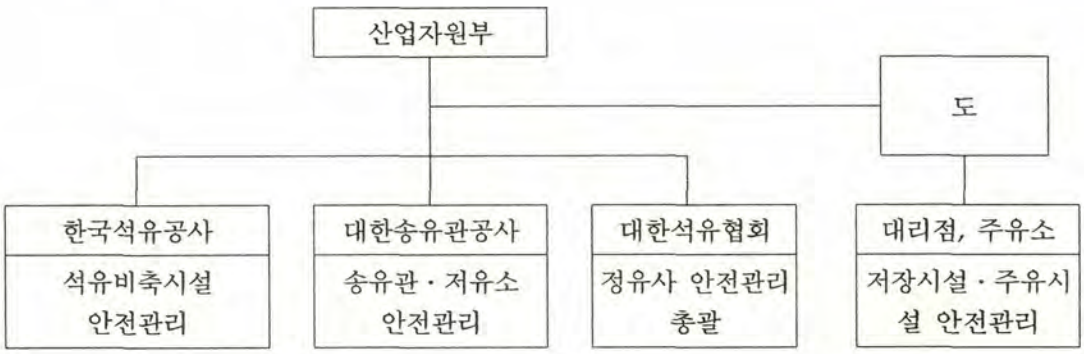
1) 도 방재유관기관과 관련업체의 장비 및 물자지원 요청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2) 복구작업시 사고위험요소의 사전확인으로 안전사고 미연방지 및 정유사별 자체실정에 맞는 복구대 편성

3) 최단시간 복구완료로 국민생활 안전도모

4) 재난피해 보상(배상)계획 수립
※ 재산종합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선박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

다. 안전관리체계도



라. 주요시설별 안전관리계획

석유분야	업 체	안전관리계획
정유시설	유공, LG정유 쌍용, 현대, 한화	· 정기안전점검 실시(일일,주간,월간) · 특별안전점검 실시(명절,연휴기간) · 자체소방훈련 실시 · 현장근무자 및 신입사원 안전교육 실시 · 외부공사업체 작업자 안전관리교육 실시
송 유 관	대한송유관공사	· 정기안전점검 실시(일일,주간,월간) · 공장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 송유관시설의 안전진단 실시 - 진단업체 : 영국 위험진단전문업체(BPA) - 대상시설 : 경인 및 대전이남 송유관시설
석유비축시설	한국석유공사	· 정기안전점검 실시(일일,주간,월간) · 특별안전점검 실시(우기,연휴기간,해빙기) · 안전교육 및 자체소방훈련 실시 · 자율안전 보건경영체제(KOSHA 2000 program) 시행

II. 가스관련시설 안전관리대책

가. 피해예방 대책

1) 타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손상예방 : 가스배관망의 전산화 추진 및 타 공사자를 대상으로 가스배관 보호 홍보

2) 재난·재해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 ○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정보전달을 위한 Hot-Line 설치·운영
   - ○ 사고조사반 구성·운영

3) 재난위험시설물의 특별관리 및 우려시설 조기 개선

4)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강화

5) 자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규정 보강·정비

6) 안전관리자 가스안전교육 실시 및 도민 가스안전홍보 확대

7) 노후배관 교체, 부적합 시설개선 등 가스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나. 사태수습 및 피해복구대책

1) 대상업소별 우발사태에 대비한 대책강구·지도
   - ○ 화재, 폭발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사태진압 및 긴급구조·구급 실시

2)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업자 및 대상업소에서는 긴급출동반의 출동태세 확립

3) 상황실 24시간 가동체제 및 관련업계와 연계한 복구반 편성·운영

4) 사태발생시 유관기관과 긴급복구지원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5)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효률적인 복구를 위한 긴급복구 순서는 가스 제조소, 정압소, 고압, 중압, 저압 순으로 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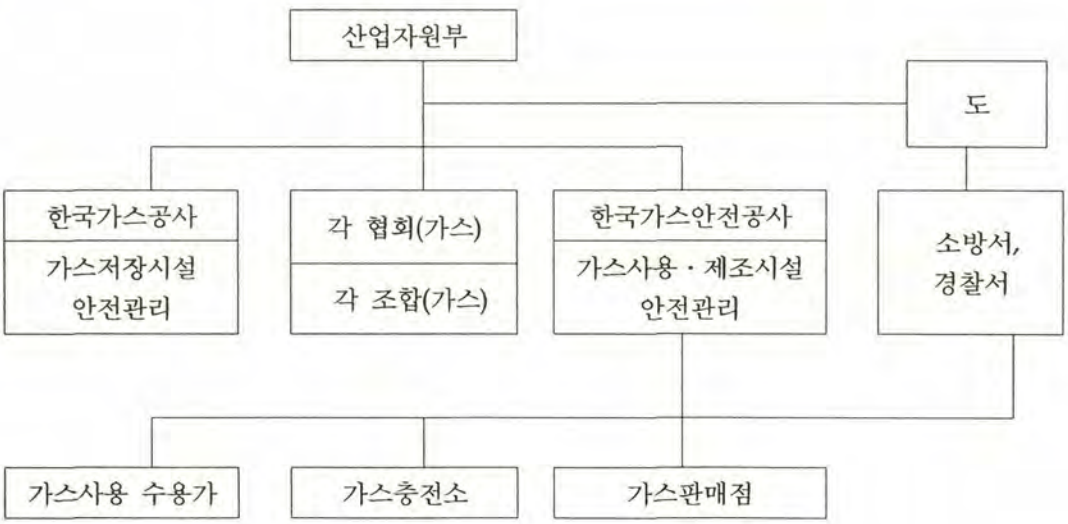
6) 재해대상업소는 평상시 민방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체계를 유지하며, 피해발생시 유사시를 대비한 자체훈련 실시

7) 가스관련시설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의 필요장비를 확보하며, 긴급출동반의 도착시에 대비한 긴급조치요령 등 훈련실시

【 가스관련시설별 안전 장비 확보기준 】

대 상	확 보 장 비	비 고
· LPG판매점 · 대중음식점 · 집단공급시설 · 용기충전소	· LPG용기 캡슐 및 밸브조치용 캡슐 · 고무테이프 · 나무 및 납쇄기, 나무망치 · LPG용기 응급조치용 캡슐	폭발성가스
· 제조 · 저장시설 · 사용시설(정수장)	· 제독장비 · 개인보호용 장비 (양압식 공기마스크, 방독면 등) · 기타 응급조치용 장비	유독성가스

다. 안전관리체계도



라. 가스사고 유형별 구분 및 조치사항

1) 대형사고

○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커서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이 그 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사고

○ 사고수습을 위해 도(또는 시·군)에 지역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 도지사(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협조)는 사고발생 및 수습상황을 산업자원부에 수시 보고(전화, FAX, 서면)

○ 정부차원에서 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에 건의

2) 주요 및 일반사고

○ 대형사고 이외에 다수의 사상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도(또는 시·군) 지역단위의 수습대책이 필요한 주요 가스사고

- 사안에 따라 도(또는 시·군)에 지역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 기타 인적·물적피해가 경미한 가스사고 및 다른 원인에 의한 2차적인 일반 가스사고

○ 주요 및 일반사고는 도지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가 사고발생 익일까지 사고발생 개요 및 수습상황을 산업자원부에 보고

-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동일유형의 가스사고 예방대책 강구

III. 전력시설 안전대책

가. 재해예방대책

1)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정기검사 및 특별점검실시(일반용, 자가용, 사업용)

2) 전기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및 비상시 상황근무체제 강화

3)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중점관리

4) 전기안전홍보 강화 및 재해 취약시기 사고예방 활동 전개

5) 변전소 수전계통을 환상망으로 구성, 이중전원을 확보하고, 정전범위 및 정전시간 단축을 위한 송·변전설비 확충사업 추진

6) 풍수해 방재시설 및 소방설비를 지속적으로 보강, 변전소 방재태세 확립

7) 피해발생시 조치요령 숙달을 위한 변전소 운전원의 모의훈련 및 방재 교육을 실시로 변전소 운전원의 위기 대처능력 강화

8) 전력수급 조절, 계통 주파수 및 전압조절 등의 송·변전개통 변경사항은 급전운영규정에 따라 조작

나. 사태수습 및 복구대책

1)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초동출동태세 확립 및 사업소·변전소별 긴급 보수센타 운영

2) 재난·재해에 대비한 방호대 편성·운영 ⇒ 변전소 피해규모 확대시 재해대책 본부 설치 및 전기공사업체 긴급동원·복구 활동 전개

3) 낙뢰 또는 설비사고로 변전소 화재발생시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초기 진화, 화재 확대시 소방관서와 합동 진화

4) 피해발생시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제한송전이 불가피한 경우는 전력공급 우선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부하를 차단하여 필수 주요시설에 우선 공급하고 전력수급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하여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 1순위 : 필수시설, 2순위 : 주요시설, 3순위 : 일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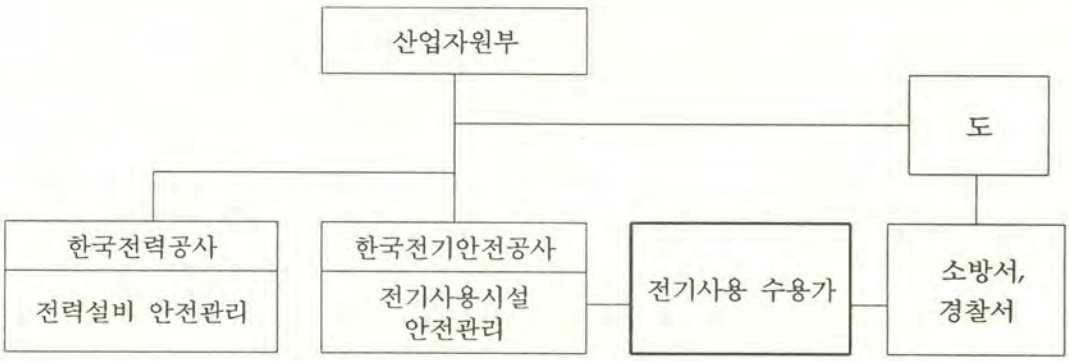
다. 정전지역 홍보대책

1)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시 이동 안내방송차 및 현장 가두방송을 통하여 정전 상황과 주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

2) 정전사태의 수습지연 예상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전 계몽 및 주민불안 해소

3) 주요고객 및 대동력 수용가는 자가발전기를 가동토록 개별 전화통보

라. 안전관리체계도



2003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가. 한국전력공사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총계획(2002~2006)		2003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 전력설비보강	9,693	7,598	2,075	2,173
- 주변압기 증설	135	2,012	63	876
- 개폐장치 증설	380	1,930	243	257
- 변전소 이중모선	40	54	0	0
- 노후불량설비 대체	2,716	1,307	780	681
- 송전철탑보강	5,352	1,499	779	215
- 취약지 배선 이설	1,070	796	210	144

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사 업 명	주 요 추 진 계 획
· 가스시설 특별점검	-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특별점검 - 해빙기 및 우기대비 점검 - 추석연휴, 월동기대비 점검 - 기타 취약시기별 특성에 따른 사전점검 수시실시
· 가스시설 현대화	- 노후 · 부적합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시설의 현대화 · 과학화 계획 연중실시로 사고 미연방지
· 가스안전관리제도 정비	- KS 인증품의 정밀검사대상 포함 등 가스용품 검사제도 보완 -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보험회사와 연계, 가스안전관리방안 검토

※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 홍보(42.9억원)

다. 한국석유공사

○ 석유비축시설 3개년 보수계획(비축시설)

(단위 : 백만원)

년 도 별	2003	2004	2005
금 액	4,824	4,164	3,534

유관기관 협조·지원사항

단 계 별	유관기관	행 동 지 침	비 고
최초단계	관련업계	· 자체전파 · 긴급복구반 출동 · 유관기관 통보	○ 자체방재
사태확대 단 계 (합동진화 단 계)	해당업체	· 유관기관 통보 · 자체응급조치 · 피해예상지역 확대시 지역경보 · 자체경보 및 통제(예비군, 민방위)	○ 행정관서 ○ 경찰서 ○ 재난관련기관
	행정관서 (도)	· 유관기관 전파 · 인명구조 · 피해지역의 인원대피유도 (민방위대원 통제) · 피해확대 대비 행정조치	
	경찰관서	· 피해·위험지역 주민소산 및 차량통제	○ 해당업체협조
	소방관서	· 화재진압 · 인명구조 · 피해확대 대비 조치	
	민방위대원	· 경보전파 및 행정관서 지원	
	인 접 유관기관	· 긴급출동반 지원 · 소방관서 기술지원(피해확대 대비)	

○ 대규모 재난으로 주민피해 확산 및 사회혼란 우려시 : 도 및 유관부처(행자부 등)에 통보, 통·반장 또는 지역 민방위대 조직 활용

○ 야간 정전사태 발생시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유지 협조 요청(경찰관서)

○ 화재발생시 초동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시 소방관서와 협조 강화

【별 첨】

2002 주요재난발생상황 및 분석

1. 가스분야

가. 가스종류별

○ 2002년 상반기 현재 가스사고는 총 2건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60% 감소하였으며, 모두가 LP가스 사고임

(단위 : 건, %)

구 분	2001년도	2001년 상반기	2001년상반기		
				비 중	증감율
도시가스	--	-	-	-	-
LP 가스	6	5	2	100	△60
일반가스	2	-	-	-	-
계	8	5	2	100	△60

나. 사고원인별

○ 가스사고 원인은 모두가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

구 분	2001년도	2001 상반기	2002년 상반기		
				비 중	증감율
취급부주의	5	4	2	100	△50
시설 미비	1	-	-	-	-
고 의	2	1	-	-	△100
제품 불량	-	-	-	-	-
기 타	-	-	-	-	-
계	8	5	2	100	△60

다. 사고장소별

○ 사고원인은 모두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음,

(단위 : 건, %)

구 분	2001년도	2001 상반기	2002년 상반기		
				비 중	증감율
주 택	5	4	2	100	△50
요식업소	-	-	-	-	-
공급시설	1	1	-	-	△100
차 량	-	-	-	-	-
기 타	2	-	-	-	-
계	8	5	2	100	△60

□ 재난발생 추이

- 안전시설관리종사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예방활동에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사고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에너지소비의 증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시설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현상 등 재난위험소요들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 부문별 구조조정에 따른 안전관련 조직, 인력 및 투자의 감축과 규제완화분위기에 편승하여 안전관리의식이 소홀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실정임.
-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조직기능의 효율적인 운영, 과학화 및 정보화된 시스템의 운영,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구축 등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규모의 최소화를 지향하여야함.

2002 재난재해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1. 전력시설

○ 전력설비 증설 및 대체

(단위 : 개소)

사 업 별	'2002년 추진계획	'2002년 상반기 실적	진도(%)	비 고
주변압기 증설	8Bank 460MVA	8Bank 460MVA	100%	
개폐장치 증설	154kV 4회선	154kV 3회선	75%	
변전소 설비보강	23kV GIS화 4개소	23kV GIS화 2개소	50%	
노후불량설비 대 체	차단기 31대	차단기 29대	94%	
	단로기 52조	단로기 48조	92%	

2. 석유비축시설

(단위 : 개소, 사업비 : 백만원)

2002 추진계획	2002 상반기실적	2002하반기 계획	비 고
저유탱크 정기점검 및 보수	울산지사탱크2기 사업비 : 1,597	계 속	
입출하시설 (BUOY HOSE) 정밀점검 및 교체(2개소)	-	울산 및 거제지사 사업비 : 189	10월 ~ 11월중
공정제어설비 이중화 구축(1개소)	구리지사 사업비 : 201	-	
법면보강(1개소)	용인지사 사업비 : 135	-	
부두박지유지 준설토 운반	사업비 : 996	계 속	

3. 가스시설

사업명	2002 추진계획	2002 상반기 실적	2002 하반기 계획
가스시설 특별점검	◦ 특별점검	◦ 다중이용시설 등 주변 시설 2회 점검	◦ 추석연휴, 동절기 대비 특별점검
	◦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점검(3회)	◦ 2회(도시가스공급시설, LPG충전소 등)	◦ 1회
가스시설 현대화	◦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가스 시설개선	◦ 대상 : 7,447개소 - 시·군별 사업 추진중	◦ 사업대상 7,447개소 연내 개선완료

9. 수질(식수) 오염대책

[복지환경국 소관]

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강화
Ⅱ. 유해물질의 상수원 유입 방지대책 강구
Ⅲ. 수질오염사고 조기 발견체계 구축
Ⅳ. 사고발생시 신속대응체계 구축
Ⅴ. 오염물질 방제능력 제고
Ⅵ. 화학 테러대책 추진

추 진 방 향

○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철저
○ 유해물질의 상수원 유입방지 및 취급업소 안전관리기능 강화
○ 상수원 및 주요하천의 수질감시체제 확립
○ 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 확충 및 방제훈련 강화
○ 취·정수장 등 테러대책 추진

추 진 계 획

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강화

1.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지정 등 오염원 규제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오염물질 및 유해물질로부터 보호

보호구역수 (개소)	지정면적 (㎢)	취수능력 (천톤/일)	거주인구 (명)
26	36,013	531.26	3,940

○ 특별대책지역 : 오염원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

(단위 : ㎢)

구 분	계	팔 당 호	대 청 호
대상지역	3시, 1구, 7군, 58읍면	경기 3시, 4군, 47읍면	대전1구, 충북 3군, 11읍면
지정면적	2,831	2,102	729
Ⅰ권역	1,659	1,223	436
Ⅱ권역	1,172	879	293

○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 : 오염원 입지제한

(단위 : ㎢)

구 분	계	팔당호등 한강	대 청 호	물금 · 매리	임 진 강
대상지역	9시, 1구, 17군, 121읍면	경기,강원,충북등 7시, 6군, 75읍면	대전 1구, 충북3군 · 11읍면	경남 4군, 10읍면	경기, 강원, 1시, 4군, 25읍면
지정면적	6,515.70	3,926	722	571	1,296.70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철저

○ 상수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 · 장비 ·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철저

○ 안내판 및 표주 설치 및 정비

○ 보호구역안의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현황조사 · 관리철저

3. 상수원보호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 · 단속 강화

○ 유독물, 농약, 분뇨 및 폐수 등 수질오염물질 유출 · 투기행위

○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 행락, 야영 및 야외취사 행위

○ 어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가축방목 행위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이전 및 제거 행위

○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행위, 굴착 성토 및 기타 토지 형질변경 행위 등

II. 유해물질의 상수원유입 방지대책 강구

1. 유해물질 취급업소 안전점검 강화

○ 유독물 제조·저장시설의 파손여부 등 안전점검·정비 강화

○ 우천 등 기상 악조건시 주기적인 안전진단 강화

2. 유해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상수원상류지역의 대형 유독물제조·사용업소 및 시설노후 업소 등을 선정, 우선적으로 지도점검 실시

- 유해물질의 불법배출이 없도록 업소관계자 교육 및 지도 강화
-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한 약품·자재 등 방제장비의 충분한 확보와 강우 등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 지도

III. 수질오염사고 조기 발견체계 구축

1. 취약지역 수질오염 상시 측정

○ 수질측정망 구성 : 207개 지점

- 하천 52, 호소 60, 상수원 40, 농업용수 53, 공단폐수 2
- 측정회수 : 조사항목별 년 1회~48회 측정
  -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변화가 심할 때는 측정회수 확대

○ 수질분석결과 특이사항 발생시, 관련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오염원조사, 지도·단속업무와 연계 등 신속 대응조치

2. 상수원 수질 감시활동 강화

○ 시·군별로 1~2개반 이상「하천감시총괄반」을 구성, 하천 순찰 및 확인 등 총괄적 감시기능 수행

○ 공공감시기능의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 수상감시반을 편성, 선박을 이용한 하천감시활동 전개
- 수질감시초소 설치, 공익요원 배치로 하천 감시기능 강화
-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감시활동 전개

○ 민간자율감시기능의 조기정착

- 민간인, 민간환경단체 등 하천 감시활동 적극 유도·지원
-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민간자율감시기능의 효율성 증대

Ⅳ. 사고발생시 신속대응체계 구축

1. 관계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관내 물 관련기관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매분기 1회이상 변동사항을 점검 보완

○ 환경부에서 전국 물관련기관 전화번호부 발간·배포(연 1회)

2. 재난발생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관리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 보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수질오염사고의 경우 하류지역의 취정수장과의 거리 및 영향여부를 필히 기재

○ 보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FAX 또는 전화로 신속히 보고

- 징후보고 : 사고발생의 징후가 보이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그 경위와 원인, 향후전망, 대책 등을 보고
- 발생보고 : 사고발생 즉시 사고상황·수습상황 등을 보고
- 중간보고 : 상황진전에 따라 사고원인, 피해상황, 수습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지원 요청사항 등을 보고
- 최종보고 : 사고를 완전히 수습한 후, 수습상황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및 문제점·대책을 종합하여 보고

3. 재난관리 수습체계

가. 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 · 운영

○ 설치근거 : 재난관리법 제45조

○ 설치시기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때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발생시

○ 설치장소 : 환경부

○ 구　성

- 본부장 : 환경부장관
- 위　원 : 재정경제부 · 행정자치부 · 국방부 · 보건복지부 차관 및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기　능

- 당해 환경오염사고의 수습에 관한 업무를 총괄 · 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 업무 협조 요청
- 사고수습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지역사고대책본부장을 지휘
- 사고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소집, 사고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협의

나. 지역사고대책본부

○ 설치근거 : 재난관리법 제43조

○ 설치시기

- 도 또는 시 · 군 지역단위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 사고의 예방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

○ 설치장소 : 도 또는 시·군

○ 구　성

- 본부장 : 도(행정부지사), 시장·군수
- 차장(1인)
  · 부단체장과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당해 사고와 직접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없는 경우 부단체장 1인만 둠)
- 본부원
  · 지자체 소속 공무원중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

○ 기　능

- 당해지역 환경오염사고 예방·수습 및 복구에 관한 업무총괄
- 당해 지방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 실무반 설치·운영 등

V. 오염물질 방제능력 제고

1. 사고대비 가상 방제훈련 실시

○ 훈련단위 : 도 주관, 시·군 단위 (수계별로 훈련 가능)

○ 실시횟수 : 년 1회이상

○ 참가범위 :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군부대,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 훈련내용

- 관계기관 상호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 응급조치 및 방제장비·자재 사용요령 숙지

2. 방제장비 확보

○ 응급(대체) 장비 : 발생초기단계 활용

- 가마니, 마대, 볏짚, 톱밥,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
- 농업용 비닐에 짚을 말아 간이휀스 이용
- 개인휴대장비(우의,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

○ 주요방제장비·약품 등 확보 추진

- 전 기관이 사고 1건당 평균 방제장비 소요량을 파악, 일정기간이상 장비 확보 :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흡착롤, 유처리제, 유독물흡착제, 유화제 등
- 수질오염사고의 방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관장 :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방제장비 및 출동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토록 조치

Ⅵ. 화학 테러대책 추진

1. 화학물질 테러 예방대책 강화

○ 테러용도 사용가능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선정·관리
- 포스겐 등 기존 30개물질 ('01.11지정) 이외 대상물질 추가

○ 유독물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보안 및 경비강화

○ 취·정수장 등에 대한 점검·경비 강화

2. 테러대응체계 구축

○ 대응요원의 보호장비·긴급방제장비·해독제KIT 등 장비·장구 확충

○ 취·정수장 『수질경보시스템』 및 비상급수체계 정비
- 주요도시 취·정수장에 수질자동측정기·어류관찰수조 등 『수질경보시스템』 추가설치
- 주요수계 자동측정망 추가설치·운영
- 테러발생시 급수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정비

3. 테러 대응시나리오(예시)

○ 개요 : 유독물 차량 납치 등 유독물질 상수원 투하

○ 신고접수 : 경찰서(112) 또는 소방서(119)

○ 초동조치
- 통제구역 설정 및 교통통제 : 경찰, 소방
-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펜스 등 설치 : 지방자치단체
- 취수 및 급수중단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합동조사팀

- 인근주민 탐문 : 경찰, 국정원
- 해당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추적조사 : 환경부, 경찰, 국정원

○ 대응 및 방제조치

- 응급조치 및 환자후송 : 소방
- 방제약품 살포 및 제독(필요시)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비상급수체제 가동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사후관리

- 상수원에서의 잔류여부 조사 및 취수재개여부 결정 : 환경부
- 수돗물로의 혼입여부 조사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200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2003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오일휀스 등 4종	17,000	오일휀스 등 4종	17,000

2002 수질오염 대책 추진상황

가. 2002 주요재난 발생상황

○ 지난 '94 낙동강수질오염사고이후 범정부차원의 환경오염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환경안전점검과 사고취약시설에 대한 중점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 2002년 10월 현재 수질오염사고는 16건이며, 급수중단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

나. 2002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2003추진계획	2002 실 적	비 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강화	· 상수원보호구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오염원 입지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지정 : 26개소, 36,063㎢ - 특별대책지역 지정 : 729㎢ -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지역 지정 : 722㎢	
유해물질의 상수원 유입방지대책 강구	· 유해물질 취급업소 안전점검 · 유해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 점검 강화	- (지방)환경관리청, 지자체별 안전점검 및 지도 · 단속 실시(분기별 1회)	
수질오염사고 조기발견체계 구축	· 취약지역 수질오염 상시 측정 · 상수원 수질감시활동강화	- 수질자동측정망 및 감시망 운영 - 유기적인 하천감시활동 전개	
사고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재난관리수습체계 구축	- 수질관련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갈수기 및 해빙기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2003. 재난관리계획 수립 · 시달 2003. 갈수기 수질오염예방대책 수립 · 시달	
오염물질 방제 능력 제고	· 사고대비 가상 방제 훈련실시 · 방제장비 확보	- 년 1회 이상 실시 - 방제장비확보 · 오일휀스 101천m, · 흡착제 32천박스 등 방제장비 확보	

유관기관협조·지원 사항

기관명	협조·지원사항
금강유역 환경청, 도 보건환경연구원	· 사고시 인력 및 각종 장비 동원 협조 지원 -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 오염방제장비 및 기자재 등 긴급동원 방제작업 실시지원 · 수질검사 실시 협조
지방자치단체	· 방제작업 실시 및 인접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조, 상황전파 등 -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보고 및 방제작업실시 - 지천 사고시 수문을 폐쇄, 본류 유입을 최대한 방지 - 오일휀스 설치, 유흡착포 등 방제장비로 오염물질 제거 - 야간 방제작업시 조명용 차량 등 지원 - 오일휀스 및 바지선 등 방제장비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상수원관리사무소	· 상수원 오염에 대비한 취수대책 강구 - 취수구 등에 이중으로 오일휀스 설치 - 유흡착포, 유수분리장치, 활성탄 등 방제장비 · 약품 비축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 방제인력과 포크레인 및 구급차량 등 방제장비 긴급지원 · 야간 방제작업시 소방차(조명용) 등 지원

10. 해양오염방지대책

[태안해양경찰서 소관]

Ⅰ.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

Ⅱ. 해양오염 방제체제 확립 및 대응능력 보강

Ⅲ. 오염사고 대응태세 유지

Ⅳ. 방제교육·훈련강화

추 진 방 향

○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
○ 해양오염 방제체제 구축 및 대응력 보강
○ 방제 교육·훈련 강화 및 대응태세유지

추 진 계 획

Ⅰ.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

1. 해양오염방지 홍보활동 전개

가. 해양종사자 대상 계도교육 실시

1) 대상 : 선박·시설, 업체, 어민 등을 대상으로 소집교육 또는 각 단체(업체)의 정기교육 등 활용

2) 내용 :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 해양오염의 영향, 폐유·폐기물 등 적법처리, 해양오염신고 및 방제조치 요령 등

나. 대중매체, 정기간행물 등을 이용한 예방 홍보

1) 언론을 통한 사고 통계, 방제조치, 협조사항 등 홍보

2) 해양오염방지 홍보물(전단)을 제작, 해양종사자에게 배포

3) 해양오염사진 순회전시 : 주요 항·포구, 여객터미널, 행사장 등

다. 민간환경단체의 해양환경보전운동 지원

1) 해양폐기물 및 바다쓰레기 수거 캠페인 실시(연 2회)

2)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해양환경보전운동 적극 참여·지원

2. 선박·해양시설에 대한 예방활동 실시

가. 해양오염원에 대한 출입검사 실시

1) 대 상 : 선박 및 해양시설

2) 내 용 : 기름 등 폐기물 불법배출행위,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적합여부 등 점검

나. 함정 등을 이용한 입체적 감시활동

1) 경비함정, 방제정, 순시정 등 해상순찰

II. 해양오염 방제체제확립 및 대응능력 보강

1.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내실운영

가. 위원장 : 태안 해양경찰서장

나. 구 성 : 관계기관 공무원 및 유관 단체·업체 임직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 관련기관(서산시청 외7), 단체(서산수협 외3), 업체(현대정유 외5)

다. 기 능

-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지역방제조치계획 수립
-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관계 지방행정기관간의 업무조정
-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

2. 『방제대책본부』 운영

가. 본부장 : 해양경찰청장

나. 구 성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관계기관 파견 공무원

다. 기 능

- 대형 오염사고 발생시 설치·운영
- 방제작업계획 수립·시행 및 동원 방제세력의 지휘·통제
- 방제방법의 결정 등

3. 방제장비 보강

가. 방 제 정 : 150톤급 1척

나. 유회수기 : 2대

다. 오일펜스 : 1㎞

III. 오염사고 대응태세 유지

1. 24시간 상황관리

가. 상황보고 및 전파체제 유지

나. 관계기관간의 비상연락체제 구성

2. 방제정, 헬기 상시출동태세 유지

○ 해양오염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하여 오염행위자 색출 및 유출유 방제작업

3. 단계별 방제세력동원체제 구축

가. 1단계(초동대응단계) : 사고지역 해경서 및 방제조합지부의 방제선 및 방제 기자재 동원

나. 2단계(지역대응단계) : 인접해경서, 관계기관, 단·업체 보유 방제선 및 방제 기자재 추가 동원

다. 3단계(국가대응단계) : 전국규모 방제세력 동원

라. 4단계(국제지원단계) : 인접국가(일본, 중국, 러시아) 방제세력 동원

Ⅳ. 방제교육·훈련 강화

1.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사이버교육 실시

가. 방제실무자 전문기관 위탁교육 : 년2회(교육기관별 1회)

1) 위탁교육기관 : 한국해양연구원(대전), 한국해양수산연구원(부산)

2) 교육내용 : 유출유 확산예측기술 및 방제방법 등

나. 해양오염방제 사이버교육 : 수시

1) 교육방법 : 중앙공무원교육원 서버 이용 인터넷상에서 실시

2) 내용 : 현장방제실무자과정(IMO Level Ⅰ)

2. 해양오염 방제훈련 실시

가. 민 · 관합동 방제훈련(해안경찰서)

1) 계획 : 연 1회

2) 내용 : 민·관합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업체 합동으로 훈련실시

나. 자체방제훈련(해안경찰서)

1) 계획 : 연 2회

2) 내용 : 오염사고 발생시 자체 대응능력향상을 위해 해경서별 취약해역에서 실제훈련 실시

2002 해양오염방지 대책 추진상황

가. '02 주요재난 발생상황

○ 사고 개요

2002.5.13.02:00,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10마일 해상에서 2대 산파이오니아호(케미컬선, 1,597톤, 부산선적)와 동양호(유조선, 2,901톤, 부산선적)가 충돌, 2대산파이오니아호 1번 화물탱크 손상으로 적재중인 자일렌(Xylen) 약 203.8㎘가 해상에 유출됨.

○ 피해 상황 : 유류오염피해 없음

○ 사고원인 : 기상악화(농무) 및 항해 부주의로 인한 충돌

○ 재난발생 추이 분석

구 분	발 생 건 수		
	계	기름유출량 100㎘ 이상	기름유출량 100㎘ 미만
'97년	379	5	374
'98년	470	2	468
'99년	463	-	463
'00년	483	1	482
'01년	455	1	454
'02.6월	192	1	191

- 최근5년간 해양오염 사고는 연평균 450건 발생
- 100㎘이상 기름유출 사고는 연간 2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에 있으며, '97년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오염사고는 없었음

11. 수난구호대책

[태안해양경찰서 소관]

Ⅰ. 해상재해 예방활동 강화

Ⅱ. 수난구호 즉응태세 유지

Ⅲ. 어선 해난사고 근절기반 조성

Ⅳ. 원활한 수난구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추 진 방 향

○ 해상재해 예방활동 강화

○ 수난구호 즉응태세 유지

○ 어선 해난사고 근절기반 조성

○ 원활한 수난구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추 진 계 획

Ⅰ. 해상재해 예방활동 강화

가. 계절별 지역실정에 맞는 재해예방 및 구조대책 수립 시행

○ 농무기 및 행락철(3~6월)

○ 태풍내습기(7~9월)

○ 동절기(11~익년 2월)

나. 지역수난구조대책위원회 활성화로 관계기관 협력강화(연 2회)

다.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강화

○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전던 제작 배포(농무기, 낚시어선, 식인상어, 태풍내습기, 동절기 등)

○ 지역방송 및 신문사 협조 해난방지 홍보

○ 해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선위통보제도 적극 참여,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실시

라. 취약요소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전개

○ 출입항 선박 지도감독 및 단속강화

- 기상불량시(황천, 저시정 발효시) 소형선박 출입통제

- 항해장비, 구명장비 등 안전점검 확행

- 선박검사 미필선박 출항통제

-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과적·과승행위 철저 단속

○ 사고다발 선박 및 노후선박 특별관리

- 각 파출소 및 출장소별 선명파악 해난예방을 위한 지속적 지도·계몽 실시

- 출입항시 안전점검 확행

○ 기상 악화시 항해선박 안전지대 대피유도를 위한 구난무선국 및 어업무선국 이용 항해선박에 신속 전파로 피해 최소화

○ 출동 경비함정 해난사고 예방 안전운항 홍보방송(SSB, VHF) 활성화

마. 선박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

○ 해상기상 불량시 소형선박 자율적 자제 유도

○ 해양사고 방지 안전교육 실시

○ 해상기상 불량시 소형선박 자율적 출항자제 및 기상특보 발효시 연근해 조업선 원거리 조업자제

○ 통신기 미보유 소형선박 무선전화 지참 유도,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 전파

○ 출입항 선박에 대한 수시 안전교육 실시

II. 수난구호 즉응태세 유지

가. 해양사고 다발해역 경비함정 적정배치 운용

- ㅇ 연말연시, 설날전후, 성수기 등 여객선 항로상 경비함정 중점 배치
- ㅇ 취약해역 및 해난 다발지역
- ㅇ 해상기상 불량시 구난함 광역 구조체제 유지

나. 조난신호 접수시 신속대응 등 조난 통신망 운용 활성화

- ㅇ 100톤급이상 출동함정 구난통신망(SSB) 상시 무휴청취 신속대응
- ㅇ 전 출동함정 항무통신 무휴청취

다. 긴급구조체계 정립

- ㅇ 침몰, 좌초, 침수, 전복, 화재발생시 추동 함정이나 당직 대기함정을 신속히 출동시켜 구조하고 사고해점이 원거리로써 경비함정 도착지연 예상시에는 우선 선단선이나 인근 항해선박에 구조토록 지시
- ㅇ 기관고장 및 기상악화(폭풍주의보 이상 발효)로 인해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시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예인 등 조난사고 방지조치 강구(단, 현지기상이 양호하여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단이나 구난업체로 하여금 예인토록 조치
- ㅇ 단순 기관고장 선박이라도 선단선이나 인근에 항해 선박이 없는 해역이거나 구난업체를 동원시킬 수 없어 장시간 표류로 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비함정이 출동 예인조치
- ㅇ 원거리 해난사고시 인접국에 적극 지원 요청
  - 필요시 구난함 파견 수색구조

라. 대형 해난사고시 신속대응

○ 사고 인지시 인근 출동함정 즉각 투입

○ 당직함정 긴급출동 및 예하 출동함정 신속 배치

○ 인접 해경서 출동함정 지원(필요시 구난함, 헬기, 특수구조단 지원)

○ 관내 수난구호 협력기관 협조 요청

○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용

Ⅲ. 어선 해난사고 근절기반 조성

가. 선박운항 종사자에 해양 안전의식 생활화운동 추진

○ 선박안전, 해난사고 대응요령 교육, 홍보실시

나. 통신기 등 항해 안전장비 무료점검 등 대민봉사 실시

다. 출어중 SSB 2183.4KHZ 청취 및 신고 홍보

Ⅳ. 원활한 수난구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가. 자체 잠수요원 양성 교육훈련으로 부족한 인력확보

나. 구난장비 점검으로 긴급상황 대처(반기 1회)

다. 해난 취약요소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전개(파출소, 출장소)

라. 해상종합훈련시 훈련항목 설정 중점교육

○ 응급처치법, 수색기법, 구난태세 및 장비점검

마. 지역 유관기관간 방제훈련 실시(연 1회)

유관기관 협조 · 지원사항

유 관 기 관	역 할 분 담
해양경찰청	· 해상수난구호업무의 총괄·조정 · 중앙구조조정본부 운용 · 중앙행정기관 및 단체간 공조체제 유지 ·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
해양경찰서	· 선박출항전 안전점검(수협요원 포함) · 해난사고 예방 지도·계몽 및 홍보 ·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지부 운용 – 해상수색 및 구조임무 총괄 수행 · 지역 해상관련기관 및 단체간 공조체제 유지 ·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선박 자율구조대 활용, 효율적 구조임무 수행
도,시·군	· 해난사고 수습대책본부 운용 – 유가족 안내 및 보상합의업무, 장제업무 수행 · 해난에서 구조된 인원, 선박에 대한 구호조치 · 실종자 신고접수등 처리에 관한 사무
해양수산부	· 선원교육시 해난예방 집중 교육 · 출입항 신고시 선박안전점검 및 선원지도·계몽 · 해난발생시 어업지도선 적극 지원 · 선박 자율구조대 편성 및 지원(단위수협 및 어촌계)
소 방 서	· 하천·호소의 수난구호업무 총괄 · 사고수습을 위한 인력·장비지원
지 역 군 (해·공군)	· 대형해난 발생시 인력·장비 동원 구조임무 수행
검역소,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구조대의 입역시 검역·통관사무 등 수행 · 외국구조대의 입역시 출입국사무 및 구조된 외국선박 – 선원의 입국에 관한 사항
지방해양수산청	· 해난사고예방 지도·계몽 및 홍보(선원교육 포함)
해난심판원	· 사고선박 해난원인 조사

12. 전염병관리대책

[복지환경국 소관]

Ⅰ. 전염병발생의 사전 대응체계 확립

Ⅱ.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Ⅲ. 취약지역 전염병관리 대책

Ⅳ. 국민 보건교육 및 홍보 강화

추 진 방 향

○ 전염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체계 확립
○ 수해지역에 대한 전염병관리 강화 및 생물테러 대책 강구
○ 국민 보건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추 진 계 획

Ⅰ. 전염병발생의 사전 대응체계 확립

가. 역학조사반 상시 편성 운영

○ 편성 : 17개반(도 16, 시·군 16)
○ 임무
- 전염병환자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역학조사
- 유행발생의 역학적 특성 및 원인규명
- 감염원, 유행경로 및 감염원제거, 전파확산의 차단
-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소독 실시

나. 비상근무체제 확립

○ 재해·재난 발생시 하절기(매년 5월~9월) 전염병 발생예방·관리를 위한 전염병전담요원 비상근무 실시(매일 20:00시)
○ 임무
- 피해 지역의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집단설사환자 등 발생 유·무 매일 확인보고
- 일일 방역활동 및 특이사항 발생보고

II.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가.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각종 전염병을 신속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예보함으로써 예방 및 확산방지

○ 중앙 및 도, 시·군 보건소별 역할

- 중 앙 : 전국 시·도의 기관별 모니터망 연계 및 전염병발생 현황 확인·지도
- 도 : 관내 시·군·구별 모니터망 연계 및 전염병 발생현황 확인·지도
- 보건소 : 병·의원, 약국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제운영이 가능한 모니터를 지정·운영

나.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운영

○ 해안지역 6개 보건소, 민간 병·의원 28개소를 콜레라 및 설사환자 보초감시 기관으로 지정·운영

○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3개소) 및 감염내과 전문의(1개소)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염병환자 발생 감시강화

○ 기타 전국 병·의원, 약국, 집단급식소 등 모니터망 지정·운영(1,585개소)

다. 환자발생시 보건기관간의 신고체계 확립

○ 보고체계 : 보건소 → 도 → 국립보건원

○ 보고방법

- 즉시 : 제1군, 제4군 전염병발생시, 2명 이상의 전염병환자 발생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의사환자 5명이상 집단 발생시 즉시 상급기관으로 보고
- 수시 : 역학조사에 대한 상황 및 특이사항이 있을 때

III. 취약지역 전염병관리 대책

가. 수해지역 전염병관리 강화

○ 장마철 전염병관리 대책 수립 및 사전점검

- 상습 수해예상지역 등 취약지 파악(관련부서 협조)
  - · 침수예상가구 · 수재민 수
  - · 수재민 수용시설 확보 현황
  - · 급수시설 현황(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우물)
  - · 공중 화장실 등 침수시 오염예상 시설
  - · 과거 전염병 다발지역 및 상수도 시설 불비 지역 등 취약지역을 최우선 점검

○ 재해대비 방역기동반 및 비축 소독약품, 장비확보

-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 · 방역기동반을 평상시보다 증강 편성, 수해지역에 상주하며 유사시에 대비함.
    - → 운영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 → 편성기준 : 6명(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방역요원, 행정요원, 운전기사 각 1명)
- 방역소독인력, 장비 및 약품확보
  - · 방역소독 인력 확보
    - → 수해예상지역이 많아 인력 및 장비부족이 예상되는 보건소는 인근 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 필요 인력 · 장비 사전 확보
    - ※ 협력대상기관 : 인근 보건소, 군 방역지원단, 방역협회 각 지부 및 비수해지역 자율방역단
  - · 방역소독약품 확보
    - → 각 시 · 군 보건소별로 수해지역 소요 방역소독약품 사전확보
    - ※ "재해대비 전염병예방약품 비축관리지침" 에 의거 확보(전염병 관리사업지침 55쪽)

○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기관, 모니터망 등의 감시 활동 강화

- 병·의원 등 진료기관에서 전염병환자 진료·발견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질병정보 모니터의 활성화
  - · 지정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의 임무숙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전개
  - · 정기적 순회, 우편엽서, 유선확인 등으로 확인하여 기록유지
  - · 사전 교육 등을 통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의 환자신고 철저 홍보
  - · 관내 취약지역 통·반장 등 자율방역단과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

○ 지역별 재해대책 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의사회, 약사회, 민간 의료기관,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점검하여 수해발생으로 인한 전염병발생시 즉시 대처

<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중점점검 내용 >

구 분	대 상	관 계 기 관	중점 점검 내용
① 인력	의 료 진	의사회 의료기관 보건관계기관 약사회	○ 의료진 확보가능 인원 및 출동태세 여부 ○ 치료약품 확보상태
② 시설	수용시설	학교 새마을회관 교회	○ 수용시설 확보상태
	목 욕 탕	인근 비수해지역	○ 지정목욕탕 수용태세 여부
③ 장비	소독장비	보건소 군 방역지원단 방역협회 자율방역단	○ 지원가능장비 종류 및 수량파악 ○ 고장여부
④ 방역	예방접종 약 품	국립보건원, 도, 보건소	○ 소요예정량 사전 통보 ○ 유사시 부족분 긴급지원 요청
	소독약품	도 보건소	○ 재해대비용 비축량 적정유지 여부 ○ 부족시 도에서 지원

○ 수인성 전염병 등 예방관리 철저

- 급수원 소독 및 관리강화
  - 상 수 도 : 매일측정, 기록유지 확인(관련부서 소관)
  - 간이상수도 : 월 2회이상 측정기록 및 관리상태 점검
  - 공 동 우 물 : 매일 염소소독 실시
  - 소독기준

    ┌ 평시 : 유리잔류염소량 0.2PPM 이상
    └ 수해등, 전염병 발생 우려시(유행시) 및 단수 또는 제한 급수시 : 유리잔류염소량 0.4PPM 이상
  - 소독 불이행 급수원에 대한 조치 : 시설별 잔류염소량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일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 지역내 급수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 대체 급수원을 지정하거나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급수차 동원
  - 우물 등 급수시설의 침수시에는 물을 퍼내고 염소 소독 후 안전을 확인한후 음용토록 관계 기관과 대책 마련

○ 장티푸스 예방접종 확대 실시

- 접종대상자 사전파악 철저 및 수해 발생지역 주민에게 확대 접종실시

○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보균검사 확대 실시

- 집중보균검사 미실시자에 대한 사전파악 및 검사 철저
- 검사대상자
  - 환자 발생지역 주민
  - 상수도,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 관리자
  -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가두식품판매자
  - 과거 2년간 환자 또는 보균자
  - 부랑인 등 집단수용시설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취약지역 주민
- 보균양성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전년도 수인성전염병 집단발생지역 집중관리

○ 식품위생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보건위생교육 등 관리철저

- 재해지역 : 식기, 행주, 도마 등 소독을 위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제공

○ 방역소독 강화

- 화장실, 하수구, 쓰레기처리장 등 취약지역 살충·살균소독 순회 실시 및 수해지역, 수용시설 반복 소독 실시
- 하천은 범람한 물이 빠진 후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물웅덩이 제거 및 우사·돈사 등에 대한 모기방제활동 집중 전개

나. 생물테러 대책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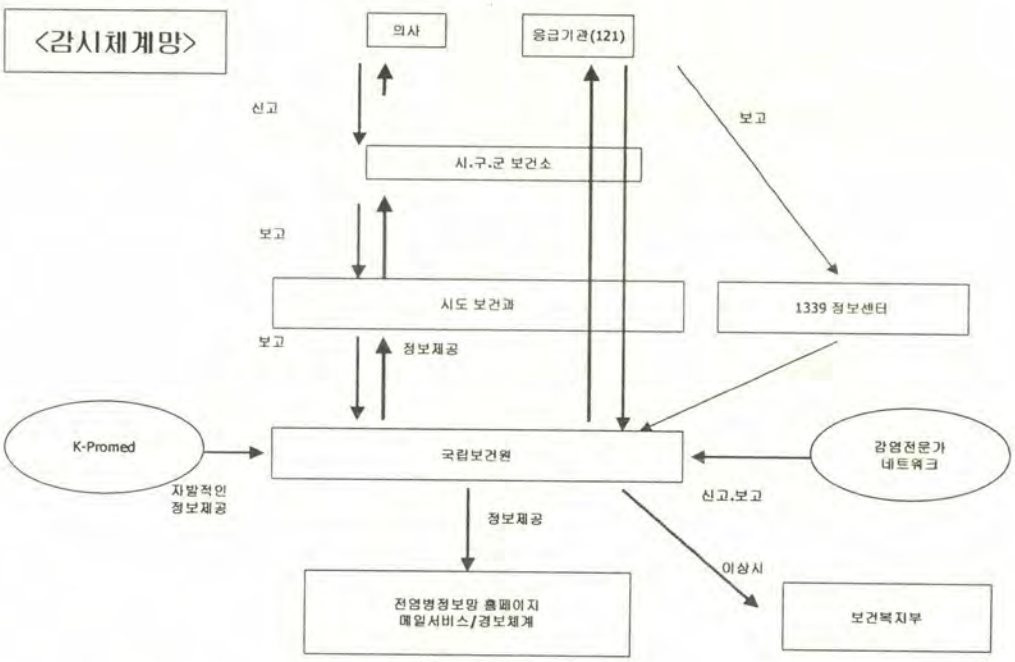
○ 단계설정 및 단계별 대응조치

- 주의단계
  · 생물테러의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감시체계 중심으로 점검
- 위기단계
  · 생물테러의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되어 대응체계 점검·가동과 사회 불안감 해소 및 민생안정을 위한 국민홍보 강화
- 비상단계
  · 탄저, 페스트, 보툴리눔 독소증 등 생물테러 환자 발생으로 환자 관리를 위한 자원 동원(인력, 격리병사, 비축의약품 등)

○ 생물테러 감시체계 강화

- 법정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 응급실중심 증후군 감시체계 구축
-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신속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감시체계망 >



○ 생물테러 대비 중앙 및 도, 시·군별 역할

- 중앙
  - · 생물테러 대응방안 마련
  - · 정보수집 및 연구개발
  - ·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확충
  - · 생물테러 대비 물자 구축 및 경계강화 점검 등
- 도
  - · 대응조직 구성 및 연락체계 구축
  - · 생물테러관련 물자 비축 및 관리
  - · 생물테러 대비 감시체계 운영
  - · 생물테러 관련 합동조사반(도 역학조사반)활동
  - · 생물테러 실험실 네트워크 참여

- 시 · 군
  · 대응조직 구성 및 연락체계 구축
  · 생물테러관련 물자 비축관리
  · 생물테러 감시체계 운영
  · 상황발생 초기 대응 조치

○ 생물테러 대비 소요약품 및 방호복 등 비축
- 탄저, 페스트 각 시 · 군 분산보관(284명 7일간 사용분)
- 두창백신(중앙 50만명분)
- 생물테러 대비 방호복 등 비축

< 비축현황 >

분류	구성물품	수량 (세트)	보급내역	비고
LEVEL A 개인보호장비	불침투화학보호복 냉방자켓, 공기호흡기	3	도 보건환경연구원 각 3세트	압축공기용기 예비품 포함
기초개인보호장비	특급방진필터부착 전면마스크	30	15개 보건소 각 2세트(15×2)	필터 예비품 포함
	보호복 방역덧신	60	15개 보건소 각 4세트(15×4)	-
검체수거 용기세트	검체채취 1차, 2차, 3차용기	2	도 보건환경연구원 각 2세트	1차,2차 용기 예비품 포함

Ⅳ. 국민 보건교육 및 홍보 강화

○ 언론매체(지방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반상회, 부녀회, 집단교육장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실시

○ 유관기관 및 단체(의사회 및 병원협회 도지부, 약사회 지부, 산업장 등)와 협조 강화

○ 주민보건 교육 실시

- 마을앰프(수해발생지역은 주기적으로 실시), 전염병 예방요령 홍보물 등 제작·배포

○ 생물테러 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 불안감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홍보전개

13. 산림재해대책

[농림수산국 소관]

Ⅰ. 산불예방·진화대책

Ⅱ. 산사태 방지·복구대책

추 진 방 향

○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 태세확립
○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 추진
○ 산사태위험지역 특별관리 및 인명구조 · 응급 · 항구복구 추진

추 진 계 획

Ⅰ. 산불예방 · 진화대책

1.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

가.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설치 · 운영

○ 봄 철 : 2. 1~ 5. 15
○ 가을 · 겨울철 : 11. 1~12. 15
※ 다만, 지역기상 등 여건 감안 · 지방관서장이 조정 운영 가능

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1) 산불방지를 내용으로 한 TV공익광고 및 영화 제작 · 방영
2) 산불을 소재로 한 영화, 컴퓨터게임, 애니메이션 등 제작
3) 기업체 및 언론사와 공동으로 '산불없는 우리고장' 캠페인 지속 전개
4) 산림보전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다. 산불방지 홍보물의 이미지 통합(CI)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1) 자체 개발·보급한 산불방지CI를 활용, 산불예방 이미지 통일

2) 차량용 산불조심 깃발 및 스티커 등을 제작, 민간단체와 지역택시조합 등에 배부하여 시민동참 유도

3) 관공서 건물과 공간 도로변 등에 입간판, 현수막, 산불조심 깃발 등을 집중 게양

라. 주민,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에 의한 산불예방활동 강화

1) 지역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을 적극 활용, 감시 및 신고활동 촉진

2) 산림보호협회 및 환경단체 등의 산불예방활동 적극 지원

마. 산불위험예보제의 개선 및 입산통제 강화

1) 산불예보의 정밀성 제고 및 경보별 행동요령 확행
   ○ 산불경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방활동 강화
   ○ 산림청 인터넷을 통한 산불예보 확행(매일)

2) 산불경보발령에 따라 입산통제를 강화하여 통제구역을 전체 산림의 50% 이상으로 확대, 등산로는 80%이상 폐쇄조치

3) 입산허용구역에 경고문 게시판 설치·화기물 반입 금지조치

바.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

1) 시·군 단위로 취약지 관리대책 수립 추진

2) 취약지역 입구에 경고판, 현수막, 안내판 등 정비·설치

3) 산불 취약지 전지역을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 화기물 반입 철저 단속

4) 등산로입구 등에 화기물 보관소, 흡연구역 설치·정비 등 조치

산불취약지역

○ 동일지역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한 지역
○ 30ha이상 대형산불 발생지역 및 야간 산불발생 빈번 지역
○ 도시근교 입산객이 많은 주요등산로 및 유원지 주변산림
○ 암자·기도원 주변 및 약초채취 등 출입이 빈번한 산림
○ 산림주변에 유류·가스 등 화기물 저장시설이 있는 지역

사. 기타 산불발생 요인 방지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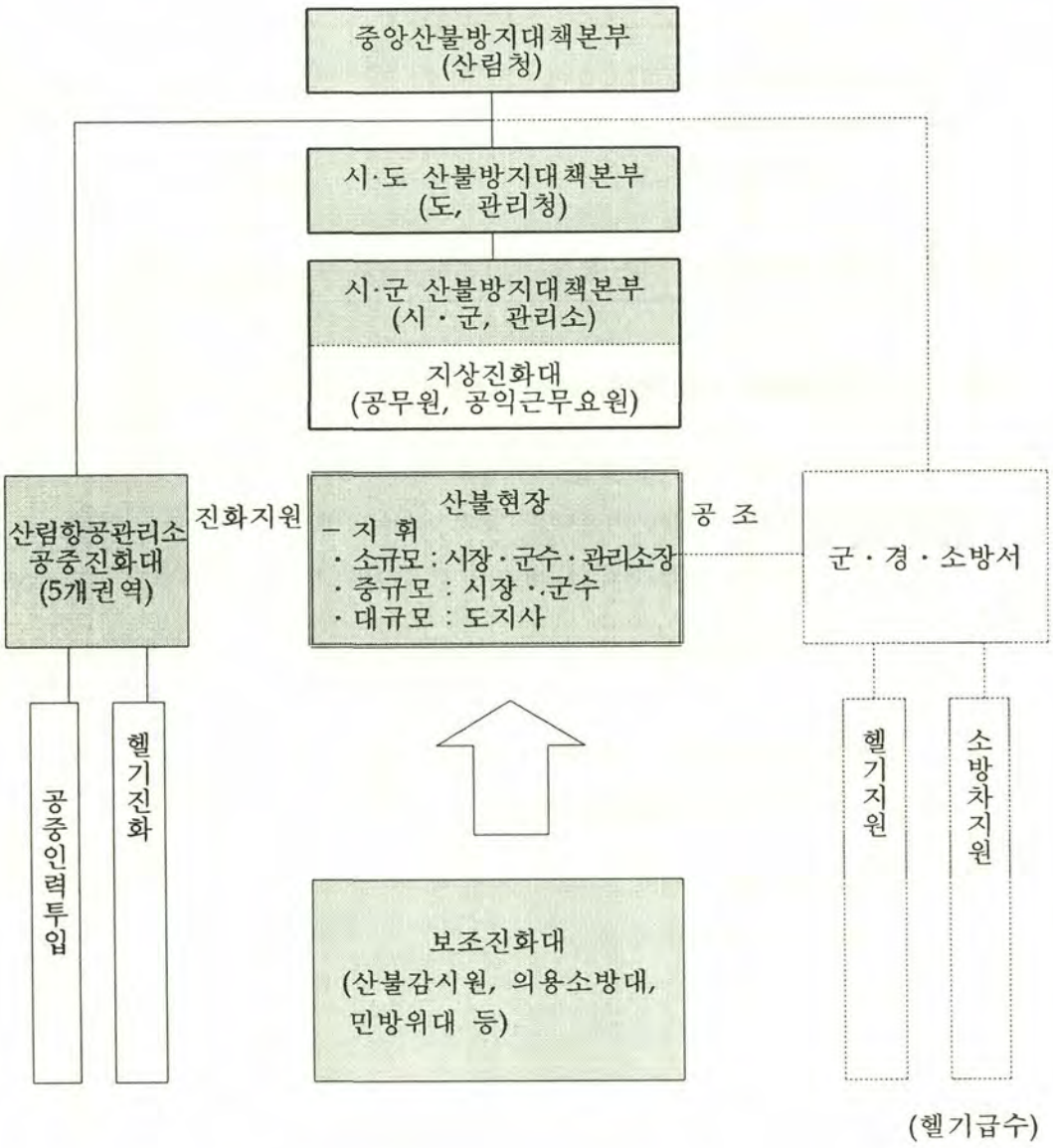
1)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불법소각 금지계도 강화
   ○ 산불위험시기 이전에 마을단위 계획 수립 공동소각 실시
   ○ 산림과 연접한 100m이내의 개별적 소각행위 엄중 단속

2) 군 사격장 주변 방화선 설치 등 사전조치 강구 : 군부대 등 인근 관서와의 협의 강화
   ○ 사격장 주변 방화선·방화막 설치 및 방염제 사전 살포
   ○ 산불위험기간 중 사격훈련 일정조정 및 진화조 편성대기 등

3) 사회 불만자, 정신이상자, 고령자, 노숙자 등 방화 또는 실화 우범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특별관리 실시

2. 초동 진화태세의 확립

가. 진화지휘체계



나. 산불진화 지휘체계의 확립

1) 발생단계별, 규모별 산불진화책임자 지정 및 통합지휘권 부여

가) 소형산불 : 시·군 담당과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지명한 자
(5ha이하이고, 8시간이내 진화가능 산불)

나) 중형산불 :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5ha~30ha미만이거나, 8시간이내 진화가능한 산불)

다) 대형산불 : 도지사
(30ha이상이거나, 24시간이상 계속되는 산불)

2) 산불발생지역에는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 공중·지상 통합 지휘

다. 초동진화를 위한 헬기 등 공중진화장비의 조기 확충

1) 다용도 지원이 가능한 초대형헬기 등 장비 확보

가) 소방헬기, 경찰헬기, 군부대헬기 등 협조체제 구축

라. 산불진화 『항공지휘반』 설치 운영

1) 유관기관의 다수 다기종 헬기 출동시 공역관리 및 헬기운영 협조를 위하여 산불진화지휘본부에 『항공지휘반』 운용

2) 공역통제 및 공중진화전술을 위한 『공중지휘통제기』 운용

마. 산불진화대 체계화 및 『유급전문진화대』 운영기반 구축

1) 지상진화대 조직을 체계화하고, 산림항공관리소의 공중진화대(7개팀, 46명) 운영 활성화

2) 보조진화대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유급전문진화대』로 양성

바. 잔불정리 및 감시 책임 담당제 실시

1)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조 지정, 불씨 소멸 확인

2) 잔불정리 소홀로 뒷불이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

사. 산불가해자 엄중조치 및 홍보강화

1) 산불발생시 사건 전담자를 지명, 가해자 색출 및 증거수집

2) 산불발생자 신고유도를 위한 신고보상금 최대 지급

200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획('02+'03)		'02 실적		'03 계획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합 계		6,560		2,386		4,174
○ 장비보강		2,458		1,118		1,340
- 무인감시카메라	3대	450	1대	150	2대	300
- 산불진화차	14대	490	10대	350	4대	140
- 무선통신망확충	24개소	324	12개소	162	12개소	162
- 기타진화장비등		1,194		456		738
○ 인력지원	1,115명	4,102	390	1,268	756	2,834
- 전문예방진화대	180	932			180명	932
- 유급감시원등	975	3,170	390	1,268	585	1,902

유관기관 협조·지원사항

기 관 명	협 조·지 원 사 항
언론기관	○대중홍보시설 및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홍보 2~4월중 집중 실시 ○산불공익광고가 계속 방영될 수 있도록 협조
군 부 대	○군사시설지역안에서의 산불방지 책임관리 - 군 사격훈련장의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수립 시행 - 자체시달 산불방지추진지침(산불경보별행동지침)의 실행 점검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병력 및 헬기 지원 ○공군 및 육군 비행장에서의 산림청 진화헬기에 대한 항공유 급유 신속지원 및 민간비행금지구역에서의 진화 헬기의 출입절차 간소화 조치
경 찰 청	○사회봉사 수명자의 산불감시원 활용 협조 ○산불에 대한 국민 경각심고취를 위해 산불원인자 및 방화혐의자 검거 및 엄중 처벌 협조
교 육 청	○초중고교 교과서에 산불예방내용 수록 확대 및 교육실시 ○중·고교생 봉사활동 대상에 시·군 및 읍면에서의 산불감시활동 ○교사 연수과정에 산불예방관련 교육내용 포함 및 산림청 임업연수부에서의 교육과정에 교사 참여확대 협조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산불방지대책 수립 시행 ○산하 관련 민간단체(자연보호협회 등)의 산불예방활동 권장
농림수산국 (농산과)	○논밭두렁 및 농산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방지대책 실행 ○농업인에 대한 논밭두렁 태우기의 무익성 홍보 등

II. 산사태 방지 · 복구대책

1. 산사태위험 지역 지정 · 특별관리

가.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해 위험지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 특별관리

2.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사방사업 추진

가. 사방댐 14개소, 야계사방 10km, 산지 · 예방사방 9ha등

3. 산사태 발생시 인명구조 및 응급 · 항구복구 추진

가. 산사태 등 재해발생시 최우선적으로 인명 구조하고

나. 육로수송이 어려운 오지대의 경우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조치

다. 응급복구 · 대민지원이 필요할 경우 산림조합 중장비(굴삭기 등)를 지원받아 복구

200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02-'06)		2002 실 적		2003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10,113	-	2,222	-	3,958
사방댐(개소)	40	6,560	9	1,407	14	2,306
야계사방(km)	25	3,1750	6	761	10	1,274
예방사방(ha)	7	378	1	54	9	378

2002 산사태대책 추진상황

사 업 명	2002추진계획	2002 추진실적	진 도 (%)	비고
사 방 댐(개소)	9	9	100	
야 계 사 방(km)	6	6	100	
예 방 사 방(ha)	1	1	100	

V. 행 정 사 항

V. 행 정 사 항

○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를 본 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의 적기확보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 시장·군수·출장소장은 본 계획에 의거 소관 민방위업무에 관한 시·군·출장소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출장소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와 협의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장·군수·출장소장 및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계획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2004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보완

2003 민 방 위 계 획

2002년 11월 일 인쇄
2002년 11월 일 발행

발행처 : 충청남도 소방행정과 민방위담당
☎ (042) 220-3714
인 쇄 : 충남 문화사
☎ (042) 251-2561

주 소 :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CHUNG CHEONG NAM – DO
AM014355